

北韓情勢分析資料集

1992

統一院

北韓情勢分析資料集

1992



統 一 院

이 資料集은 '92년도중 情報分析室에서 작성한 內部 分析報告書와 關聯 基本 資料 全文을 時系列別로 整理·編輯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內部報告書인 점을 감안, 利用에 留意하여 주시고, 특히 北韓의 基本資料는 原文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오니 無斷複製·複寫를 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目 次

I. 對內 動向

| | |
|-------------------------------------|-----|
| 1. 金日成 新年辭 分析 | 7 |
| 2. 南浦地域의 産業立地 分析 | 16 |
| 3. 金正日, 北韓式 社會主義 固守·完成 「談話」發表 | 22 |
| 4. 北韓의 貨金 및 農產物 收買價 引上措置 關聯 分析..... | 27 |
| 5. 金正日 50回 生日行事 動向 | 33 |
| 6. 北送 在日僑胞 現況 및 生活實態 | 43 |
| 7.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3次會議 開催 | 60 |
| 8. 金日成 80回 生日行事 動向 | 67 |
| 9. 北韓의 觀光事業 推進 動向..... | 80 |
| 10. 北韓의 貨幣交換 關聯 分析..... | 110 |
| 11. 社會主義 固守를 위한 金正日 論文 發表..... | 115 |

II. 對外 動向

| | |
|----------------------------|-----|
| 1. 外交部, 核査察 受容 聲明 發表 | 123 |
|----------------------------|-----|

| | |
|------------------------------------|-----|
| 2. 「核安全協定」에 署名..... | 127 |
| 3. 金正宇, 對日本 記者會見 內容 分析 | 130 |
| 4. 國際原子力機構에 査察對象 目錄 提出..... | 137 |
| 5. '91年度 北韓貿易 動向 | 140 |
| 6. 러시아의 換率 單一化措置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 145 |
| 7. 시베리아 北韓伐木場 人權實相 分析..... | 149 |
| 8. 北韓·中國 貿易現況 | 157 |
| 9. 北韓의 外國人投資 關聯法 分析·評價 | 163 |

III. 對南 動向

| | |
|---------------------------------------|-----|
| 1. 「南朝鮮人民의 金正日 欽慕」 報道內容 分析 | 187 |
| 2. 「南北基本合意書」 發效..... | 198 |
| 3. 南北 經濟交流·協力에 대한 立場 闡明..... | 206 |
| 4. 第3次 汎民族大會 및 第2次 青年學生統一祝典 結果分析..... | 213 |

자 료

| | |
|-------------------------------|-----|
| □ 김일성 신년사 ('92. 1. 1) | 221 |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김정일 담화 | |

| | |
|--|-----|
|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92. 1. 3) | 233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개막 ('92. 4. 8)..... | 269 |
|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한 재정부장 윤기정 대의원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1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92. 4. 8) | 272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제2일회의 진행('92. 4. 9) | 297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폐막 ('92. 4. 10) | 300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92. 4. 9) | 301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92. 10. 5)..... | 329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92. 10. 5)..... | 333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92. 10. 5)..... | 336 |
| □ 조선로동당 창건 47돌에 즈음하여 집필한 김정일 논문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92. 10. 10) | 341 |

對 內 動 向

金日成 新年辭 分析

1992. 1.

1. 概 要

- 金日成은 '92年度 新年辭를 통해 ①北韓式 社會主義의 固守·發展 ②南北韓 當局의 南北「合意書」의 성실한 履行 ③韓半島의 非核地帶化 등을 強調하였음.

<新年辭 要旨>

對內分野

<政 治>

- 우리式 社會主義建設의 總的 方向
 - 3大革命 強化로 主體를 더욱 튼튼히 세워 激變하는 情勢에 主動的으로 對處
- 黨 中心으로 一致團結
 - 全體人民은 黨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떤 風波속에서도 우리式 社會主義의 勝利에로 계속 前進

<經 濟>

- '91年 實績
 - 茂山鑛山 擴張工事, 興南肥料工場 設備現代化, 2·8비닐몬工場 酸素分離機職場 1段階工事 등을 完了
 - 客土作業 등 自然改造事業 推進으로 農事에서 훌륭한 結實을 이룩

○'92年 課業

- 基本課業은 自立的 民族經濟 建設路線을 철저히 貫徹하고 人民들의 食·衣·住問題를 萬만히 解決하는 것
- ※“모든 사람이 다같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우리 人民의 世紀的 念願을 實現하는 것이 當面한 重要目標임”
- 가장 緊要하고 절실한 課業은 電力과 石炭의 生産增大와 鐵道 運輸를 發展시키는 것
- 人民生活 向上을 위해 農業과 輕工業 發展에 注力해야 하며, 올해를 「大農의 해」로 정해 農業生産을 決定的으로 增大시킴.
- 「科學技術發展 3個年計劃」遂行을 위한 鬭爭을 벌여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적극 實現

對南 및 統一分野

<南北「合意書」는 祖國統一綱領>

- 「合意書」는 統一實現의 새로운 里程標
- 7.4共同聲明과 더불어 가장 正當한 祖國統一綱領
- 「合意書」의 성실한 履行으로 統一實現
- 「合意書」의 履行對策
- 軍縮, 緊張緩和로 信賴構築
-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平和地帶化
- 有關國의 「合意書」尊重 및 協調 必要

<核査察>

-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平和地帶化는 一貫된 立場
- 核武器 開發의 能力도 意思도 없음.
- 公正性 保障 條件에서 核査察을 받아들일 用意
- 核査察과 有關한 부당한 壓力은 不容納

<民族大團結>

- 南·北, 海外同胞의 大團結이 統一의 根本
- 폭넓은 對話 및 多方面的 協力·交流의 發展위해 努力

對外分野

<反帝·自主的 對外政策 堅持>

- 帝國主義者들의 侵略策動 粉碎鬭爭 強化
 - 帝國主義者들의 侵略과 干涉·攪亂策動을 沮止
- 社會主義는 반드시 勝利
 - 일부 社會主義 나라들의 挫折을 社會主義의 終末이라고 말 하는 것은 無知를 들어낸 것

<自主·平和·親善 政策基調 維持>

- 社會主義 나라들과의 團結과 連帶性 強化
- 불력不加擔 나라들과의 親善·協調 強化
 - 變化된 情勢에 共同對處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安全 守護에 努力>

- 核武器·大量殺戮武器 廢棄

2. 分 析

- 이번 金日成 新年辭의 內容과 特徵은

—蘇聯邦 消滅 등 大變革의 轉換期的 新局面을 맞아 住民의 思想 動搖 防止에 主眼을 두고 北韓式 社會主義의 優越性和 發展을 強調하고 있음.

- 黨과 人民의 一心團結로 社會主義 偉業 守護 및 前進을 다짐.
- “一部 社會主義 나라들의 挫折을 社會主義의 終末이라고 말하는 것은 無知를 들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社會主義 必勝의 合法則性 強辯

—對南面에서는 例年과 달리 상투적인 對南誹謗과 統一戰線形成煽動을 緩和하고 民間級 對話攻勢(政治協商會議 등)를 自制하는 등 비교적 유연한 態度를 보이고 있음.

※體制 防禦的 共存指向의 現實主義路線 追求의 一面으로 볼 수 있음.

○南北韓 關係改善 및 統一問題와 關聯하여서는

—南北 「合意書」를 7.4聲明 3原則이 反映된 祖國統一綱領이라고 評價하고 쌍방의 성실한 履行을 力說한 가운데

—“自主는 統一의 出發點”이라는 등 民族主義의 立場을 내세우면서 南北韓間의 關係改善과 對話發展에 대한 期待를 나타내고 있으나 ‘頂上會談’ 등에 대한 言及은 없음.

- 한편 “冷戰시대의 낡은 觀點으로 힘의 立場에 서서 朝鮮問題를 대하는 것은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이라고 有關國을 間接 非難하면서도 統一問題에 대한 協調의 必要性을 強調

—「平和統一의 前提」를 마련하기 위한 實踐對策으로서 信賴構築, 交流·協力보다는 軍縮實現, 緊張緩和,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化 등에 比重을 둬으로써 이 部門에 대한 從來의 立場을 바꾸지 않았음.

※駐韓美軍 撤收, T/S 訓練 中止, 聯邦制 正當性, 制度的 統一 反對 등의 상투적인 言及은 하지 않았음.

○核査察 問題에 관해서는

—國際的 壓力 아닌 公正性이 保障되는 條件에서의 査察 受容意思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既存 立場의 再闡明에 불과하나

—核武器 開發의 意思도 能力도 없으며 韓半島를 非核地帶로 만들려는 것이 일관된 立場이라는 것을 새삼 強調하는 등

※“우리는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않는다면 안하는 것이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國際 核査察 壓力을 長期間 謀免하기는 어렵다는 現實을 直視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經濟問題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前年度 實績에 대해서는 거의 沈默한채 電力과 石炭生産을 높이고 鐵道運輸의 發展을 가장 緊切한 課業이라고 強調하고, 흰쌀밥에 고기국, 비단옷, 기와집 등 食衣住 問題의 解決을 社會主義 建設에서 當面한 重要目標라고 言及하면서 輕工業 및 農業部門의 生産增大를 強調하였음.

※에너지難, 食糧難, 消費財難을 自認한 것이라 하겠음.

※金日成이 “흰쌀밥, 고기국, 기와집”등을 最初로 言及한 것은 '62. 10.22 最高人民會議 第3期 第1次 會議 報告에서 임.

- “1964년에는 모두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富裕한 生活を 누리게 될 것입니다”

○ 對外關係面에서는

- 外交인 核心課題에 대해서는 별다른 言及을 하지 않은 가운데, 資本主義 및 帝國主義에 대한 批判과 社會主義의 優越性을 強調하고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團結과 連帶性 및 불력不加擔運動의 強調만을 力說하였음.

○ 其他 新年辭 形式 및 構成面 등에서

- 이번 新年辭는 구랍 31日 勞動黨·中央人民委·政務院 聯合會議에서 發表하였고
- 新年辭 所要時間은 約 37分이었으며('89年 30分, '90年 42分, '91年 50分)
- 分野別 比重은 새해人事, 對內政治 5分, 經濟 15分, 統一 10分, 對外關係 6分, 맺음 1分 등으로 構成되었으며
- 新年辭중 52회의 박수(昨年 56回)로 絶對的 支持를 誇示하였음.

- 結論적으로 금년 金日成 新年辭는, 南北「合意書」의 成果 및 履行을 強調함으로써 南北關係 改善에 대한 意志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밖에 例年과 같은 前年度 實績誇示 및 새해의 政策方向 提示와 관련된 특별한 內容은 없고, 住民의 團合(“黨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과 그들式 社會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을 鼓吹시키는 日常的인 內容을 담고 있음.

添 附

'91-'92年度 新年辭 主要內容 比較

| 區 分 | '91年 | '92年 |
|------------------|---|--|
| 對 內 分 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式 社會主義 優越性 發揚 -主體思想 基礎우에 3大革命 強化 -黨의 主體的 革命路線에 따라 社會主義 建設 ○黨과 人民大衆의 統一團結 -黨과 人民大衆의 統一團結은 社會主義 建設의 위대한 推動力 ○精神·物質 生活水準 向上 -유족한 人民生活 마련이 黨의 最高原則 ○農業·輕工業의 同時發展 -알곡, 천, 人民消費品 增産으로 人民物質生活 向上 -石炭·電力·輸送·金屬工業을 先行部門으로 設定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式 社會主義 建設에 總力 -3大革命 強化로 主體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激變하는 情勢에 主動的으로 對處 -全體人民이 黨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式 社會主義의 勝利에로 前進 ○社會主義 文化, 文學藝術建設 및 教育改善이 現時期 社會主義 固守·發展에 重要 ○自立的 民族經濟 強化로 食衣住 問題 解決 -農業, 輕工業 계속 發展 -올해를 「大農의 해」로 設定, 農業生産의 劇期的 增大 圖謀 -輕工業發展으로 人民消費品 生産增大 -電力, 石炭生産 增大 및 鐵道運輸 發展이 當面 重要課業 |
| 對 南 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軍事問題 先次的 解決 -不可侵宣言 採擇 -T/S 中止 -朝·美 平和協定 締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南北「合意書」는 祖國統一 綱領 -統一實現의 새로운 里程標 -7.4共同聲明과 더불어 가장 正當한 祖國統一綱領 |

| | | |
|----------------------------|--|---|
| <p>統 一 分 野</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軍 및 核武器 撤收 ○統一方途 確定 -1民族 1國家, 2制度 2政府의 聯邦制式 統一 -單一制度에 의한 吸收統一 反對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召集 -南北의 當局·政黨·團體 代表가 統一方途 合意 -聯邦制 完成問題 協議 用意 ○UN 單一議席 加入 不反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合意書의 성실한 履行으로 統一實現 ○南北「合意書」의 履行對策 -軍縮, 緊張緩和 -朝鮮半島의 非核地帶, 平和地帶化 -有關國의 「合意書」尊重 및 協調 必要 ○核査察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平和地帶化는 일관된 立場 -核武器 開發의 能力·意思 없으며, 公正性 保障 條件에서 核査察 受容 用意 -核査察 관련 不當한 壓力 不容納 ○統一의 根本은 民族大團結 -南·北·海外 各界各層 同胞의 大團結 必要 -폭넓은 對話 및 多方面的 協力·交流 發展 |
| <p>對 外</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反帝·自主的 對外政策 堅持 -帝國主義의 侵略的 本性에 강력히 鬪爭 -社會主義의 勝利는 歷史의 法則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反帝鬪爭 強化 -帝國主義者들의 侵略策動 粉碎 -일부 社會主義나라의 挫折을 社會主義 終末이라고 하는 것은 無知의 結果 |

| | | |
|----------------|--|---|
| <p>分 野</p> | <p>○自主·平和·親善政策 基調 維持 -社會主義·불력不加擔 國家 및 世界 여러나라 人民들과 親善·協 調關係 發展 -集團的 自力更生原則下에 南南 協調 發展 ○아시아 人民의 團結·協調 -아시아 人民들의 團結·協調로 아시아의 安全과 共同繁榮 이룩</p> | <p>○自主·平和·親善政策 基調 維持 -社會主義 나라들과의 團結과 連帶性 強化 -불력不加擔 나라들과의 親善·協 調 強化로 變化된 情勢에 對處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安全 守 護에 努力 -核武器 및 大量 殺戮武器 廢棄</p> |
|----------------|--|---|

南浦地域の 産業立地 分析*

1992. 1

1. 최근 北韓의 輕工業政策方向

○'80年代 中盤以後 北韓은 「衣·食·住」關聯産業인 輕工業 部門의 育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왔음.

—1984年 金日成 指示로 「8·3 人民消費品」增産運動 推進

—1985年 金日成 平壤市 「8·3 人民消費品」直賣店 事業 現地 指導

—1989年 金日成 新年辭를 통해 1989年을 「輕工業의 해」로 設定

—1989年 黨6期 第17次 全員會議를 통해 「輕工業發展 3個年計劃('89 ~'91)」 推進

—1990年 6月 全國 輕工業大會 開催

—1992年 1月 「輕工業革命方針」 遂行 促求

○특히 최근 輕工業部門에 대해 金正日을 前面에 내세우는 特徵을 보이고 있어 政治·經濟的으로 注目을 끌고 있음.

○이로 볼 때 北韓의 輕工業 育成策은 金正日 權力承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分析됨.

—北韓은 輕工業 育成을 통해 生必需品 不足으로 인한 住民들의 不滿을 解消시키면서

—金父子 生日行事에 對備, 金日成·金正日의 「사랑의 膳物」, 「配慮

* 이 報告書는 金宇中會長의 訪北時 合意한 南浦地域 輕工業團地 造成計劃에 대하여 産業立地的 側面에서 分析·評價한 것임.

商品」등을 충분히 保障함으로써 특히 金正日의 「指導者像」부각에 부심하고 있음.

2. 南浦港의 産業立地

가. 一般事項

○規 模：北韓 第2의 都市

○人口 및 面積：79萬名, 829km²

○行政區域

—解放以後 平安南道에 속해 있던 것을 1979.12 行政區域 改編으로 分離

—1980. 3 大安市와 龍崗郡을 편입하여 南浦直轄市로 승격

—1984. 4 南浦直轄市의 大安市와 南浦區域을 廢止하고 大안, 강서, 천리마, 항구, 와우도의 5個地域을 新設

—1992. 現在 5區域 1郡 1邑 37里 61洞으로 편성

○自然條件

—南北으로 뻗은 오석산맥에 국사봉(506m), 오석산(566m), 백암산(419m) 등이 있고

—東部와 南部地域으로 흐르는 대동강과 봉상강, 인황천, 삼화천, 서천 등 여러개의 河川이 있으며

—年平均 氣溫은 1월에 -6.5℃, 8월에 24.4℃, 年平均 降雨量은 約 840mm임.

나. 輸送·通信

- 南浦直轄市는 平壤近郊에 位置한 港口都市로서 輸送·通信網이 比較的 發達되어 있음.
- 南浦港은 大동강과 재령강의 合流地點으로서 平壤市 西南쪽 約 70km, 大동강 下流에 位置하며 中國 大連市와는 180해리(333 km)의 거리에 있음.
- 특히 서해갑문(남포갑문)의 建設로 內陸水路 輸送이 容易하며 對外貿易港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음.
- 서해갑문은 最大 2千톤, 2萬톤, 5萬톤級 船舶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3個의 갑실과 5個의 배수갑문, 1個의 큰물 배수갑문 保有
- 滿潮時 水深 12—13.5m, 航路水深은 16—25m로 南浦港은 北韓 西海岸 第一의 貿易港
- 通信網 역시 平壤電話局 傘下 朝鮮中央電信電話局의 通信 連絡 體系를 이용함으로써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判斷됨.

서해갑문의 主要 諸元

| 區 分 | 內 譯 |
|------|---|
| 배수갑문 | 總 36個 |
| 1호갑실 | 南浦方面에서 黃南道 方面으로 7km지점에 위치한 避島에서 黃南 송곳리간의 1km구간, 수심 30m지역에 폭 25m, 길이 250m의 2천 톤급 船舶通行 可能 |
| 2호갑실 | 폭 35m, 길이 350m의 5만톤급 船舶 通行 可能 |
| 3호갑실 | 2만톤급 通行 可能 |
| 조종실 | 6층 규모의 갑문중앙통제실과 각 갑실별 조종실(높이 30—37.7m) |

| | |
|------|--|
| 其他事項 | 설치 2-3호갑실은 大型船舶 通行에 불편이 없도록 길이 90m 정도의 90° 回轉橋 설치 8km방조제, 南浦와 黃南道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 보유 |
|------|--|

다. 港灣施設과 對外航路

- 南浦項은 年間 荷役能力 250萬톤 규모의 無煙炭 專用埠頭를 보유하고 있으며 Bag Cement 荷役施設(120톤/hr×3대), Bulk Cement 荷役施設(500톤/hr×1대) 및 食糧荷役施設(2,000톤/hr×2대)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北韓 東部 제일의 港口인 청진항과 함께 100톤급 重型 Crane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南浦市에 年間 100萬톤 浚渫能力을 갖추게 되는 Steel Structure (鐵鋼構造物)埠頭를 建設中에 있음.
- 對外航路로는 對中國·日本 및 東南亞 航路가 開設되어 있음.

| 開通 日字 | 區 間 | 海 運 會 社 |
|--------------|----------------------|-----------|
| 1962. 12. 26 | 南浦-도쿄-요코하마-오사카-고베 | 亞細亞海運株式會社 |
| 1964. 6. 10 | 南浦-上海 | 中國 遠洋海運公司 |
| 1964. 6. 27 | 南浦-오사카, 고베, 도쿄, 요코하마 | 朝鮮東海海運會社 |
| 1964. 12. 24 | 南浦-東南亞 | 朝鮮東海海運會社 |
| 1965. 2. 13 | 南浦-東南亞 | 朝鮮東海海運會社 |
| 1972. 2. 9 | 南浦-나가사키 | 共同通商 |

라. 工業用水 및 에너지

○北韓은 서해감문 完工時(1986.6) 西海地區의 간석지 開墾에 필요한 用水를 비롯한 大同江流域의 農·工業用水 問題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이후 南浦市 일원지역에 千里馬 製鋼聯合企業所(舊 강선제강)의 能力 擴張을 비롯한 各種 工場建設을 推進하였으며 이에 따라 大同江은 農·工業用水 供給源으로 되고 있음.

○에너지 供給에 있어서도 南浦市 및 隣近 平壤地域의 水·火力發電所로부터 安定的인 電力供給이 가능함.

—대동강 本流를 따라 남포-미림-봉화-동남-하단-금성(대동강 水力)등 6個의 감문발전소가 建設되어 있고

—火力은 南浦火力(40萬kW), 12月火力(15萬kW)을 비롯, 平壤市の 平壤火力(50萬kW)과 現在 建設中인 東平壤火力(50萬kW)등으로부터 電力을 安定的으로 供給받을 수 있음.

3. 綜合判斷

○北韓當局은 최근 輕工業部門 關聯産業 育成에 매우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는 對內的으로 慢性的인 生必需品의 供給不足問題를 해결함으로써 北韓住民에게 金正日의 權力承繼를 合理化하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輸出促進을 통해 不足한 外貨를 獲得하기 위한 것으로 評價됨.

- 이번 南浦地域의 輕工業團地 造成과 關聯하여 産業立地面에서 살펴볼 때,
 - 南浦市가 平壤近郊 都市로서 北韓 最大의 港口施設을 保有, 內陸水路 및 海外航路가 형성되어 海運輸送이 용이한데다가
 - 製鐵, 製鍊所를 비롯한 각종 基礎素材産業 및 輕工業 工場이 發達해 있으며
 - 隣近鑛山 및 發電所로부터 에너지와 原資材의 安定的 供給이 可能하다는 點에 비추어 北韓地域內 最適의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南浦市에 輕工業團地가 成功的으로 造成될 경우 隣近地域의 産業聯關效果와 더불어 이로 인한 經濟成長 및 雇傭效果가 매우 클 것으로 評價됨.

金正日, 北韓式 社會主義 固守·完成 「談話」 發表

1992. 2.

1. 概 要

- 北韓은 2. 4 中放을 통해 金正日이 1. 3 黨中央委 責任일꾼들과 한 長文의 「談話」 (“社會主義 建設의 歷史的 教訓과 우리 黨의 總路線”)를 發表하고 連日 이를 反復報道하고 있는 바, 同 「談話」는 ①一部 社會主義國家의 挫折의 原因, ②北韓式 社會主義 固守·完成의 正當性 등을 強調하는 內容임.

<談話 要旨>

1. 社會主義 建設의 歷史的 教訓

- 최근년간 一部 나라들에서 社會主義가 挫折되고 資本主義가 復歸되었으며, 얼마전에는 蘇聯이 解體되어 자기 存在를 끝마쳤음. 이러한 事態를 놓고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은 마치 資本主義가 勝利하고 社會主義가 終末을 告한 것처럼 떠들고 있음.
- 社會主義를 建設하던 一部 나라들에서 社會主義가 挫折된 根本 原因은 人民大衆을 中心으로 한 「主體」를 強化하지 못하고 主體의 役割을 높이 지 못한데 있음.
- 마르크스主義는 人民大衆의 階級的 解放을 實現하는데 不滅의 貢獻을 하였으나 時代와 歷史가 變化하는 만큼 마르크스主義도 歷史的 指向性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마르크스主義는 社會主義 生産方式이 確立되면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 넘어가는 社會革命이 끝나는 것으로 認定하고 經濟建設을 하여 生産

력을 發展시키기만 하면 人類의 理想社會인 共產主義를 實現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社會主義 制度가 선 다음 革命을 계속하여 社會主義, 共產主義 社會를 어떻게 建設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옳은 回答을 줄 수 없었음.

○그런데 一部 社會主義 나라에서는 마르크스主義의 歷史的 志向을 보지 않고 마르크스主義를 教條主義的으로 適用하고 修正主義的인 政策을 實施하였음.

○그 結果 社會主義 社會의 主人인 人民大衆이 主人으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은 經濟建設도 잘 되지 않고 社會의 모든 分野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어 社會主義의 挫折을 가져오게 된 것임.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이론바 多元主義가 許容될 수 없음. 多元主義가 標榜하는 思想에서의 自由, 政治에서의 多黨制, 所有에서의 多樣化는 個人主義와 自由主義에 基礎한 生存競爭이 支配하는 資本主義 社會의 政治方式임. 社會主義 社會에서 多元主義를 許容하는 것을 결국 社會主義 社會의 基礎를 허물고 人民의 政權을 顛覆하기 위한 反革命的 策動의 길을 열어주는 것임.

○歷史的 經驗은 社會主義에 대한 굳은 信念과 올바른 指導思想을 가지고 革命의 主體를 끊임없이 強化하며, 어떤 環境속에서도 社會主義原則을 固守하고 自主性에 基礎한 同志的 團結과 協調를 強化해 나갈때 社會主義 偉業은 勝利의 길을 따라 前進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에 대한 우리 黨의 總路線의 正當性

○人民政權을 強化하고 그 機能과 役割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思想, 技術, 文化의 3大 革命을 철저히 遂行하는 것은 首領이 내놓은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의 總路線임.

○先行 理論에서는 階級的 支配가 필요없게 되면 社會主義 國家가 凋落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러한 見解는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에 符合되지

않음. 社會主義 國家의 統一的 指揮機能은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이 深化될수록 더욱 強化되어야 하며, 共產主義 社會에 가셔도 必要하게 됨.

○過渡的 社會인 社會主義 社會에서 政權의 獨裁機能을 弱화시킨다면 人民들에게 民主主義的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여 줄 수 없으며 革命의 戰取物을 守護할 수 없고 社會主義 制度 自體를 危險에 빠뜨리게 됨.

○人民政權을 強化하고 그 機能과 役割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思想, 技術, 文化의 3大 革命을 철저히 遂行할데 대한 우리 黨의 總路線은 우리 나라 社會主義 建設에서 빛나게 具現되고 있으며, 實踐을 통하여 그 正當性이 뚜렷이 實證되었음.

○우리 人民은 앞으로 그 어떤 복잡한 情勢가 造成되던지 우리 앞에 그 어떤 試鍊이 닥쳐오던지 한걸음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主體 思想을 具現한 우리 黨의 總路線을 끝까지 貫徹하여 社會主義·共產主義 偉業을 빛나게 完成할 것임.

2. 分 析

○최근 北韓은 權力承繼와 관련, 金正日이 탁월한 思想家임을 集中 浮刻시키고 있는 바

-이번 長文(放送時間: 70分)의 「談話」도 그가 理論面에서 뛰어난 領導者임을 宣傳하려는 意圖로 보이며

※1. 28 中放은 金正日이 '77年 以後 總 400卷의 理論書를 著述하였다고 報道한 바 있음.

-1. 3字 「談話」를 1個月 뒤늦게 報道한 것은 年初의 金日成 新年辭 宣傳과의 重複을 피하면서 2月의 各種 金正日 生日

行事に 맞춰 同「談話」의 宣戰效果를 極大化하려는 目的 等
으로 分析됨.

○ 同「談話」는

— 全體的으로 東歐 社會主義의 挫折原因 및 北韓式 社會主義
의 固守·發展을 力說하였는 바, 이같은 內容은 既存의 住民
精神武裝用 宣傳論理와 同一하나

※ 金日成의 '91. 9. 16字 日本 岩波書店 社長 會見 및 金년도
新年辭 등

— 이미 東歐에서 그 終末을 告한 마르크스主義를 肯定的 批判
의 視角에서 이를 時代의 變化에 맞게 發展시켜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면서

※ 金正일은 '86. 7. 15의 「主體思想 教養에서 提起되는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에서도 “유물론과 변증법이 세계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는 것을 해명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인 인간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밝혀주어야 할 것”
이라고 言及하였음.

— 主體思想에 基礎하여 思想·技術·文化의 3大 革命을 完遂함
으로써 人民中心의 진정한 社會主義·共產主義를 實現할 수
있으며

※金正日は 위 論文에서 “주체철학은 유물론과 변증법의 원리를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물질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유물변증법도 더욱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首領과 黨의 指導路線에 따라 人民大衆 中心의 北韓式 社會主義를 固守·完成시켜 나아가는 것이 正當한 歷史의 發展法則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點 등이 特徵임.

○특히 이번 「談話」에서

—思想의 自由, 多黨制, 所有의 多樣化 등 “多元主義”를 강력히 排擊하고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消滅論”을 批判하면서 社會主義·共產主義의 建設이 深化될수록 國家의 “獨裁機能은 強化되어야 한다”고 強調한 點 등은

—向後 北韓 對南政策의 方向을 예측케 하는 것인 바, 金正日 登場 以後에도 對南面에서는 별다른 變化가 없을 것임을 示唆하는 것으로 分析됨.

北韓의 賃金 및 農產物 收買價 引上措置 關聯 分析

1992. 2.

1. 措置 內容(中央人民委員會 政令)

- 北韓은 2.13日 中央人民委員會 政令을 통해 全體 勞動者·技術者·事務員들의 生活費와 社會保障者들의 社會保障年金, 學生들의 獎學金을 今年 3.1부터 大幅 引上한다는 內容의 「住民福祉向上施策」을 發表했음.(中放 2.15)

<政令 要旨>

- 全體 勞動者·技術者·事務員들의 生活費와 社會保障者들의 社會保障年金, 學生들의 獎學金을 높이며, 協同農民들의 수입을 높이는 國家的 施策을 實施함.
 - 勞動者·技術者·事務員들의 生活費를 平均 43.4% 引上
 - 社會保障者들의 社會保障年金을 平均 50.7% 引上
 - 大學, 專門學校를 비롯한 各級學校 學生들의 獎學金을 平均 33% 引上
 - 協同農民들의 分배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國家收買價格을 벼는 26.2%, 강냉이는 44.8% 引上, 그밖에 일부 農業生產物에 대한 國家收買價格을 引上
 - 住民食糧供給價格은 變動없이 지금대로 適用
- 이 施策은 1992年 3月 1日부터 實施함.
- 政務院은 이 政令을 정확히 執行하기 위한 行政 實務的 對策을 세울 것임.

2. 措置前 現況

<賃 金>

○北韓은 1977년 12月, 鑛業, 機械, 建材, 運輸部門 등 일부 低賃勤勞者들의 賃金을 10-24% 引上한 以後 長期間동안 全體勤勞者들의 賃金을 凍結해 왔음.

—'92年 2月 現在 全體勤勞者들의 月平均 賃金水準은 約 70원(33弗)水準에 不過

<農產物 收買價>

○協同農場員들이 結算분배로 받은 農產物은 1년에 1人當 260kg (粗穀)의 食糧을 제외한 나머지를 國定價格으로 全量收買 하고 있으며, 現在 國家收買價格은 쌀 1kg에 65전, 雜穀 1kg에 41전으로 20여년동안 小幅引上에 그쳤음.

—'71年度 收買價 : 쌀 60전, 옥수수 30전

※協同農場員의 結算분배는 總生産量에 生産費 등을 控除한 나머지를 勞力日數에 따라 分배

<獎學金>

○現在 北韓 大學 및 專門學校 學生들에 대한 獎學金은 金日成獎學金(1人當 30원)과 一般獎學金(15원) 등이 支給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金日成獎學金은 各學校 1-2名에 不過하며, 一般獎學金은 寄宿

舍 利用 學生을 對象으로 支給

<社會保障年金>

- 20年以上 勤務後 退職한 年老年金 對象者는 月 16원 30전의 現金과 1日 300g의 食糧을 配給받고 있으며,
- 英雄稱號 및 國旗勳章 1級 受賞者는 월 60원의 現金과 1日 600g의 食糧을 配給받고 있음.(人員數 未詳)

3. 引上措置의 背景

<貨金 및 農產物 收買價 長期凍結로 인한 住民不滿 增大>

- 北韓은 經濟事情의 惡化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軍事費, 體制維持 및 金父子 偶像化를 위한 소위 記念碑的 大建設事業 등 非生産 部門의 支出이 增大됨으로써 특히 生必需品 不足으로 인한 住民消費生活은 극도의 희생을 강요당해 왔음.
- 따라서 '80年代 中盤以後 農民市場 등을 통한 生必需品의 暗去來가 盛行하고 있고, 또한 海外同胞 訪北者 增加, 「外貨벌이運動」등으로 外貨所持가 가능한 일부 階層들의 外貨商品 이용이 增加함에 따라 地域間·階層間 消費水準隔差가 深化되어 社會的 不滿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 최근 暗市場에서는 술·담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生必需品 購入이 可能하며, 쌀 1kg의 暗去來 價格은 200원이상 (配給價格; 8전), 치약 1個는 8원(國定小賣價格; 1원 40전)

<體制優越性 誇示 및 金正日 指導者像 浮刻>

- 東歐 및 蘇聯의 社會主義 體制 崩壞以後 北韓은 「우리式 社會主義의 優越性」 宣傳과 思想教養을 強化하고 있으나 住民들의 實質的인 生活水準 向上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說得力을 잃고 있음.
- 따라서 金正日의 權力承繼 마무리 과정에서 住民들의 不滿을 緩和시켜 現體制에 대한 支持基盤을 確固히 하고, 金正日에 대한 自發的인 忠誠心 誘發이 必要한 時點임.

<南北關係의 進展에 對備>

- 南北基本合意書 發效에 따른 南北交流·協力の 活性化에 對備하여 南北韓 生活水準 隔差로 인한 北韓住民들의 思想動搖 및 體制離脫 防止策을 講究해야 할 必要성과
- 南韓 勤勞者들에 대한 北韓體制的 優越性을 誇示, 우리 社會의 階層間 葛藤雰圍氣를 造成함으로써 北韓體制 同調勢力을 擴大해 보려는 底意도 있는 것으로 보임.

4.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一時的인 勤勞者들의 生産意慾 刺戟>

- 금번 措置의 結果 北韓住民들의 貨幣所得 水準은 최소한 40% 이상 增加함으로써 短期的으로는 이른바 「貨幣幻覺」을 통한 勤勞者들의 生産意慾을 刺戟하는 效果가 있을 것임.

—北韓 全體 勤勞者들의 月平均 賃金은 70원 水準에서 104원으로

增加

- 協同農場員의 家口當 所得은 年間 約 720원 增加
- 年老年金은 24원 60전, 英雄稱號 및 國旗勳章 1級 受賞者는 90원 40전으로 增加
- 金日成獎學金 40원, 一般獎學金 20원으로 增加

○ 그러나 住民들의 名目所得 增加와 比例하여 生必品 供給增大가 이루어져야 實質 生活水準 向上效果를 얻을 수 있으나, 現在 北韓의 經濟與件으로 보아 長期的·安定的 生活水準 向上 效果는 期待할 수 없음.

<財政支出 大幅 增加로 인플레이 誘發>

- 금번 措置에 따라 北韓이 今年 豫算에서 追加的 支出이 要求되는 財政規模는 최소한 40億원 水準으로 判斷되며 이는 '91年度 歲出豫算의 11.3%에 해당하는 金額임.
- 이와같이 消費財 生産 및 供給量을 늘이기 위해서는 軍事費 支出을 削減하거나 重工業 投資의 縮小 調整이 不可避하며, 이러한 措置없이 貨幣 增發에 의해 追加財源을 調達할 경우 심각한 인플레이를 誘發하게 될 것임.

<貿易赤字幅 및 外債 增加>

- 勤勞者 및 農家의 名目所得 增加에 따라 生必品 需要가 늘어남으로써 輕工業 製品의 輸出餘力을 低下시킴은 물론 輸入需要를 增加시켜 貿易 赤字幅은 더욱 늘어날 것임.

- 따라서 日本을 비롯한 對西方 關係改善 및 經濟協力이 지연될 경우 外債의 累增으로 인한 對外經濟與件 惡化는 北韓 經濟難을 더욱 加重시키게 될 것임.

5. 展 望

- 금번 措置를 契機로 北韓의 經濟政策은 重工業 優先의 政策基調로부터 輕工業 發展에 보다 많은 比重을 두는 方向으로 轉換될 가능성이 높음.
- 對西方 關係改善 努力과 선봉-나진 自由經濟貿易地帶開發 등 經濟의 對外開放을 보다 積極化해 나갈 것임.
- 「南北基本合意書」의 履行과 關聯하여 北韓의 南北 經濟交流·協力에 있어서도 經濟的 實利를 追求하는 次元에서 보다 積極性을 보일 것으로 展望됨.

金正日 50回 生日行事 動向

1992. 2

1. 概 要

- 北韓은 새해초부터 言論媒體를 통해 金正日 讚揚·宣傳을 強化하는 가운데 金正日 50回 生日을 記念하는 名種 對内外 行事 開催事實을 報道하고 있는 바,
 - 對內的으로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백두산 밀영답사」, 「전국 학생소년 예술축전」 등을 進行하고
 - 對外的으로는 海外親北團體를 動員, 金正日 生日 「경축 준비위원회」를 아시아·아프리카 地域의 國家에서 처음으로 結成 (30여개) 하였으며 이 委員會를 통해 慶祝集會, 映畫鑑賞會, 寫眞展示會등을 進行하고 있음.
- 특히 放送媒體는 連續放送物을 製作, 各分野에 걸쳐 이목한 모든 공적이 金正日의 業績이라고 讚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海外言論媒體를 동원한 宣傳內容을 引用報道하는 등 예년보다 金正日 偶像化를 위한 宣傳煽動을 一層 強化하고 있으며
 - 또한 '南朝鮮人民' 들도 金正日을 欽慕·尊敬하고 있다는 날조 記事를 금년들어 5회에 걸쳐 報道, 金正日을 '全朝鮮民族의 指導者'로 浮刻시키고 있음.

- 그외에도 各種 金正日 偶像化 文藝物·圖書製作과 白頭山 形象 郵票·郵便葉書を 發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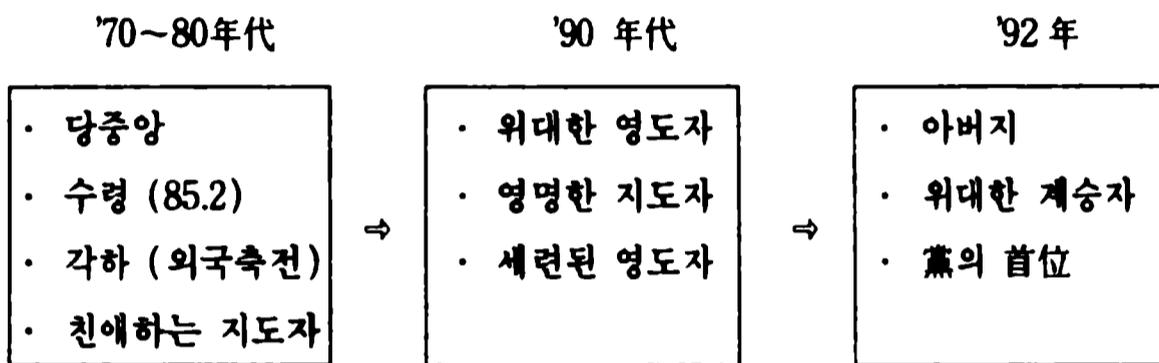
2. 分 析

- 金正日 生日行事는 1974. 2부터 시작되었으며 1975년부터는 이 날을 休務日로 하였고, 1980. 10 勞動黨 第6次大會 이후 行事規模를 크게 擴大하면서 1982년 40회 生日부터 中央人民委 政令으로 2월 한달을 「2월의 명절」로 指定, 金日成 生日行事에 버금가는 規模로 擴大해오고 있음.
- 金正日 生日과 관련한 北韓의 主要 論調의 變化는
 - 1980년대 中盤까지 : 文化藝術分野에서의 金正日의 天才性 및 金日成에의 孝誠 讚揚
 - 1987 - 1988년 : 主體思想의 解釋과 發展에 기여한 思想理論的 指導者로서의 偉大성과 「平祝」準備를 위한 建設現場에서의 탁월한 實務 指導能力 讚揚
 - 1989년 : 社會主義 建設을 責任지는 指導者로서의 面貌와 統一을 위한 努力도 浮刻
 - 1990 - 91년 : “智·仁·勇을 兼備하신 偉대한 指導者” “現代 朝鮮을 빛내이시는 세련된 領導者” 등의 題下의 造作 報道를 통해 金正日이 이미 南韓과 外國에서 偉대한 指導者로 推仰받고 있다고 宣傳

- 1992年 : 金正日을 '主體革命偉業의 偉대한 繼承者'로 強調하면서 '軍事의 英才', '文學藝術의 英才'등으로 呼稱, 各分野에 있어 탁월한 能力의 '領導者' 임을 宣傳, 權力 承繼의 當爲性을 浮刺시키는데 注力하고 있음.

※ 金正日 主要呼稱의 變化內容

(사안에 따라 시대구분 없이 혼용)



○ 이번 金正日 50回 生日行事 內容中 注目되는 점을 살펴보면

- 예년 (2월초)에 비해 生日行事時期를 1月初로 앞당겨 實施함으로써 일찍부터 慶祝雰圍氣를 造成하는 가운데 金日成 生日 行事에만 進行하던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를 금년들어 처음 金正日 生日에도 實施하는 등 그 行事 規模가 質·量的 으로 擴大되었으며
- 吳振宇 (人民武力部長)·桂應泰(黨秘書)등의 로동신문 記名 論說을 통해 金正日에 대한 軍部 및 黨의 絶대적인 忠誠을 다 짐함과 아울러
- 各級 機關(外交部 등)에 하달한 金正日 親筆書翰 및 感謝文 傳達式에서 該當團體가 忠誠을 다짐케 하는 등 金正日에 대한

欽慕・讚揚 雰圍氣 擴散을 피하고 있는 점임.

-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가나, 인도 등 後進國 言論媒體와 親北團體를 통해 金正日 業績 및 文獻을 重點 弘報하고 있으며 또한 몽골・튀니지 등의 幼稚園, 學級 등의 名稱을 金正日의 이름을 딴 名稱으로 變更하는 등 指導者로서의 金正日의 偉大性을 浮刻 宣傳하는데 注力하고 있음.

※ 名稱 變更 事例

- 페루, 따라따 第 1039 人民學校 6학년 卒業班
⇒ 金正日 卒業班
 - 튀니지, 구두스학교 9학년 1반 ⇒ 金正日 學級
 - 몽골, 다르완시 第 21 幼稚園 ⇒ 다르완시 金正日幼稚園
- 이상과 같은 점을 綜合해 볼 때 이번 50回 生日行事는 金正日의 領導者로서의 資質을 集中 浮刻시킴으로써 北韓社會 底邊에 權力承繼 基盤을 굳게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分析됨.

【添 附】

金正日 50回生日 關聯 主要行事

(2. 12현재)

1. 對內行事

| 行 事 名 | 日 時 및 場 所 | 主 要 行 事 |
|---|---|---|
| 평양시 학생 소년들의 1992 년 새해설맞이 모임 진행 | 91. 12. 31 平 壤 | · 同 行 事 時 노래를 통해 金日成을 '할아 버지', 金正日을 '아버지'로 呼稱 |
| 第 8次 全國 問答式學習 競演 進行 | 1. 10 ~ 16 | · 主題: '黨思想 理論의 偉大性' '領導의 賢明性' '고매한 德性' 등 |
| 忠誠의 便紙 傳達 이어달리 기 進行 | 1. 13 白頭山 밀영 등 全國 21개 지점 에서 출발 | · 각 '대열'은 出發地點에서 群衆集會를 開 催, 金正日에게 忠誠을 다짐하는 편지를 채택한 후 출발 · '대열'은 勞力英雄·勞力革新者·模範科 學者·文化藝術人·軍人·靑少年學生들 로 構成 |
| 白頭山 밀영· 正日峯 踏查 | 91. 11~1월중순 | · 勤勞者·軍人·靑少年 18, 000여명 踏查 |
| 出版報道部門 研究討論會 進行 | 1. 23 人民文化宮殿 | · 主要參席者: 玄俊極 (로동신문 責任主筆) 金基龍 (中央通信 社長) 金貞淑 (民主朝鮮 責任主筆) 出版報道機關 責任者들 |

| 行 事 名 | 日 時 및 場 所 | 主 要 行 事 |
|--|--|--|
| 第 2次 2. 16 藝 術 賞 個 人 競 演 大 會 | 1. 30 ~ 2. 10 平 壤 2. 8 文 化 會 館 | · 開 幕 辭 : 장철 (副 總 理 兼 文 化 藝 術 部 長) · 聲 樂 · 器 樂 · 舞 蹈 部 門 에 中 央 및 地 方 藝 術 團 體 및 海 外 同 胞 藝 術 人 參 加 |
| 양강도내 靑年 들, 혜산 · 백두 산 사이 踏 查 行 軍 進 行 | 2. 1 양강도 혜산 | · 양강도내 工 場 企 業 所, 協 同 農 場, 大 學, 高 等 中 學 校 에 서 選 拔 된 男 女 社 勞 靑 員 216 명 參 加 |
| 全 國 學 生 少 年 藝 術 祝 典 開 幕 | 2. 3 ~ 25 平 壤 學 生 少 年 宮 殿 | · 藝 術 祝 典 · 綜 合 公 演 으 로 區 分 하 여 進 行 |
| 藝 術 人 들 의 慶 祝 舞 臺 | 2. 9 ~ 平 壤 國 際 映 畫 會 館 | · 藝 術 映 畫 攝 影 所 및 2. 8 藝 術 映 畫 攝 影 所 關 係 者 등 모 든 映 畫 藝 術 人 參 席 |
| 映 畫 上 映 旬 間 | 2. 11 ~ 20 平 壤 을 비 롯, 各 道 · 市 · 郡 所 在 地 映 畫 館 | · 最 近 製 作 한 劇 映 畫 「민족과 운명」 (4부 작) 등 金 正 日 治 績 宣 傳 作 品 上 映 |
| 第 2次 朝 鮮 映 畫 祝 典 | 2. 12 ~ 18 平 壤 國 際 映 畫 會 館 | · 劇 映 畫 「효녀」와 「음악가 정율성」 등 을 비 롯 去 年 에 製 作 된 優 秀 作 品 出 品 |
| 白 頭 山 賞 國 際 體 育 競 技 大 會 | 開 催 豫 定 2. 12 ~ 18 平 壤 永 上 館 | · 노 르 웨 이, 러 시 아 등 15 개 국 150 여 명 參 加 |
| 第 1次 兒 童 音 樂 放 送 藝 術 舞 臺 | 2. 10 平 壤 | · 全 國 의 學 生 · 少 年 들 과 幼 稚 園 어 린 이 參 加 |

2. 文藝物 製作 및 圖書出版

| 製作 및 出版社 | 內 容 |
|--------------------|----------------------------------|
| 科學百科辭典出版社 | 專門科別「醫學全書」(총 45 권) |
| 朝鮮勞動黨出版社 | 金正日文獻 11卷 |
| 朝鮮勞動黨出版社 · 金星出版社 등 | 金正日 偉大性 稱頌圖書 34種 |
| 金星青年出版社 | 金正日이 提示한 靑少年들의 敎養을 위한 그림책 (총 5권) |
| 朝鮮映畫攝影所 | 藝術映畫 '화랑과 진장군' |
| 朝鮮記錄映畫攝影所 | 記錄映畫 '백두 삼천리벌' |
| 萬壽臺創作社 | 金正日 革命活動 관련 美術作品 70여점 |
| 朝鮮畫報社 | 畫帖 '朝鮮에서의 建設' |
| 朝鮮藝術映畫攝影所 | 藝術映畫 '孝女' (1. 2부) |
| 其 他 | 白頭山 形象 새 우표 · 우편엽서 |

3. 各種 記念工事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旅客船「정일봉 소년호」, 貨物船「만경봉 92호」 진수 · 삭주 食料工場 現代化工事 完了, 광문 合作會社 조업 · 體育人宿所 建立, 홍산 鑛山 조업 |
|---|

4. 主要 慶祝 報道活動

| 日 字 | 主 要 內 容 | 報 道 媒 體 |
|-------|---|---------|
| 1.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군사의 영재 강철의 영광” - 혁명무력을 필승불패의 강철의 대오로 강화 발전시킨 김정일업적 찬양 | 중 방 |
| 1.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 구호들에 반영된 백두광명성” - 金正日 白頭山 出生關聯 偶像化 | 평 방 |
| 1.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앞길에 밝혀주는 불멸의 혁명적 기치” - 김정일 업적의 승계 발전을 위한 참다운 후계자로서의 김정일 찬양 | 로동신문 |
| 1.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91년도에 480 여명에게 결혼식상과 생일상 마련 | 중 방 |
| 1.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화 만발 선전 - 지금까지 모두 10여만본의 ‘꽃모’를 보급 | 중 방 |
| 1.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 밀영 참관자 증가 - 밀영이 개영된 1987. 2. 11 이후부터 현재 까지 참관자는 116만명 | 중 방 |
| 1.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심단결의 성세를 더욱 굳건히 하시어” | 중 방 |
| 2.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에 대한 구호문헌, 각지에서 발굴 - 김정일에 대한 존칭 수식어 100여가지로 표현 · 장자산 혁명사적지 답사자 증가 - 올해들어 2만여명 | 중 방 |

| 日 字 | 主 要 內 容 | 報 道 媒 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이 시와 가사작품 480 여편을 지도했다고 선전 | 평 방 |
| 2.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이시고 승리의 상징이시다.” — 남한주민들의 김정일 찬양 | 중 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다.” —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발전 풍부화시킨데 대한 업적 찬양 | 중 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마련하시어” — 문학예술 분야에 대한 업적 찬양 | 중 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업적 찬양 | 평 방 |
| 2.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품모를 지니신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다” — 각 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업적 찬양 (매일 연속방송중) | 중 방 |
| 2.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성의 청년대오를 키워오신 위대한 영도” — 사로청 및 청소년에 대한 업적 찬양 | 중 방 |
| 2.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동지는 주체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 | 중 방 |
| 2.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월한 영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는 우리 당의 세련된 영도” | 중 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각하는 우리시대 가장 위대한 지도자” — 세계 인민들의 김정일 흠모 반향 | 평 방 |

| 日 字 | 主 要 內 容 | 報 道 媒 體 |
|-------|---|---------|
| 2. 10 | · “우리당은 전도 양양한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 김정일 업적 찬양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제고 | 중 방 |

5. 海外 親北 團體 動向

| 期 間 | 行 事 名 | 內 容 |
|------------|----------------------------------|--|
| '91. 8. | · 金正日生日 慶祝準備委員會 結成 | · 91. 8 가이아나에서 처음 結成하여 現在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30여개 結成 |
| '92. 1. 15 | · 慶祝集會 | · 印度朝鮮親善協會 등 |
| 1. 15 | · 慶祝月間 | · 페루朝鮮親善協會 등 |
| 1. 24 | · 「金正日 圖書館」開館式 | · 아시아지역 主體思想研究所 |
| 1. 24 | · 「2 월 16일상 卓球大會」 | · 몽골 |
| 1. 29 | · 記念講演會 | · 印度 全國新聞일군연맹 등 |
| 1. 30 | · 正日峯컵 全國卓球選手權大會 | · 탄자니아 |
| 2. 1 | · 體育大會 | · 말리 慶祝準備委員會 |
| 2. 7 | · 寫眞展示會 | · 수단 등 3개국 |
| 2. 7 | · 名俳優 獨唱會 | · 또고 |
| 2. 7 | · 慶祝集會· 公演 | · 蘇·朝 親善協會 |
| 2. 8 | · 「세계의 自主와 平和에 관한 主體思想 國際討論會」 | · 인도 뉴델리 |
| 2. 8 | · 영화鑑賞會 | · 짐바브웨, 콩고 등 10개국 |

北送 在日僑胞 現況 및 生活實態 *

1992. 4

1. 在日僑胞 北送事業 概要

가. 北送事業 推進背景

- 解放以後 在日同胞社會의 全般的인 雰圍氣는 日本當局의 差別政策, 日本共產黨의 影響, 극심한 生活苦 등으로 인해 左傾性向의 民族意識이 高揚된 狀態에 있었는 바,
 - 1954년경 當時 朝鮮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이던 韓德銖 (現 朝總聯 議長), 李季白 (現 朝鮮社會民主黨 委員長) 이 北韓을 訪問, 在日僑胞社會의 問題點을 說明하자 金日成은 朝總聯 結成 및 北送事業 推進을 指令하였고,
 - 이에따라 1955년 5月 25日 在日本 朝鮮人總聯合會 (略稱 「朝總聯」)를 結成한데 이어, 1959년 12月 14日에 最初로 在日僑胞 北送事業이 이루어졌음.
- 北韓이 朝總聯 結成 및 北送事業을 推進한 주된 理由는,
 - 在日 僑胞社會에 金日成 支持勢力 構築 및 「社會主義 北半部」의 位相強化를 圖謀하는 한편,

* 이 보고서는 귀순자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 資本 및 先進技術의 獲得으로 北韓經濟 發展을 加速化 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나. 北送事業 推進經過

- 在日僑胞 北送事業은 1959 - 1984년까지 총 187회에 걸쳐 10만명 가까운 僑胞가 北送되었는데, 初期 한두해는 志願者가 많았으나 以後 志願者 數가 激減, 그 命脈만을 維持하게 되었음.

※ 總 北送人員 : 93, 340명 (통일원)

93, 366명 (미국 상무부 통계국)

- 北送 初期에는 北韓當局의 강력한 指示와 朝總聯의 「地上樂園」宣傳 등에 힘입어 주로 經濟的 貧困層, 前科者 등이 대거 北送되었으나, 1962년 이후 志願者 數가 점차 減少

※ 1959년 : 2, 942명

1960 ~ 61년 : 71, 837명

1963 ~ 67년 : 13, 832명

- '60년대 後半 金日成 指導體制 確立過程에서 北送 科學·技術者들이 唯一思想體系 및 矛盾된 經濟政策, 蘇聯 科學者에 비해 相對的으로 劣惡한 處遇問題등에 대해 不滿을 表出하자 北韓은 北送者의 10 ~ 15%에 이르는 1만여명의 科學者·技術者를 肅清하였고 1968 ~ 70年 期間中 北送事業 中斷

※ 北韓은 黨 中央委員會 第 4期 16次 全員會議(1967. 6)와

第 5次 黨大會(1970. 11)에서 「主體思想」을 體系化

- 이후 1971년 再開된 北送事業은 志願者가 현저히 減少되어 命脈만을 維持해 오다가 결국 1984년을 끝으로 中斷

※ 1971 ~ 84년 : 4, 729명

- 이와같이 初期 意慾적으로 推進되던 在日僑胞 北送事業이 1985년부터 中斷된 理由は,

- 在日 朝總聯 僑胞社會 內部에서 朝總聯의 獨善的인 事業 推進에 대한 不滿이 누적되어온데다 특히 北韓當局의 北送僑胞 差別政策 등이 알려져 北送 希望者가 激減하였고,
- 國際적인 輿論도 北送僑胞의 人權問題, 劣惡한 生活相, 日本人妻 問題 등으로 인해 惡化된데다,
- 北韓 內部에서도 北送者에 대한 經濟的 負擔, 北韓 住民과의 갈력, 資本主義思想 침습우려 등 諸般 問題點이 露呈되었기 때문임.

* 北送者의 경우 住宅配定 · 職場알선시 優先權을 부여함은 물론 3 ~ 6개월간 白米 配給

다. 北韓住民의 反應

- 北送僑胞에 대한 北韓住民들의 反應은 初期 단순한 否定的 視角에서 近來에는 排他 · 憎惡의 대상으로까지 感情이 惡化되고 있음.

- 初期에는 北送動機에 대한 疑懼心과 함께 불량배·貧困層의 多數 流入으로 인한 社會雰圍氣 混濁 憂慮, 優秀科學者·技術者에 대한 猜忌 등에 그쳤으나,
 - 점차 北送者들의 不誠實한 勞動態度, 이들로 인한 暗去來市場 形成 등 여러가지 社會否定的 側面이 露呈되고, 특히 1984년 合營法 制定以後 北送者들의 生活이 현저히 向上되어 生活水準 隔差가 可視的으로 나타나자 北送者를 羨望하면서도 다른 한편 「排他·憎惡의 對象」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
- ※ 北韓經濟가 惡化되어 北韓貨幣의 實質價値가 下落할수록 北送者들의 生活은 運轉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日本 親姻戚이 送金한 恩貨가 強勢를 나타내기 때문임.

2. 北送 在日僑胞 生活實態

가. 北送僑胞에 대한 處遇

- 北送僑胞에 대한 處遇는 優待事項과 制限事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 優待事項으로는,
 - 住宅配定에 있어서 방 2칸, 부엌 1칸 정도의 新築建物에 單獨入住토록 하고,
 - * 北韓 一般住民의 경우 방 1칸, 부엌 1칸 배정

* 深刻的한 住宅難에도 이들만 같은 住居空間에 1家口 以上 同居시키지 않는 이유는 一般住民과 遮斷시키려는 意圖 內包

· 食糧配給에 있어서는 北送後 3~6 個月間 白米만을 支給하며,

* 一般住民의 경우 쌀, 잡곡 配合比率은 통상 3:7~5:5

· 大學進學時 「考慮對象 順位」에서 優待를 해주고 있는 것 등임.

— <大學進學時 考慮對象 順位> —

【勞動黨 幹部事業 內部規程】

- ① 金日成·金正日 直接 指名者
- ② 金日成 青年榮譽賞·少年賞 受賞者
- ③ 抗日빨치산 直系 後孫
- ④ 黨幹部 子女
- ⑤ 代議員, 勞力英雄 등의 子女
- ⑥ 海外同胞迎接部(僑胞總局), 中央黨 統一戰線部(對外連絡部), 社會文化部(連絡部), 對外情報調查部(調查部) 推薦 北送子女 및 對南工作員 直系 家族
- ⑦ 南朝鮮 出身 義勇軍 直系家族
- ⑧ 一般 住民

— 制限事項으로는,

· 勞動黨 加入이 不許될 뿐만 아니라 職場配置時 社會安全部, 國家保衛部, 檢察所, 裁判所 등에는 配定에서 除外하고 있고,

其他 職場의 경우도 그 組職의 「長」級은 안되고 「副」級까지
만 昇進이 許容되며,

* 1984年 金正日 指示에 의거 勞動黨 加入, 「長」級 昇進時
制限事項은 解除

• 居住地域에 있어서도 前方地域은 禁止되며, 各 地域別로 分散
居住토록 하고 있고,

* 北送者들은 주로 平壤, 新義州, 清津, 咸興 등 大部市에 居
住하고 있으나 前方地域인 開城은 居住가 不可

* 北送者들의 組職·勢力化를 防止하기 위해 分散居住토록
措置

• 海外留學은 北送僑胞 本人은 물론 子女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등임.

나. 北送僑胞 生活水準

○ 北送僑胞들의 生活水準은 過去에는 政的治 背景, 日本居住 親戚
의 思想性(親北·總聯系) 등에 따라 決定되었으나, 最近에는
日本居住 親戚의 財產程度에 따라 生活水準이 決定됨.

○ 이에 따라 北送僑胞의 生活水準은 中·上流層과 下流層으로 大
別해 볼 수 있는데,

— 中·上流層의 경우 ①원래 富裕하고 政治的 背景이 좋은 部類
(保守派), ②돈은 많으나 政治的 性向이 나빠 地方에서 살다가

돈을 바치고 平壤에 올라가 잘 사는 部類(新興勢力), ③돈도 없고 政治的 바탕도 없어 地方에서 살다가 돈 많은 在日僑胞의 도움으로 갑자기 平壤 上流層이 된 部類(신데렐라세력) 등을 말하며,

— 下流層의 경우는 대체로 老年層으로서 日本의 親戚들이 初期에 모두 함께 北送된 사람들인데, 北送初期 5~6 년간은 잘 살았으나 가지고 간 物件을 다 消費하고 나서 北韓住民 以下の 生活를 영위하고 있는 階層임.

○ 이러한 北送僑胞들의 生活水準은 1984년 合營法 制定以後 合營會社 設立 參與, 在日親戚들의 財力과 訪北程度 등에 따라 上·中·下 階層間의 移動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 北送僑胞 統制·監視

○ 모든 北送僑胞는 北送直後, 그리고 年 1回 定期的으로 思想教育을 받아야 하는데,

— 北送直後에는 초대소에서 1개월간 「革命歷史」, 「黨唯一思想體系」 등을 集中教育하며,

— 그후 每年 1回 海外同胞迎接部 主管下에 各市·郡 行政經濟委員會 僑胞處에서 召集, 弘報講演이나 思想教育, 그리고 問題人物의 自我批判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自家用 乘用車 所有者들은 年 4회 (분기당 1회) 教育召集

○ 또한 國家保衛部는 이들 北送僑胞를 監視對象으로 묶어 「歸國

者 動向카드」를 作成·管理하고 있는데,

- 主要 監視對象者는 ①在日親戚의 訪問이 잦은 者, ②南韓에 親戚이 많이 있는 者, ③海外旅行者, ④在日親戚 상봉시 不純言動者, ⑤軍需工業 등 祕密職種에 從事하고 있는 者(특히 寧邊 原子力研究所 勤務者) 등이며,
- 監視·統制方法은 北送僑胞間 動向把握은 물론 企業所內 北送僑胞의 雇傭比率, 作業班內 配定人員 등을 制限함으로써 組職·勢力化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1개 作業班(15 ~ 20명)에 1명씩만 勤務토록 配定

3. 北韓住民 意識變化 動向

가. 體制 및 金父子에 대한 認識

- 大部分의 北送僑胞들은 北送初期 停滯된 北韓社會 霧圍氣, 金日成에 대한 盲目的인 忠誠 強要 등으로 當惑感과 함께 不滿을 느끼다가 最近에는 東歐 및 蘇聯 崩壞過程을 지켜 보면서 社會主義는 결국 망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음.
- 北韓社會 全體 霧圍氣가 “思考의 시계가 멎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當識이 통하지 않고 停滯되어 있어 當惑感을 느끼면서 自身의 北送에 대해 絶望
- “首領이 곧 祖國이다”라는 封建領主時代式的 盲目的 忠誠教育에 대해 社會主義 原理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處事로 간주, 강한 疑懼心과 함께 不滿 表出

○ 北送僑胞들의 金日成에 대한 認識은 自身들의 入北이 金日成 政權의 工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被害意識과 함께 北送初期의 大肅清, 盲目的 忠誠心 強要 등으로 인해 상당히 否定的인데 비해, 金正日에 대해서는 父子世襲 自體는 非難하면서도 비교적 好感을 가지고 있는데,

— 그 理由는 ①金正日の 思考가 金日成보다 現實的이고 合理的 이라는 점, ②1984년 金正日の 指示에 의거 北送僑胞의 差別 政策이 撤廢된 점, ③그리고 合營法制定으로 北送僑胞들의 生活水準이 팔목할만하게 향상된 점 등에 起因하고 있음.

* 北送僑胞中 제일 出世한 사람은 張徹(副總理, 文化藝術部長) 인데, 그는 金正日の 강력한 推薦에 의해 現在의 職에 起用

나. 不滿表出 動向

○ 北韓社會에 內在되어 있는 不滿은 組織적으로 體制에 抗拒하는 水準으로까지는 表出되지 못하고 一過性 事件으로 끝나는 경우가 大部分이나 社會全體에 깔려있는 不信·不滿 風潮는 끊임없이 이어져, 이에 따른 事件도 頻發하고 있음.

— 北送僑胞의 경우 ①1965년 寧邊 核物理研究所 科學者들이 北韓의 經濟體制 改革을 建議하는 便紙投書와 함께 蘇聯 科學者에 비해 相對的인 忽待, 科學者 輕視風潮에 대한 不滿을 表出시키자 이에 대한 肅清이 있었고, ②1981~82년경 家禽業 副總局長(北送僑胞)이 體制批判을 하다 間諜嫌疑로 몰려 行方不明된 事件이 있었음.

* 寧邊 核物理研究所 科學者들은 1961년 北送된 東京大學, 京都大學, 東部工業大學 教授들로 構成

- 주요 幹部들의 權力暗鬪 事件으로는 ①1982년 前 國家保衛部長 김병하가 世襲體制를 批判하다가. 金正日에게 摘發되어 自殺한 事件이 있었고, ②1988년말 前 總理 李根模는 병으로 사임하였다는 說, 막내아들 (출판사 책임자)이 北送僑胞 여자와 結婚했기 때문에 解任되었다는 說, 金日成의 「주식펀드제」를 批判했기 때문에 肅清되었다는 說 등이 있음.

※ 「주식펀드제」는 「主席豫備物資」(공식명칭)를 말하는 것으로서 金日成 敎示를 원활히 執行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別途豫算

- 最近들어 食糧事情 惡化로 食糧暴動도 頻發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事件으로는 1991년 6 ~ 7월경 신의주에서 食糧不足으로 1個月가량 食糧配給이 遲延되자 수백명의 住民들이 이에 反撥하여 集團抗議 騷擾를 일으킨 事件으로 당시 北韓當局은 戰爭 備蓄米를 급히 방출하여 事態를 진정시킨뒤 主謀者를 索出·處罰하였다고 함.

다. 社會逸脫 現象

- 最近들어 窃盜·暴力 등 強力事件이 頻發하고 있으며 그 樣相도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主要對象은 北送僑胞들인 바,
 - 그 理由는 北送僑胞들의 生活이 比較的 安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住民들의 認識이 貧富隔差나 暗去來 등 社會否定

的인 要素가 北送僑胞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最近 南浦 北送僑胞 一家族 沒殺事件 (1989년)을 비롯 北送 僑胞 對象의 竊盜·放火, 自家用襲擊 附屬品奪取事件 등이 頻發

○ 賂物授受의 경우 70년대까지만 해도 物件을 주는 行爲에 그쳤으나 80년대에는 外貨로 바뀌었고, 最近에는 物資品貴現象의 深化로 인해 그 額數가 高額化되는 傾向임.

* 其他 大學入學, 住宅配定, 平壤居住, 通行證 發給 등에도 賂物을 써야하는 등 賂物授受가 一般化

라. 自由開放 風潮

○ 北韓社會의 自由開放 風潮는 1984년 合營法 制定과 1989년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의 影響이 至大하였다고 생각되는데,

— 1984년 合營法 制定이후 北送僑胞들의 生活向上으로 VTR이 流入되자 이를 통해 디스크가 유행, 一部에서 나체 디스크까지 등장하여 當局에서 한때 紀綱解弛를 이유로 디스크를 禁止시킬 정도였고,

— 1989년 平壤祝典을 계기로 世界各國 青年들과의 接觸 및 祝典期間中 放映(TV)한 資本主義 映畵 視聽 등을 통해 自由戀愛 등 住民들의 意識이 점차 開放化되어가는 趨勢에 있음.

마. 韓國에 대한 認識

- 北韓의 一般住民(平壤 중심)들은 韓國이 經濟는 어느정도 發展 하였으나 政治는 北韓보다 더한 恐怖政治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그러나 1990년 12월 서울에서 開催된 第 3次 南北高位級會談時 北側記者들이 林秀卿學生 집을 不時에 訪問한 사실이 TV에 放映되었는데, 當時 北韓住民들은 ①南朝鮮에서 데모하는 學生은 社會貧民層인줄 알았는데 林秀卿 學生집이 굉장히 부자라는 사실, ②林秀卿學生의 父母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데도 집에서 버젓이 北側記者들을 맞이한다는 事實에 疑訝心을 품으면서 韓國이 經濟發展 뿐만아니라 「人民의 自由」도 어느정도 保障된 것으로 생각하게된 重要한 契機가 되었음.

4. 在日僑胞 合營會社 運營實態

가. 概 要

- 1984년 9월 合營法 制定以後 그 이듬해인 1985년경부터 北送僑胞들이 在日親戚의 資金을 動員, 合營會社 設立을 推進하여 現在 北韓內 在日僑胞 合營會社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그중에는 이름만 있는 것도 상당수 있고 대부분 運營難에 처해 있는 實情임.

나. 設立方式

- 一般的으로 建物·勞動力은 北韓側이, 資金(外貨)·設備는 在日僑胞가 50 : 50 比率로 投資하고 있으며, 社長은 在日僑胞나 그 親戚인 北送僑胞가, 副社長은 北韓側에서 주로 맡고 있음.

다. 運營實態

○ 現在 北韓의 經濟與件으로 보아 合營會社를 規定대로 運營할 경우 전혀 收支打算이 맞지 않기 때문에 大部分의 合營希望者들은 政務院보다는 勞動黨과 連繫된 合營事業을 選好하고 있음.

— 그 理由는 勞動黨과 合營할 경우 黨(金正日)忠誠事業 이란 名目下에 外貨로 支拂하게 되어있는 貨金·電氣·建物 使用料 등 運營費를 內貨로 支拂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定期的인 財政檢閱, 稅關通關 등에서 優待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1990年末 對美 商業換率 ⇒ 1달러 : 2.14원

暗去來 換率 ⇒ 1달러 : 70 ~ 80원

— 따라서 現在 大部分의 合營社會는 勞動黨 所屬으로 되어 있으며, 事業經營에 있어서도 購入物品 價格造作, 二重帳簿 作成 등의 便法으로 投資額 회수에만 몰두, 파행적으로 運營되고 있음.

○ 當初 合營會社의 設立目的은 北韓經濟 發展에 寄與하고 技術水準 向上을 圖謀하는 한편, 輸出을 促進시킨다는 것이 었으나 現在 大部分의 生產品은 內需에 충당하고 있음.

라. 南北 經濟交流 關聯

○ 지난 1월말(1.16 ~ 25) 大字 金宇中會長이 北韓을 訪問, 金達玄 (政務院 副總理, 對外經濟委員會 委員長)과 南浦工團을 設立키

로 合意했다고 하나 ①金達玄이 勞動黨 實勢가 아니라는 點, ②北韓의 經濟與件이 너무나 劣惡하다는 點 등 때문에 그 成果에 대해서는 懷疑的으로 봄.

5. 其他 關聯諜報

가. 北韓內 華僑 動向

- 現在 北韓內 華僑는 약 30만명 정도되는데 主要 居住地域은 平北, 咸北, 兩江道 등 北部地域과 海州地域 등임.
 - 자강도는 防衛産業이 많은 地域이기 때문에 居住가 不可
- 특히 平北 新義州는 北韓內에서 華僑가 가장 많은 地域인데, 이곳은 地理的으로 中國 丹東과 接境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華僑의 경우 旅券없이 「渡江證」만으로 往來가 可能하기 때문에 外部情報도 비교적 원활히 流入되고 있음.
- 北韓의 貨幣循環率은 60%에 불과한데, 이는 多量의 貨幣를 保有하고 있는 華僑들이 現金을 銀行에 預금하지 않고 집에서 保管하고 있기 때문임.
 - 그 理由는 銀行에 豫金할 경우 利子が 적을 뿐더러 高額引出이 不可能하기 때문임.

나. 乘用車 個人所有 및 運行實態

- 北韓에서 運行되는 自家用 乘用車는 대부분 日製로 所有階層은 北送僑胞 및 華僑 一部인데, 최근 北韓住民도 乘用車를 個人所

有할 수 있도록 法을 制定했다고 하나 一部高位層을 除外하고는 一般住民들은 엄두도 못낼 形편임.

— 現在 北韓의 自家用 乘用車 臺數는 500여대 程度

※ 北韓「民法」(1990. 9. 5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第 4號)

【第 59條】 公民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家庭用品, 文化用品, 그 밖의 生活用品과 乘用車 같은 器材를 所有할 수 있다.

○ 北韓의 機關·企業所의 幹部 利用車輛은 모두가 國家所有인데 油類供給은 政務院 中央資材總聯合商社 所屬 「平壤 燃油商社」에서 받으며, 月 割當量은 30kg (42 ~ 43 ℓ 정도)으로서 kg당 價格은 19전임.

* 一般 住民의 경우 kg당 價格은 1원 60전 (外貨와 바꾼 돈표)

○ 自家用 運行은 原則적으로 登錄된 市·郡地域 內에서만 가능한데, 在日家族 相逢 등 특별한 경우에는 社會安全部에서 發給하는 長距離 運行證을 所持하여야만 他地域 運行을 할 수 있음.

— 揮發油 節約과 北送僑胞 등의 移動을 遮斷하고 不必要한 住民 接觸을 防止하기 위해 運行時間은 밤 10시까지로 制限

다. 金英柱 平壤 歸還說

- 金日成의 實弟이자 前 勞動黨 組職指導部 擔當秘書이었던 金英柱는 70년대 中盤 金正日과 權力다툼으로 肅清되었으나 1991年 4月 金日成 79돌 生日을 契機로 金日成 指示에 따라 平壤으로 歸還하였다 함.
- 金英柱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장면을 目擊한 一部 高位層은 “金英柱가 黨 組職秘書할 때는 黨 財政이 組織的이고 體系化되어 黨事業도 잘 되었다. 金日成이 年老하자 동생이 보고싶어 불러들인 것 같다”라는 反應을 보였다 함.

라. 南北交流要員 差出 選好

- 北韓의 黨·行政 官吏, 體育選手 등은 外國出張보다도 南北交流 要員으로 差出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 그 理由는 良質의 衣服은 물론 달러(100 ~ 1,000불)까지 지급 받고, 珍奇한 料理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南韓側에서도 달러를 선물로 주기 때문임.

마. 南韓提供 담배, 工作訓練에 使用

- 1990년 平壤에서 開催된 南北高位級會談時 南韓側에서 선물한 담배를 당초에는 全量 收去하여 燒却시키기로 하였으나 對南工作部署 招待所에서 教育中인 工作員들에게 「以南化 教育」의 一環으로 同 담배를 提共하여 工作員들이 피우고 있음.

바. 幸福組·기쁨組 運營

- 최근 北韓에서 人氣를 얻고 있는 왕재산 輕音樂團, 보천보電子樂團은 金父子 專用밴드인데, 특히 金正日 宴會時에는 보천보電子樂團이 參席하는 바, 보천보電子樂團의 女子歌手는 「기쁨組」 成員이라 함.

* 「幸福組」는 金日成, 「기쁨組」는 金正日 專用 接待員

사. 金正日 히로뽕 投藥說

- 金正日是 평소 급한 文件을 除外하고는 每週 水曜日저녁 부터 木曜日 새벽까지 잠을 자지않고 「批准」(決裁)을 하기 때문에, 피곤과 잠을 쫓기 위해 水曜日 저녁에는 반드시 히로뽕 주사를 맞고 執務를 시작한다 함.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3次會議 開催

1992. 4

1. 概 要

○北韓은 4. 8~4. 10間 萬壽臺議事堂에서 金日成 總 代議員 650名 (定員 673名)이 參席한 가운데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3次會議를 열고 「核安全協定」批准 承認 등 4個 議案을 처리하였음.

※ 4個 議案

- ① '91年度 豫算執行 決算 및 '92年度 豫算에 대하여
- ② 最高人民會議 休會期間中 常設會議가 審議·決定한 法들을 承認함에 대하여
- ③ 國際原子力機構와 맺은 核武器傳播防止條約의 擔保協定을 批准할데 대한 提案 審議에 대하여
- ④ 憲法을 일부 修正·補充할데 대하여

會 議 日 程

| 日 字 | 內 容 |
|-------|---|
| 4. 8 | · 開會(開會辭: 楊亨燮 議長) · 議案① (豫算)報告 및 討論 |
| 4. 9 | · 4個 議案 討論, 承認 및 採擇 · 中央人民委 委員, 最高人民會議 外交委員長 및 委員, 豫算委員 選舉 |
| 4. 10 | · 議案① (豫算) 採擇 · 閉會(閉會辭: 楊亨燮 議長) |

2. 分 析

○ 이번 會議에서 處理된 4個 案件의 特徵은 다음과 같음.

【 議案① 豫算問題 】

- '91年度 豫算執行結果는 歲入 371億 9,484萬 원(173億弗), 歲出 369億 924萬 원(171.7億弗)으로 決算되었음.
- 지난해 豫算의 特徵은 歲入 4.2%, 歲出 3.9%로 例年에 비해 豫算 增加率이 鈍化되었는 바, 이는 年度中 北韓의 全般的인 經濟沈滯가 反映된 結果로 보임.
- ※ '90年度의 豫算 增加率은 歲入 6.2%, 歲出 6.4%
- '92年度 豫算規模는 前年比 7%(歲出基準) 增加된 395億 92萬 원 (185.5億弗)으로 編成되었음.
- 歲出內譯上 「社會文化施策費」가 前年度보다 11.6% 增加된 77 億 3,058萬 원(36.3億弗)으로 높게 策定된 반면 軍事費는 前年比 2.6% 增加에 그친 45億 8,211萬 원(21.5億弗)으로 編成된 點임.
- 「社會文化施策費」의 增額은 今年 3月 1日부터 實施하게된 貨金, 農產物, 收買價, 年金 등의 引上措置(2. 13 中央人民委員會 政令)에 따른 結果로 보이며
- 豫算上의 軍事費 增加率은 前年度(4.8%)보다 낮아졌으나 實質軍事費는 例年과 마찬가지로 豫算總額의 30% 水準(55.6億弗)이 維持될 것으로 分析됨.

'91年度 決算内譯

| 區 分 | | 金 額 | 構成比(%) | 前年比 增加率(%) |
|------------|-------|----------------------------------|--------|------------|
| 歲 入 | | * 371億 9,484萬원 (172億 9,993萬弗) | — | * 4.2 |
| 歲 出 | | * 369億 924萬원 (171億 6,709萬弗) | 100 | * 3.9 |
| 支 出 內 譯 | 人民經濟費 | 250億 4,707萬원 (116億 4,980萬弗) | 67.9 | * 4.4 |
| | 社會文化費 | 69億 2,704萬원 (32億 2,188萬弗) | 18.8 | * 3.5 |
| | 軍 事 費 | 44億 6,602萬원 (20億 7,722萬弗) | * 12.1 | 4.8 |
| | 管 理 費 | 4億 6,911萬원 (2億 1,819萬弗) | 1.2 | -17.4 |

註: 1) * 表示는 北韓發表數値임.

2) 北韓「원」貨의 對美달러 換率은 1弗: 2.15원 適用

'92年度 豫算内譯

| 區 分 | | 金 額 | 構成比(%) | 前年比 增加率(%) |
|------------|-------|--------------------------------|--------|------------|
| 歲 入 | | * 395億 92萬원 (185億 4,503萬弗) | — | * 6.2 |
| 歲 出 | | * 395億 92萬원 (185億 4,503萬弗) | 100 | * 7.0 |
| 支 出 內 譯 | 人民經濟費 | 266億 7,513萬원 (125億 2,354萬弗) | 67.5 | * 6.5 |
| | 社會文化費 | 77億 3,058萬원 (36億 2,938萬弗) | 19.6 | * 11.6 |
| | 軍 事 費 | 45億 8,211萬원 (21億 5,122萬弗) | * 11.6 | 2.6 |
| | 管 理 費 | 5億 1,310萬원 (2億 4,089萬弗) | 1.3 | 9.4 |

註: 1) * 表示는 北韓發表數値임.

2) 北韓「원」貨의 對美달러 換率은 1弗: 2.13원 適用

【議案③ 核安全協定 承認問題】

- 「承認 決定文」에서 “어느 나라도 韓半島에 核武器를 展開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批准提案을 承認하였음.

- 政務院의 原子力工業部長은 承認要請 提案文에서 稼動 또는 建設中인 北韓의 原子力發電所에 대해 최초로 公式 言及하였음.

※ 5千kw 原電 稼動中, 5萬kw 및 20萬kw 原電을 '90年代 중엽에 操業

- 北韓은 「提案文」과 「承認 決定文」에서
— 同 「協定」發效後 제때에 關聯義務를 성실히 履行하겠다는 點과 美國의 協調를 強調하는 한편

- 이번 「協定」承認이 그들의 反核平和政策의 勝利라고 宣傳하면서 여전히 “어느 나라도 韓半島에 核武器를 展開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등 「韓半島 非核地帶化」論理를 固守하고 있음.

- 한편 同 「協定」은 北韓이 “承認”다음날인 4. 10 國際原子力機構에 批准書를 寄託함으로써 發效되었으며 앞으로 北韓은

- 90日 이내에 査察對象施設 등을 明示한 「補助約定書」를 締結해야 하고

- 査察對象 核物質에 관한 「最初報告書」를 「協定」發效該當月の 마지막날인 4. 30로부터 30日 이내에 國際原子力機構에 제출해야 함.

— 〈承認決定文 要旨〉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은 이 協定이 共和國 政府의 反核平和 政策에 符合되며, 朝鮮半島의 非核化를 實現하는데 크게 寄與할 수 있으며, 核에너지의 平和的 利用分野에서 國際的 協調를 強化하는데 이바지하리라고 認定하면서
- 核武器傳播防止條約 寄託國中 어느 한나라도 朝鮮半島에 核武器를 展開하지 않으며, 우리를 反對하여 核威脅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前提로
- 核武器傳播防止條約에 따르는 擔保適用에 관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와 國際原子力機構 사이의 協定을 비준할데 대한 共和國 政府의 提案을 審議하고 이를 承認함.

— 〈提案文 要旨〉 —

- 지금 運營하고 있는 電氣出力이 5千kw인 現 原子力 發電所를 正常的으로 돌리고, 建設中인 5萬kw 原子力發電所와 20萬kw 原子力發電所는 1990年代 중엽에 操業할 것임.(※ 1MW=1,000KW)
- 앞으로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分野에서 國際原子力機構와 다른 나라들과의 科學技術協調를 強化하여 나아갈 것임.
- 美國이 지난해 南朝鮮內의 核武器를 撤收하겠다고 하고 팀스피리트訓練을 中止하겠다고 하였으며, 南朝鮮 當局者도 核不在宣言을 發表함으로써 우리 的 核擔保協定 締結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前提가 마련되었음.
- 이것은 南朝鮮으로부터의 美國 核武器 撤去와 核戰爭危險을 除去하는 것을 위해 꾸준하게 鬭爭하여 온 우리 的 커다란 勝利임.
- 核擔保協定問題가 結束되면 核査察에 필요한 文件들과 資料들을 제때에 國際原子力機構에 提出할 것이며, 모든 核物質과 核施設들을 査察을 위하여 開放함으로써 核武器傳播防止條約에 따르는 자기의 義務를 성실히 履行하여 나아갈 것임.
- 美國도 우리 的 核査察問題가 순조롭게 解決될 수 있도록 우리 的 自主的 立場을 尊重하고 信義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核武器傳播防止條約에 따라 지닌 義務를 성실히 履行하여야 할 것임.

【議案② 法律承認問題】

- 이번에承認된 “社會主義 商業法” 및 “都市經營法”은 새로制定된 것이며, “刑事訴訟法”은 既存의 法을 改正한 것임.
- 3個 法律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은 發表되지 않았으나 “商業法”과 “都市經營法”의 制定은 住民生活 向上, 部分的인 對外開放 등과 關聯된 것으로 보이며, “刑事訴訟法” 改正은 北韓의 人權問題에 대한 國際社會의 非難을 意識한 內容일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각각 推定됨.

【議案④ 憲法修正問題】

- 具體的인 修正內容은 言及하지 않은 가운데 現 憲法이 公表('72. 12. 27)된 以後 20年동안 金日成과 黨이 提示한 思想과 理念, 北韓이 革命과 建設에서 이룩한 成果들을 反映하였다고만 밝혔음.
- 이로 볼 때 現 北韓憲法中 第1章 政治理念, 第2章 經濟部門을 비롯하여 第6章 主席의 權限 등에 관한 一部條項의 改正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會議에서 發表된 「中央人民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의 일부 人事改編 內容은 다음과 같음.

－ 中央人民委員會

- 召喚：廉基淳(前兩江道 黨責), 金基善(前開城市 黨責)
- 選舉：李吉松(兩江道 黨責)

※ 中央人民委 委員：19名

※ 召喚된 廉, 金 兩人是 '91. 12 各各 兩江道 黨責, 開城市 黨責에서 解任되었음.

一 最高人民會議

· 外交委員長：金容淳(黨 國際部長)

· 外交委 委員：장재철(朝鮮天主教人協會 副會長)

李成祿(貿易部 副部長)

※ 外交委員長은 '91. 5 許鎔委員長 死亡 以後 空席이었음.

· 豫算委員會 委員：尹炳權(平壤市 建設 總局長)

金日成 80回 生日行事 動向

1992. 4.

1. 行事 概要

가. 對 內

- 北韓은 이번 80回 生日行事 準備를 위해 1991年 5月 金正일이 直接 「金日成主席 80回生日을 民族最大의 名節로 맞이할데 대하여」란 指示를 下達함과 아울러 總理 延亨默을 總責任者로 하는 「中央 4.15準備委員會」를 構成, 各 道·市·郡에 準備委員會를 조직, 모든 行事 關聯事項을 支援해왔음.
- 今年 3월초부터 北韓은 「忠誠의 便紙採擇 市·道別 群衆大會」(3. 3), 「全國體育祝典」(3. 11) 등 祝祭芬圍氣 造成을 위한 32가지의 各種 慶祝行事を 開催하였으며
 - 李鍾玉(副主席), 桂應泰(黨祕書) 등 黨·政 高位幹部를 비롯한 住民과 團體에 「金日成勳章」, 「人民稱號」 등 859件의 各種 勳章 및 稱號를 授與하였음.
- 또한 “光復의 千里길” 등 380여편의 金日成관련 記錄映畫를 製作 完了하였으며 記念郵票·葉書, 記念鑄貨(2種) 등을 發行하였음.
- 그리고 主要經濟課業에 대한 4. 15 이전 完了를 督勵, 平壤·開城間 高速道路, TV組立工場 등 43件의 主要 建設工事 完工 및 操業을 開始하였음.

나. 對 外

- 駐中·駐러시아大使館 등 20여개 在外公館에서 生日祝賀를 위한 映畫鑑賞會, 宴會를 開催하였으며,
 -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의 40여개국 海外親北團體를 動員, 映畫鑑賞會, 寫眞展示會 등을 進行하였음.
- 특히 中國 양상곤主席 등 11개국 國家元首級을 비롯 130여개국 420여개 代表團(총 3,600여명)을 招請, 金日成父子의 偉大性 및 治績 宣傳에 注力하였음.

2. 分 析

- 金日成生日과 관련, 北韓은 1962년 50回生日부터 臨時公休日로 정하고 小規模 祝賀行事를 進行하여 오다가 1974년 62回 生日부터 “民族最大의 名節”로 規定('74. 4 중앙인민위 정령 469호), 이날을 公休日로 指定하였으며 「꺾어지는 해」인 5년·10년 週期에는 行事規模를 擴大 進行해 왔음.
- 이번 生日行事는 言論媒體를 動員, 金日成의 萬壽無疆 祝願과 金日成에 대한 “全人民的 忠誠”을 促求하는 가운데 進行되었는 바, 注目되는 點은
 - 例年에 비해 行事規模가 擴大되고 行事種類(13개 → 32개)도 多樣하게 進行되었을 뿐만 아니라 行事日程에 있어서도 例年보다 앞당겨 (4월 → 3월초) 進行함으로써 金正日生日과 連繫하여 祝祭氛圍氣가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 그 內容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이룩한 金日成의 治績을 讚揚하는 行事와 論調로 一貫, 對內分野에 있어 金正日을 後見하는 '아버지 首領'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려 하였고
- 대폭적인 勳章 및 稱號授與를 통해 社會全般的인 慶祝雰圍氣를 高潮시킴과 아울러 金日成父子에 대한 변함없는 忠誠을 誘導한 점임.
- 또한 北韓은 對南統一戰線戰術의 一環으로 '90. 7 制定한 「祖國統一賞」을 南韓 運動圈學生들(김기설 등 3인)에게 授與, 金日成의 祖國統一 努力이미지를 對內外에 과시코자 하였음.
- 그리고 同 生日行事에 未修交國을 包含한 世界 各國의 主要人士를 招請하였으나, 대부분 非同盟圈 人士들만이 參席하였음.
- 이상의 金日成 80回 生日行事를 綜合해 볼 때 北韓은 同 慶祝行事를 통해 '人民을 위해 바친' 金日成 生涯의 偉大性을 強調하고
- “全體 黨員들과 勤勞者들은…… 金正日同志와 黨中央委員會의 두리에 굳게 團結하여 革命의 代를 이어나갈 튼튼한 主體를 이루고 있으며……”라는 金日成의 演說(4.15)처럼 金正日로의 實質的 權力承繼를 對內外에 널리 誇示하는 機會로 삼은 것으로 보임.

[添附]

金日成 80回 生日行事 動向(綜合)

(4. 15 현재)

가. 行事 總括

| 區 分 | 內 容 |
|-------------------|---|
| 1. 慶 祝 行 事 | 「全國大學生體育祝典」 등 32건 |
| 2. 主要慶祝報道 | “首領에 대한 忠實性은 主體型 革命家の 첫째가는 生命”(3. 7 중방) 등 20여건 |
| 3. 映畫 및 記念物 製作 | ○ 映 畫: “광복의 천리길” 등 380여편 ○ 冊 子: 「金日成 著作集」 제38권 등 5종 ○ 記念鑄貨: 2종 ○ 記念郵票·葉書: 10종 |
| 4. 主要 建設工事完工 및 操業 | ○ 5천석 국수집 등 43건 |
| 5. 勳章 및 稱號 授與 | ○ 勳 章: 李鍾玉(副主席) 등 171건 ○ 賞 : 전용식(金日成大學 研究士) 등 511건 ○ 人民稱號: 전광보(平壤醫大課長) 등 23건 ○ 模範稱號: 江原 통천군 등 8건 ○ 붉은기: 平壤 第1百貨店 등 146건 |
| 6. 海外 祝賀團 | ○ 國家元首級: 中國 양상곤主席 등 11명 ○ 閣 僚 級: 이란 外務長官 등 9명 ○ 議會關係者: 수단 國會議長 등 9개 代表團 ○ 其 他: 共產黨 代表團 및 藝術使節團 등 420여 代表團 |

나. 分野別 動向

〈慶祝 行事〉

| 行 事 | 日時 및 場所 | 內 容 |
|---------------------------|-------------------------|---|
| 忠誠의 便紙 採擇 市·道別 群衆大會 | 3. 3 各市·道 | ○ 參加者: 各道 責任秘書 및 道·市級 관계부문 일꾼, 青年學生 ※ 3. 20 白頭山 밀영, 삼지연 등 21개 지점에서 出發 |
| 全國大學生 體育祝典 | 3. 8 함흥 競技場 | ○ 參加人員: 3,400여명 ○ 種 目: 蹴球, 籠球, 排球, 庭球, 卓球, 藝術體操 등 ○ 進 行: 技術大學부문과 師範大學 부문으로 區分 |
| 全國體育祝典 | 3. 11 平壤 등 各市·道 | ○ 參加者: 全國의 體育일꾼, 勤勞者, 청소년·학생 ○ 種 目: 陸上和 水上, 各種球技, 重競技, 輕競技 등 |
| 萬景臺賞 體育競技大會 | 3. 17 開城青年競技 場 | ○ 參加者: 體育選手, 開城市內 勤勞者, 青少年·學生들 ※ 1969. 4 金日成生日을 記念하여 創設 된 北韓 最大規模의 綜合體育大會 |
| 全國技術革新 展示會 | 3. 18 中央勞動者會館 | ○ 展示品: 3,000여종에 35,800여개 製品 |
| 金日成業績 研究討論會 | 3. 25 金日成高級黨 學校 등 | ○ 討論分野: 黨事業, 教育, 文學藝術, 出版, 報道, 青年事業 등 5個分野 |
| 主體의 建築 思想研究討論會 | 3. 31 人民大學習堂 | ○ 參席者: 平壤市內 建築家 등 關係부문 일꾼들 |

| 行 事 | 日 時 及 場 所 | 內 容 |
|----------------------------|-----------------------------|--|
| 全國主體思想 討論會 | 4. 1 人民文化宮殿 | ○ 參席者: 延亨默(政務院 總理), 李鍾玉 (副主席) 등 黨·政高位幹部 |
| 國際記者講習會 | 4. 1 人民文化宮殿 | ○ 參席者: 金基龍(公報委員長), 최영삼 (記者同盟 第1副委員長) 등 國內外 出版報道部門 일군들 |
| 金日成 親筆 글발·음악 제막 모임 | 4. 5 묘향산 만폭동, 금강산 구룡연 | ○ 글발 및 음악내용 - 묘향산: “묘향산은 천하제일 명산 김일성” - 금강산: “금강산 김일성” |
| 萬景臺賞 國際 마라톤大會 | 4. 5 平壤 | ○ 參加國: 몽골, 中國, 러시아, 北韓 ○ 코 스: 金日成競技場, 개선문, 英雄거 리, 천리마거리, 萬景臺 왕복 |
| 映畫上映旬間 | 4. 6~4. 20 國際映畫會館 | ○ 上映作品 - 記錄映畫: “百戰百勝의 기치” “首領님은 우리 人民의 위 대한 아버지” - 藝術映畫: “朝鮮의 별” 1-10부, “혁 명투사 공영” 등 4편 |
| 國家美術展覽會 | 4. 6 朝鮮美術博物館 | ○ 展示作品: 800여점 |
| 勤勞團體 建設 思想에 관한 科學討論會 | 4. 7 人民文化宮殿 | ○ 參席者: 金仲麟(黨秘書), 원동구(職總 委員長), 박수동(農勤盟 委員長) 등 관 계부문 일군 |
| 中央寫眞展覽會 | 4. 7 人民文化宮殿 | ○ 展示作品: 140여점 |

| 行 事 | 日時 및 場所 | 內 容 |
|--|------------------------|---|
| 人民軍 陸·海·空軍 및 朝鮮人民警備隊 軍人들, 忠誠의 便紙 傳達 연환모임 | 4. 7 萬景臺革命學院 | ○ 參席者: 吳振宇(人民武力部長) 및 人民軍 장령들 |
| 第10次 4월의 봄 藝術祝典 | 4. 8~4. 19 2. 8文化會館 | ○ 參加人員: 80여개 海外藝術團體들과 國內藝術人 總 3,000여명 ○ 種 目: 音樂, 舞蹈, 器樂, 교예 등 |
| 國家圖書展覽會 | 4. 10 人民大學習堂 | ○ 展示圖書: 金日成 回顧錄 “世紀와 더불어” 등 노작과 金正日 文獻 革命傳統敎養圖書, 黨 政策 解說圖書 등 21,000여 종 35,000여부 |
| 忠誠의 決意 모임 | 4. 11 萬景臺 金日成 銅像앞 | ○ 參席者: 市內 1萬여명의 大學生 및 青年 ※ 金日成父子에 대한 忠誠과 孝誠맹세 |
| 忠誠의 맹세 모임 | 4. 11 萬景臺 金日成 銅像앞 | ○ 參席者: 勤勞團體 일군 및 同盟員들 |
| 全國藝術寫眞 展覽會 | 4. 12 平壤大劇場 | ○ 展示物: 金日成形象作品, 黨員들과 勤勞者들의 鬪爭모습 등 180여점 |
| 金日成의 大元師 推戴 祝賀 人民武力部 軍人集會 | 4. 13 | ○ 參席者: 吳振宇(人民武力部長) 등 軍 高位 幹部 |

| 行 事 | 日時 및 場所 | 內 容 |
|----------------------------|--------------------|---|
| 大學生慶祝의 밤 | 4. 13 青年中央會館 | ○ 參席者：平壤市 社勞青員，大學總長，學長，大學生，青年들 ○ 慶祝辭：崔龍海(社勞青 委員長) |
| 中央報告大會 | 4. 14 平壤體育館 | ○ 參席者：吳振宇(人民武力部長)，李鍾玉(副主席) 등 黨·政高位幹部，黨·政·行政機關일군，各種英雄들，海外僑胞들 ○ 祝賀朗讀：李鍾玉 ○ 報 告：延亨默 ※ 忠誠의 便紙 증정 |
| 記念大公演 「祝願의 노래」 進行 | 4. 14 2. 8 文化會館 | ○ 參席者：金日成，海外祝賀團，黨·政高位幹部들，僑胞들 |
| 平壤市 青年 學生들 야회 | 4. 15 金日成廣場 | ○ 參席者：金日成，祝賀 訪北國家首班들，黨·政 高位幹部들，海外僑胞들 |
| 大集團體操 「首領님 모신 내나라」進行 | 4. 15 金日成競技場 | ○ 參席者：金日成，祝賀訪北使節團，黨·政 高位幹部，海外僑胞 ○ 平壤市 青少年學生 10만명 動員 |
| 慶祝宴會 | 4. 15 금수산議事堂 | ○ 參席者：金日成，訪北祝賀團 등 ※ 同 宴會에서 金日成은 演說을 통해 金正日의 實質的 權力承繼 公表 |

〈主要 慶祝報道〉

| 報道媒體 | 日 時 | 題 目 |
|------|-------|--|
| 중앙방송 | 3. 2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
| 중앙방송 | 3. 7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첫째가는 생명 |
| 중앙방송 | 3. 9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조국을 끝없는 웅성 변영애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
| 로동신문 | 3. 22 |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 신뢰의 원천 |
| 중앙방송 | 3. 23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의 창시자이시다 |
| 중앙방송 | 3, 27 |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
| 중앙방송 | 4. 3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
| 중앙방송 | 4. 4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
| 로동신문 | 4. 4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온누리에 떨치게 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 부주석 이종욱 기명논설 |
| 중앙방송 | 4. 4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다 |
| 중앙방송 | 4. 6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의 귀감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
| 로동신문 | 4. 8 |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라 |
| 중앙방송 | 4. 10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경제건설에서 세기적 변혁을 안아온 창조와 건설의 영재 |
| 로동신문 | 4. 11 | 위대한 인간 |

| 報道媒體 | 日 時 | 題 目 |
|------|-------|--|
| 중앙방송 | 4. 13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
| 평양방송 | 4. 13 | 대원수이신 김일성동지는 우리혁명무력을 창건하신 백전노장이시다 |
| 중앙방송 | 4. 14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혁명투쟁의 앞날을 밝혀주시는 수령이시다 |
| 중앙방송 | 4. 15 |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 |

〈映畫 및 記念物製作〉

| 製作 및 出版社 | 題 目 |
|-----------|------------------------------|
| 朝鮮記錄映畫攝影所 | 記錄映畫 “광복의 천리길” 등 380여편 |
| | 記錄映畫 “사회주의 내나라” |
| | 記錄映畫 “조선의 기적”, “주체의 태양을 우러러” |
| 朝鮮勞動黨出版社 | 回想實記集 第38卷 “인민들속에서” 50권 |
| | 金日成著作集 第38卷 |
| | “위대한 首領 金日成同志 革命歷史” |
| | 金日成 回顧錄 “세기와 더불어” |
| 朝鮮藝術映畫攝影所 | 藝術映畫 “혁명투사 공영” |
| | 多部作 藝術映畫 “民族과 運命” 제 3, 4부 |
| 朝鮮郵票社 | 10종의 記念郵票·郵便葉書 |
| 社會科學出版社 | 조선말대사전(33만여 단어) |
| | 記念鑄貨 2종 |

〈主要 建設工事 完工 및 操業〉

| 區 分 | 建 設 內 譯 |
|-----------|---|
| 鑛 業 | 영광鑛山 鋪裝材職場, 천마鑛山 1垂直坑, 선천鑛山 백현坑, 신평鑛山 運搬坑道, 8. 10鑛山 은덕坑, 장림鑛山 새골坑, 신흥鑛山 (咸南道)開發, 신덕鑛山(黃南道) 돌가공 分工場, 삼수鑛山(양강도) 開發, 검덕鑛業(聯) 12斜坑, 홀동鑛山 銅·磁鐵選鑛場, |
| 金屬機械 및 化學 | 7. 27號 製鍊所 輕質合金職場, 龜城 104號工場(數值操縱工作機械 生産), 기성·금산합營會社(鑛山設備 生産), 북중機械聯合企業所 鐵板綜合裁斷場, 사리원 카리肥料(聯) 소성로 1基系列 |
| 輕 工 業 | 전진합營會社(被服生産), 開城紡織工場 空氣式 精紡職場, 新義州신발工場 輸出綜合職場, 順川구두工場 注入式 長靴職場, 안변 窯業工場 위생자기직장, 愛國최종락 被服工場, 고원輸出被服工場, 元山輸出被服工場 施設改替 |
| 通信電子 | 3.4工場(通信設備 生産), 애국 天然色텔레비전 組立工場, 平壤 集積回路工場 2極素子職場 |
| 農·畜産 | 곽산간석지 開墾工事, 봉산개사니(거위) 工場, 세포고기加工工場 |
| 交通運輸 | 문수-토성 軌道電車化 基本的 完了(平壤 軌道 電車化 2段階), 平壤-開城間 高速道路 開通, 咸興-부전間 鐵道電氣化(합흥-부전호반間 鐵道電氣化 1段階), 구장-향산間 電氣鐵道, 문덕군 驛舍 |
| 住 宅 | 해주市 食水·工業用水 工事, 東部 鐵道總局 高層住宅 216 世帶, 5萬世帶 住宅 基本的 完工(통일거리 준공식), 全國各地 2萬 2千世帶 住宅建設, 新義州市 5千世帶 入住 |
| 其 他 | 고원양말工場內 中小型發電所, 順川東藥工場, 金剛山 休養所(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原子力研究所 核加速裝置 |

〈勳章 및 稱號 授與〉

| 區 分 | | 對 象 |
|----------------------|---------------------|---|
| 勳章 (171) | 金日成勳章 | ○ 個人 : 李鍾玉(副主席) 등 148명 ○ 團體 : 보천보革命博物館 등 3 |
| | 親善勳章 1, 2級 | ○ 「이노우에」(主體思想 國際研究所長) 등 20명 |
| 賞 (511) | 金日成賞 | ○ 전용식(金日成大學 연구사) 등 9명 |
| | 人民賞 | ○ 回想實記 「인민들 속에서」 |
| | 祖國統一賞 | ○ 이관술, 김기설 등 50명 |
| | 金日成青年榮譽賞 | ○ 平壤 體育器具工場 社勞靑委員會 등 11개 團體 ○ 박용해(平壤市 모란봉구역 社勞靑委員長) 등 262명 |
| | 金日成少年榮譽賞 | ○ 함명식(금성제일고등중학교) 등 178명 |
| 人民 稱號 (23) | 醫 師 | ○ 전광보(평양의대 과장) 등 2명 |
| | 科學者 | ○ 김원정(영신대학 실장) 등 3명 |
| | 記 者 | ○ 전경로(민주조선사 부장) 등 5명 |
| | 教 授 | ○ 이경숙(개성동연인민학교 교원) 등 2명 |
| | 俳 優 | ○ 김광섭(조선인민군 교예단 교술과장) |
| | 藝術家 | ○ 김성민(만수대창작사 미술가) 등 7명 |
| | 體育人 | ○ 심경애(국가체육위 책임지도원) 등 3명 |
| | 지방예산제모범군 | ○ 평북 정주군 등 3 |
| 模範 稱號 (8) | 模範教育郡 | ○ 강원 통천군 |
| | 模範保健郡 | ○ 평북 염주군 등 2 |
| | 8.3 人民消費品 生産 示範郡 | ○ 평남 양덕군 등 2 |
| 붉 은 기 (146) | 2중 榮譽 | ○ 평양동흥고등중학교 등 12 |
| | 榮 譽 | ○ 평양동성고등중학교 등 12 |
| | 2중 3대혁명 | ○ 만경대혁명사적관 고향집관리소 등 15 |
| | 3대 혁명 | ○ 평양 제1백화점 등 117 |

〈海外 祝賀團〉

| 區 分 | 訪 北 者 |
|-----------|---|
| 國家元首級(11) | 중국(양상곤주석), 캄보디아(시아누크공), 라오스(폼비한대통령), 우간다(무세베니대통령) 적도 기네(무바쇼브대통령), 시에라레온(모모대통령), 인도네시아(수다르모노부통령), 인도(다르마부통령), 짐바브웨(교스와느코오부통령), 가이아나(그린수상), 쿠바(보스케부위원장) |
| 閣 僚 級(9)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잠비아, 카메룬, 자이르, 튀니지, 가나, 칠레, 이란(외무장관) |
| 議會關係者 | 수단(국회의장), 도미니카(하원의장단), 볼리비아(상원의장단), 에쿠아도르(국회대표단), 파나마, 세인트키츠 네비스, 멕시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
| 共産黨 代表團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태리, 체코,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튀니지 |
| 藝術使節團 | 불가리아, 유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카메룬, 인도네시아 |
| 特異事項 | 일본 자민당 대표단 19명, 사회당 대표 130명 ※ 자민당 대표단 방북시 총재 및 부총재의 김일성앞 친서 휴대 |

1. 觀光政策 및 組織

가. 觀光政策

○ 北韓은 觀光에 대해 “浪費적이고 安逸한 生活을 追求케하는 非生産적인 것”으로 보고 觀光 自體를 否定的으로 보아 왔음.

— 이것은 北韓社會가 「旅行의 自由」가 制限된 統制社會로 住民들의 國外旅行은 물론 國內旅行이 源泉적으로 制限된데다,

— 外國人에게 北韓內 觀光을 許容했을 경우 北韓住民들의 相對的 貧困感 誘發, 外部思潮 流入 등 開放에 따른 諸般 問題點이 露 出될 수도 있다는 內部事情에 따른 것 이기도 함.

○ 그러나 '80年代 들어 觀光事業을 통해 外貨獲得은 물론 體制宣 傳의 附隨的効果도 얻을 수 있다는 認識下에 '84年 9月 合營法 을 制定, 合營對象 5個分野中 觀光事業을 包含시키는 등 觀光에 대한 從來의 否定的 認識에서 脫皮, 積極적인 育成方案을 講究 하여 왔음.

※ 合營法 第 2 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의 合營은 工業, 建 設, 運輸, 科學技術, 觀光業을 비롯한 여러 分野에서 할 수 있다.

— 北韓의 觀光에 대한 認識變化는 「觀光」의 定義에 있어서 1962 年版 「조선말사전」에는 “封建社會에서 科擧를 보러감”이라는 解釋이 있으나, 1981년판 「현대조선말사전」에는 이 부분이 削 除된데서도 찾아 볼 수 있음.

* 科學院 言語文學研究所, 「조선말사전」(平壤: 科學院出版社, 1962), P.643.

【觀光】① 다른 地方이나 다른 나라의 風景·狀況 등을 구경함.
② 封建社會에서 과거를 보러 감.

* 社會科學院 言語學研究所, 「현대조선말사전」(平壤: 科學·百科辭典出版社, 1981), P. 412

【觀光】다른 地方이나 다른 나라의 自然風景, 名勝古蹟, 人民經濟의 發展面貌, 歷史遺蹟을 구경하는 것.

○ 특히 最近들어 北韓의 이러한 觀光事業에 대한 높은 關心은 '91年 6月 國家觀光指導總局 김도준(국장)의 「平壤放送」記者와의 다음과 같은 對談記事에서도 엿볼 수 있음.

— “우리 나라에서는 觀光을 獎勵하고 있으며 觀光客들이 언제나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을 歡迎하고 항상 觀光을 위해서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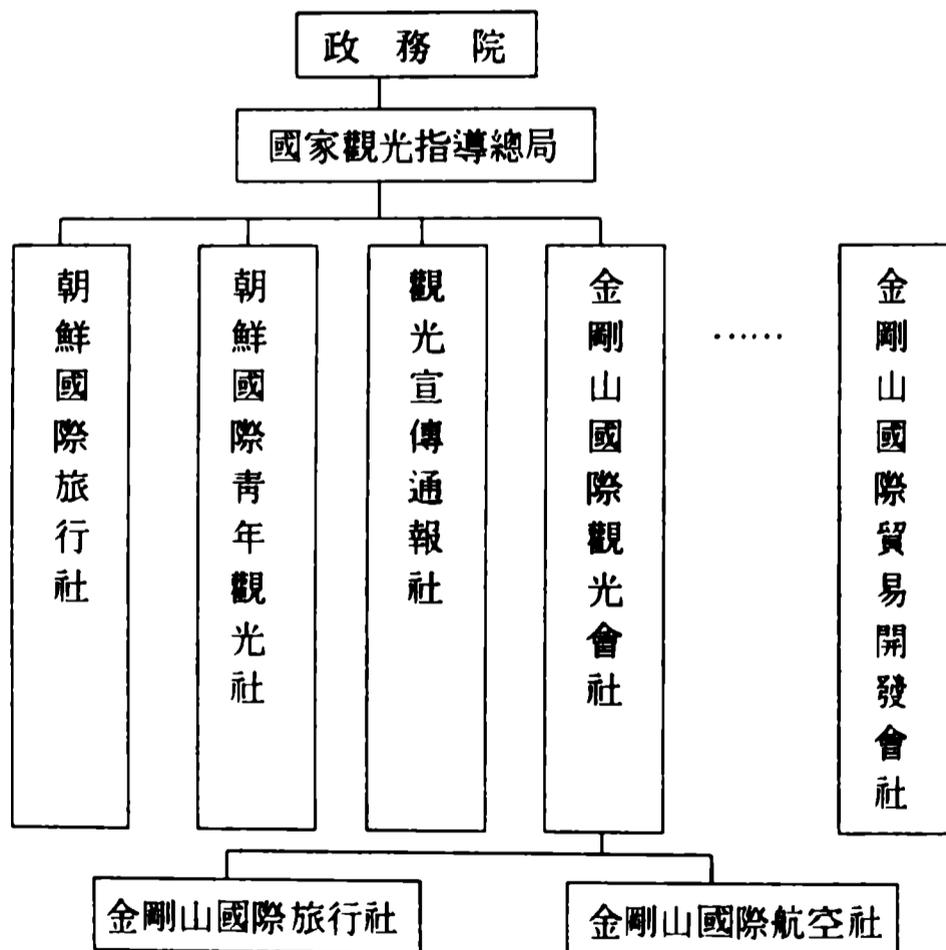
— “우리 나라 觀光政策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黨과 共和國政府의 對外關係 分野에서 自主·親善·平和의 基本理念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自主權을 尊重하고 또 友好的으로 대하는 이런 모든 나라들과 觀光交流와 協調를 發展시켜나가고, 우리 法과 風習을 尊重하고 善意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人種과 政見, 信仰에 關係없이 받아들여서 온갖 便宜를 保障해 주고 따듯히 歡待해 주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北韓當局의 觀光에 대한 認識變化에도 불구하고 北

韓에서의 「觀光」은 外國人에 대한 制限的인 것만을 意味할 뿐, 北韓住民의 趣味, 餘暇善用, 休養과 같은 순수한 意味의 對內觀光政策은 없다고 볼 수 있음.

나. 觀光機構 組織 및 任務

- 北韓 觀光行政의 指導機關은 政務院 傘下의 「國家觀光指導總局」으로서, 同 機關은 '86年 5月 15日 從來의 國際旅行局을 擴大 改編한 것임.
- 國家觀光指導總局 傘下에는 實務執行을 擔當하는 「朝鮮國際旅行社」, 宣傳業務를 擔當하는 「觀光宣傳通報社」, 그리고 合營會社로서 對外窓口 役割을 하고 있는 「金剛山國際觀光會社」 등이 있는 바, 그 組織體系는 다음과 같음.



- 이들 組織은 對外觀光事業의 實務를 맡고 있는 「朝鮮國際旅行社」를 除外하고는 모두가 '84年 9月 「合營法」制定이후에 設立된 것으로서 最近 北韓의 觀光事業에 대한 熱意를 잘 反映하고 있는데, 그 具體的 任務와 組織構成은 다음과 같음.

| 會社名 | 創立日 | 任 務 | 備 考 |
|---------------|---------------|---|---|
| 國家觀光 指導總局 | 1986. 5.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觀光政策 樹立 · 執行指導 - 政府級 觀光指導機關으로서 觀光政策 樹立 및 執行, 組織 指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局長: 김백손 · 副總局長: 채화섭 · 국장: 김도준, 조춘신 ※ 인도네시아 발리 WTO Commission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참가 (김백손 · 조춘신 '92.3.23~25) |
| 朝鮮國際 旅行社 | 1953. 8.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執行 · 契約締結 - 國營旅行社로서 觀光團接受 및 派遣, 豫約 · 販賣, 他國 과 觀光交流 契約 締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 長: 조성훈 · 副社長: 계영수 · 課 長: 김룡환 * 베를린 世界觀光博覽會(ITB)參加 (계영수, 김룡환, 91.3.2~7) |
| 朝鮮國際 青年觀光社 | 1985. 3.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靑少年 觀光 斡旋 - 國營旅行社로서 他國 靑年 觀光社와 連繫, 靑少年 觀光 斡旋 | |

| 會社名 | 創立日 | 任 務 | 備 考 |
|---------------|----------------|---|--|
| 觀光宣傳 通報社 | 1987. 12.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宣傳· 資料出版 - 觀光紹介· 廣告出版物 및 비디오廣告映畫 製作普及, 觀光客 撮影 서비스 · 他國 觀光機關과 協調· 交流 - 他國의 出版· 비디오會社 및 觀光研究機關들과 連繫, 協調 交流 | |
| 金剛山國際 觀光會社 | 1988. 11.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國 觀光客 誘致 - 合營旅行社로서 他國 觀光 業務機關과 連繫, 外國觀光 客 誘致活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長: 朴敬允 (LA교포) |

2. 觀光事業 推進經過 및 實績

가. 觀光事業 推進經過

○ 北韓은 '53年 朝鮮國際旅行社를 創立하고 '56년부터 대외 관광교류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宣傳하고 있으나 實質적으로 本格화된 것은 '84年 9月 合營法을 制定하면서 부터임.

* '90. 3. 26 「朝鮮中央通信」은 “朝鮮에서 觀光交流事業이 195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報道

○ 이후 北韓은 觀光交流事業에 本格的으로 關心을 가지고 對內的으로 各種 觀光關聯 機構를 組織·體系化하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國際觀光機構 加入 推進에도 積極性을 보여 왔음.

〈對內 觀光關聯機構 組織〉

- 1985. 3 朝鮮國際青年觀光社 創立
- 1986. 5 國家觀光指導總局 創立
- 1987. 12 觀光宣傳通報社 創立
- 1988. 11 金剛山國際觀光會社 創立

〈國際 觀光機構 加入〉

- 1987. 9 世界觀光機構(WTO) 加入
- 1992. 6 東아시아觀光協會(EATA) 加入 豫定

(第 31次 EATA總會: 6. 14 ~ 17, 마카오)

* 太平洋地域觀光協會(PATA), 美洲旅行業者協會(ASTA), 아시아會議 및 觀光協會(AACVB), 國際會議 및 觀光協會(IACVB) 加入도 推進中

○ 또한 觀光專門要員 養成을 위해 「案内通譯學校」, 「同時通譯研究所」 新設을 비롯, 各 商業大學에 「觀光學科」를 設置하는 등 體系的 育成方案도 並行하여 왔음.

- 1985. 2 平壤外國語學院 「同時通譯研究所」新設
- 1987. 各 商業大學에 「觀光學科」設置

* 「同時通譯研究所」는 平壤外國語學院 卒業生 및 平壤外國語大學 在學生中 語學能力 優秀者를 選拔, 英語·露語·日語·中國語·佛語·獨逸語·아랍語·스페인語 등 8個國語 通譯員을 養成

○ 한편 北韓은 '87. 12 「觀光宣傳通報社」發足を契機로 觀光紹介映畫·觀光案内冊子 등을 製作, 宣傳活動에 注力하는 한편, '91년부터는

各種 國際會議 등에도 參加, 觀光情報交流活動에도 積極性을 보이
고 있음.

- 1991. 3 베를린 世界觀光博覽會(ITB) 參加
- 1991. 4 世界觀光機構(WTO) 東亞·太委員會 參加
- 1992. 3 인도네시아 발리 世界觀光機構(WTO) 東亞·太委員會
參加
- 1992. 6 마카오 東아시아觀光協會(EATA) 參加豫定(6.14~17)

나. 觀光客 誘致實績

○ 北韓은 '86년 最初로 홍콩, 호주의 小規模 觀光團을 받아들인 이래
海外 觀光客 誘致에 積極性을 보여 왔으나, '87년 KAL機 爆破事件
을契機로 南北關係 冷却 및 國際的 非難輿論에 逢着, 觀光事業이
일시 中斷되는 등 迂餘曲折을 겪었음.

- 1986. 홍콩·호주의 小規模 觀光團 訪北
- 1987. 10 日本觀光團(39명) 訪北
- 1987. 11 KAL機 擊破事件으로 北韓觀光 全面 中斷
- 1989. 10 日本 外務省, 日本人의 北韓旅行 全面禁止 發表
- 1990. 4 日本旅券에 北韓旅行 制限條項 明示

○ 그러나 '90年 12月 日本 外務省의 北韓旅行 全面自由化 發表 이후
北韓의 觀光事業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어 日本 中外旅行社, 日中
旅行社, 日蘇旅行社 등과의 제휴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2~3萬명
정도의 觀光客을 誘致하는 등 비교적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었음.

- 1990. 12 日本 外務省, '91.4.1 부터 北韓旅行 全面自由化 發表

- 1991. 5 金剛山國際航空, 北韓-日本間 最初の 商用專貨機 運航
- 1991. 6 日本 中外旅行社, 北韓觀光商品 開發 販賣(1次)
- 1991. 7 日本 中外旅行社, 北韓觀光商品 開發 販賣(2次)
- 1991. 8 日中旅行社, 北韓觀光商品 販賣 開始
- 1991. 9 日本 中外旅行社, 北韓觀光商品 開發 販賣(3次)
- 1991. 10 全日本航空(ANA) 니이카타-平壤間 專貨機 運航
- 1991. 12 JTB, 北韓 觀光商品 販賣

○ 특히今年들어 國際情勢 安定, 南北關係 改善에 힘입어 日本-北韓間의 「航空協約」締結, 朴敬允의 金剛山·白頭山 開放 「記者會見」 등 일련의 措置가 잇따르고, 아울러 觀光團 規模도 大型化되는 등 北韓의 觀光客 誘致事業은 보다 새로운 局面을 맞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日本-北韓間 「航空協約」締結 ('92.1.23~24, 北京)

: '92년 兩側이 80回(왕복)의 觀光專貨機를 運航한다는 內容의 政府間 航空協約

* 朴敬允(金剛山國際觀光會社 社長) 記者會見 ('92.3.9)

: “北韓은 '92年 5月 1日부터 金剛山과 白頭山에 대한 觀光을 모든 韓國同胞에게 開放키로 했음.”

- 1992. 4 朴敬允의 東京記者會見(3.9) 一環으로 計劃된 第 1次 觀光團(90명), 金剛山國際航空便으로 訪北

- 1992. 5 히로시마縣 日·朝友好親善觀光團(210명) 訪北

* 海外觀光團 誘致事業 이후 最大規模

3. 觀光資源 및 宿泊施設

가. 觀光資源

○ 北韓의 觀光資源은 金父子 讚揚 및 政治宣傳用 施設物, 文化史 蹟址, 産業施設, 傳統飲食 및 土產品, 名勝地 등의 形態로 分類 되고 있음.

- 金父子讚揚·政治宣傳用 施設物: 萬景臺, 主體思想塔, 各種 革命 史蹟址 등
- 文化史蹟址: 보현사, 안악궁터, 검은모루유적지 등
- 産業施設: 금성트랙터공장, 大安重機械工場, 청산리협동농장 등
- 傳統飲食 및 土產品: 人蔘製品, 불고기·김치, 도자기, 자수제품 등
- 名勝地: 白頭山, 金剛山, 묘향산 등 名山과 모란봉, 시중호 등 觀光名所

○ 이들 觀光資源은 地域特性에 따라 平壤圈, 南浦圈, 金剛山圈, 元山圈, 白頭山圈, 묘향산圈, 開城·板門店圈 등 7個圈域으로 區分 되어 있는데, 北韓은 이들을 各地域別로 連繫하여 3泊 4日코스에서 14泊 15日코스까지 다양한 觀光프로그램을 開發, 外國에 선보이고 있음.

※ 北韓의 觀光宣傳冊子, 「Tourism in the DPR of KOREA」(觀光 宣傳通報社)에 紹介된 基本觀光코스

: 1)平壤(3泊4日), 2)平壤—開城(4泊5日), 3)平壤—묘향산(4泊

5日), 4)平壤-開城-南浦(4泊5日), 5)平壤-묘향산-開城(5泊6日), 6)平壤-元山-金剛山(5泊6日), 7)平壤-開城-元山-金剛山(7泊8日), 8)平壤-묘향산-白頭山-開城(9泊10日), 9)平壤-白頭山-開城(7泊8日), 10)白頭山 登攀((14泊15日), 11)平壤-묘향산-白頭山-南浦-開城-金剛山(12泊13日)

○ 이외에도 北韓은 「舞踊表記法배우기觀光」, 「태권도觀光」, 「東醫治療觀光」 등 北韓 特色에 맞는 14종의 專門觀光 프로그램을 開發, 體制宣傳에도 注力하고 있음.

※ 北韓의 觀光宣傳冊子 「Tourism in the DPR of KOREA」 (觀光宣傳通報社)에 紹介된 特別觀光 프로그램

: 1)登山探險觀光, 2)舞踊表記法배우기觀光, 3)태권도觀光, 4)골프觀光, 5)감탕治療觀光, 6)조선말배우기觀光, 7)教育일꾼觀光, 8)東醫治療觀光, 9)婚禮式觀光, 10)白頭山徒步觀光, 11)動植物調査觀察觀光, 12)사냥觀光, 13)白頭山天池生物調査觀光, 14)白頭山火山帶 地質研究觀光

○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觀光資源 및 코스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다음 두가지 原則을 철저히 固守하고 있는 바,

- 그 하나는 基本·專門觀光코스를 막론하고 모든 觀光客들은 반드시 金日成의 生家인 「萬景臺」 訪問부터 始作, 「主體思想塔」 등 政治宣傳物 踏査를 義務적으로 해야하는 등 觀光을 金父子偶像化 및 體制宣傳에 利用하고 있고,

- 다른 하나는 案内員 同行下에 정해진 코스의 觀光만이 許容 될 뿐, 一切의 個人行動이나 豫定地域 以外の 訪問을 統制, 一般住民의 生活相 및 農村地域 등 落後된 部分의 公開를 忌避하고 있는 점임.

나. 宿泊施設

- 北韓의 宿泊施設은 '80年代 以前까지만해도 量·質的인 面에서 모두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음.

- 그러나 海外觀光業에 關心을 가지기 시작한 '80年代 中盤, 특히 '89년 「平壤祝典」을 契機로 호텔新築에 着手, 現在 量的인 面에서 어느정도의 收容能力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나,

- 質的인 面에서는 아직까지 國際的인 水準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平壤과 地方間의 水準差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北韓이 現在 海外宣傳冊子를 통해 紹介하고 있는 宿泊施設은 總 26個所에 客室數는 4,097室에 이르고 있는데,

- 이중 '84年 以後 新築된 것은 平壤 4個所(客室數 1,880), 地方 7個所(客室數 673) 등 總 11個所로서 客室數에 있어서 全體의 62%(2,553室)를 차지, '80年代 中盤以後 北韓이 本格的으로 海外觀光客 誘致事業에 쏟은 熱意를 反證하고 있음.

※ '84年以後 新築한 호텔

- 平壤: 평양고려호텔, 서산호텔, 량강호텔, 청년호텔

- 地方 : 향산호텔, 청천려관, 자남산려관, 개성민속려관, 항구려관, 신흥려관, 마전휴양각

○ 이들 宿泊施設은 特級이 2個所, 1級이 5個所, 2級이 9個所, 3級이 10個所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施設이 靚은 特級·1級の 호텔은 平壤에 偏重되어 있는 反面, 地方은 2~3級の 落後된 施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特級 : (平壤) 평양고려호텔 1개소
(地方) 향산호텔 1개소
- 1級 : (平壤) 서산호텔 등 4개소
(地方) 금강산려관 1개소
- 2級 : (平壤) 창광산려관 등 3개소
(地方) 청천려관 등 6개소
- 3級 : (平壤) 해방산려관 1개소
(地方) 개성민속려관 등 9개소

○ 한편 最近들어 北韓은 宿泊施設의 補修·增築을 통해 客室數를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質·量的인 面에서 觀光客의 需要를 充足시킴과 동시에 經濟的 負擔을 다소나마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서산호텔 : 474실 ⇒ 530실
- 청년호텔 : 465실 ⇒ 520실
- 창광산려관 : 326실 ⇒ 420실
- 개성민속려관 : 90실 ⇒ 100실
- 배개봉려관 : 42실 ⇒ 47실

4. 評價 및 展望

- 北韓은 '80年代 들어 從來 觀光에 대한 否定的 認識에서 脫皮, 各種 觀光資源 開發, 觀光施設 擴充 그리고 關聯機構 設置 등 觀光事業 振興에 關心을 돌리고 있는 바,
 - 이는 觀光產業의 積極的인 育成을 통해 惡化된 外貨事情을 打開하는 한편, 附隨的으로 國際的 孤立感 解消와 함께 體制 宣傳도 圖謀하자는데 起因함.
- 그러나 이러한 北韓 當局의 關心과 政策的 配慮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觀光產業은 閉鎖的인 社會體制, 觀光施設 基盤造成의 未 洽, 그리고 相對的으로 비싼 旅行經費 등으로 인해 淸々할만한 成果는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北韓이 이러한 問題點을 打開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改革·開放措置와 함께 보다 과감한 投資, 그리고 管理·運營上의 改善이 必須的이나, 現在 北韓이 처해 있는 政治·經濟·社會的 與件으로 보아 이의 根本的인 改善策은 기대하기 어려운 實情임.
- 결국 北韓은 海外 觀光客 流入에 따른 自由主義思想 침습 등 衝擊은 最少化하면서도 外貨獲得 등 經濟的 實利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範圍內에서의 「制限的인 觀光」만을 고수하려 할 것인 바, 이로 인해 北韓이 觀光을 통해 意圖하고 있는 「效果」역시 制限的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北韓入國節次

| 區 分 | 內 容 |
|------|--|
| 비자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여행신청서」 제출: 북한 입국비자를 취득하려면 출국 10일 전까지 조선국제여행사나 해당 대리점에 「북한여행신청서」를 작성·제출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도 가능) * 신청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직위, 국적, 여권번호·종류, 출입국예정일, 북한출입국교통수단, 비자발급장소 ○ 비자발급 장소: 입국비자는 해외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발급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경역이나 평양공항에서도 가능 ○ 비자발급시 제출서류 및 수수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 2매, 수수료 \$10 |
| 세관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지품은 면세 혜택 ○ 단체관광의 경우는 세관신고서를 단체로 작성 ○ 소지 화폐액수는 세관신고서상에 기재 * 여행자수표 및 화폐는 무제한 소지 가능 < 세관신고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기, 라디오, 휴대용TV, 카메라, 녹음테이프, 비데오테이프 < 반입금지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배율 이상의 망원경·확대경, 무선기기 및 그 부속품 · 환각제 및 마취제 · 사회주의 및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간행물, 비데오테이프, 녹음테이프, 필름, 사진 등 · 잎담배 등 모든 종류의 씨앗 · 무기(사냥총 포함), 폭발 및 그 부속품 · 기타 반출입 금지품목 |
| 방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입국여행자는 국제예방접종증명서 소지 |

#2

조선여행신청서(양식)

주 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조선국제여행사
(RYOHAENGSA)

TEL : 850-2-817201

TLX : 5998 RHS KP

FAX : 850-2-817607

귀하의 직접신청이 어렵다면, 다음 여행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 명 칭 | 전 화 | 텔레스 | 팩시밀리 |
|----------------------------|--------------|----------|---------------|
| Deutsches Reiseburo GmbH | 069/1566-0 | 415292-0 | 1566/573 |
| IKarus Tours GmbH | 06174/2902-0 | 410648 | 06174/22952 |
| Klingenstein Studien Reisu | 089/2350810 | 529648 | 089/23508134 |
| S.O.TReisen GmbH | 089/263051 | 5218441 | 089/263433 |
| Hansa Tourist GmbH | 040/29182-0 | 213968 | 040/29182-221 |
| Panda Tours GmbH | 069/610697 | 4170353 | 069/627408 |
| Lernidee Reisen | 030/7844745 | 183577 | 030/7845701 |

귀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면 이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호텔종류: 디럭스 _____ 스탠다드 _____

출발공항: _____

조선 체류예정기간: _____ 일

여행일정계획 : _____

여행일정계획에 대해 귀하의 의견이 있다면 여기에 기입하십시오. _____

여행자수 _____ 1인용(객실) _____ 2인용(객실) _____

조선 입국/출국시 경유지 _____

주 소: _____

텔레кс: _____ 전 화: _____ 팩시밀리: _____

#3

호텔現況

< 平壤 >

| 호텔名 | 等級 | 電話/텔레кс | 開館 | 層數 | 客室數 | 便宜施設 | 備 考 |
|--------------------------------|----|--|-------|---------------------------------|--|-------------------------------|--|
| 평양고려호텔 (평양 중구역 동흥동) | 특급 | TEL: 3-8106 TELEX: 5943 KORYO KP | 1985년 | 45 층 쌍 탑 식 건 물 | 500 (1등실: 54 2등실: 222 3등실: 224) | 마사지실, 테 니스장, 회의 실 등 30종 | · 위치: 평양 중심 부 창광거리 · 소요시간: 평양공 항에서 30분(차 편), 평양역에서 10분(도보) |
| 량강호텔 (평양 만경 대구역 안 골) | 1급 | TEL: 7-3825 | 1989년 | 11 층 계 단 식 건 물 6 개동 | 330 (1등실: 15 2등실: 8 3등실: 307) | 온천, 텔레스, 영화관 등 26종 | · 위치: 평양 서쪽 청춘거리 · 소요시간: 평양공 항에서 35분, 평양 역에서 15분(차편) |
| 보통강려관 (평양 평천 구역 안산 동) | 1급 | TEL: 4-8301 TELEX: 5941 KP | 1973년 | 9층 | 161 (1등실: 14 2등실: 56 3등실: 91) | 영화관, 대연 회장, 탁구장 등 24종 | · 위치: 평양 서쪽 안산거리 보통강변 · 소요시간: 평양공 항에서 30분, 평양 역에서 7분(차편) |
| 서산호텔 (평양 만경 대구역) | 1급 | TEL: 7-1197 | 1989년 | 30 층 삼 각 형 탑 식 건 물 | 530 | 회의실, 진료 소, 회전식당 등 24종 | · 위치: 평양 서쪽 청춘거리 · 소요시간: 평양공 항에서 35분, 평양 역에서 15분(차편) |
| 청년호텔 (평양 만경 대구역 축전 동) | 1급 | TEL: 7-2340 | 1989년 | 30 층 삼 각 형 탑 식 건 물 | 520 | 실내수영장, 댄스홀, 사우 나 등 26종 | · 위치: 평양 서쪽 청춘거리와 광복 거리 교차점 · 소요시간: 평양공 항에서 35분, 평양 역에서 15분(차편) |

| 호텔명 | 等級 | 電話/텔레кс | 開館 | 層數 | 客室數 | 便宜施設 | 備 考 |
|---------------------------------|----|--------------------------------|-------|----------------------|---|-------------------------------|---|
| 창광산려관 (평양 중구 역 동성동) | 2급 | TEL:4-8366 | 1975년 | 17층 상탑 식건 물 | 420 | 리셉션룸·이 발소·환전소 등 21종 | · 위치: 평양 중심부 천리마거리 보통강변 · 소요시간: 평양 공항에서 30분, 평양역에서 5분 (차편) |
| 대동강려관 (평양중구 역 경림동) | 2급 | TEL:3-8346 | 1956년 | 5층 | 60 (1동실: 4 2동실: 14 3동실: 42) | 당구장, 리셉 션룸, 영화관 등 17종 | · 위치: 평양 중심 부 승리거리 대 동강변 · 소요시간: 평양 공항에서 35분, 평양역에서 5분 (차편) |
| 평양려관 (평양 중구 역 오탄동) | 2급 | TEL:3-8161 TELEX:5980 KP | 1961년 | 5층 | 170 (1동실: 10 2동실: 41 3동실: 119) | 우체국, 탁구 장, 서점 등 21종 | · 위치: 평양 중심부 승리거리 보통강변 · 소요시간: 평양 공항에서 30분, 평양역에서 5분 (차편) |
| 해방산려관 (평양시 중 구역 해방 산동) | 3급 | TEL:3-7037 | | 5층 | 83 | | · 위치: 평양 중심부 승리거리 |
| 류정호텔 (평양 보통 강구역 서 장동) | 특급 | | 건설중 | 105층 | 3,000 | 마사지실, 대 연회장, 탁구 장 등 31종 | · 위치: 평양 봉화 거리 서장언덕 위 · 소요시간: 평양공 항에서 25분, 평양 역에서 15분(차편) |

〈地方〉

| 호텔名 | 等級 | 電話/팩스 | 開館 | 層數 | 客室數 | 便宜施設 | 備 考 |
|----------------------------|----|-------|-------|-----------------------------|--|-------------------------------|---|
| 향산호텔 (평북 향산 군 향암리) | 특급 | | 1986년 | 15층 피라 미드 형 건 물 | 228 | 사우나, 실내 수영장, 진료 실 등 25종 | · 위치: 묘향산 향산천변 · 소요시간: 향산 역에서 10분(차편) |
| 청천리관(평북 향산군 향산 읍) | 2급 | | 1986년 | 3층 | 33 (1등실: 2 2등실: 3 3등실: 28) | 영화관, 대연 회장, 탁구장 등 18종 | · 위치: 향산읍 청천강변 · 소요시간: 향산 역에서 5분(차편) |
| 청병리관 (평북 향산군 향암리) | 2급 | | 1978년 | 2층 | 22 | 식당, 당구장 등 13종 | · 위치: 묘향산 향산천변 · 소요시간: 향산 역에서 15분(차편) |
| 송도원리관 (강원도 원산 시 봉춘동) | 2급 | | 1963년 | 11층 | 164 (1등실: 6 2등실: 30 3등실: 128) | 환전소, 리셉 션룸, 댄스홀 등 22종 | · 위치: 원산 중심 부 동해안 · 소요시간: 원산 역에서 10분(차편) |
| 자남산리관 (개성시 선 죽동) | 2급 | | 1984년 | 4층 | 43 (1등실: 1 2등실: 4 3등실: 38) | 대연회장, 회 의실, 탁구장 등 21종 | · 위치: 개성 서쪽 자남산 기슭 · 소요시간: 개성 역에서 15분(차편), 판문점에서 12km |
| 개성민속리 관(강원도 북안동) | 3급 | | 1989년 | 1층 20동 | 약100 (한옥, 온돌) | 환전소, 기념 품점, 당구장 등 9종 | · 위치: 남대문 근처 (개성역에서 2km) |
| 금강산리관 (강원도 고성 군 온정리) | 1급 | | 1958년 | 12층 | 240 (1등실: 1 2등실: 21 3등실: 218) | 온천, 댄스홀, 회의실 등 26종 | · 위치: 금강산 기슭 (원산에서 110km) |

| 호텔명 | 等級 | 電話/텔렉스 | 開館 | 層數 | 客室數 | 便宜施設 | 備 考 |
|---------------------------------|----|--------|-------|----|--|-----------------------------|---|
| 항구려관 (남포시 와 우도구역) | 2급 | | 1985년 | 9층 | 109 (1동실: 2 2동실: 12 3동실: 95) | 대연회장, 덴 스홀, 영화관 등 20종 | · 위치: 남포 서쪽 와우도오락장 · 소요시간: 남포 역에서 15분, 평양 에서 약30분(차편) |
| 신흥산려관 (함남 함흥 시 성천강 구역) | 2급 | | 1984년 | 6층 | 76 (1동실: 2 2동실: 4 3동실: 70) | 회의실, 리셉 션룸, 당구장 등 20종 | · 위치: 동흥산 기슭 · 소요시간: 함흥 역에서 5분(차편) |
| 마전류양각 (함남 함흥시 홍남구역) | 3급 | | 1986년 | 2층 | 84 (1동실: 3 2동실: 3 3동실: 29 4동실: 49) | 덴스홀, 이발 소, 기념품점 등 11종 | · 위치: 동해안 · 소요시간: 함흥 역에서 30분(차편) |
| 풍 전 호 텔 (황남 과일 군 풍전리) | | | | | 25 | | |
| 해 주 려 관 (황남해주) | 3급 | | | 4층 | 42 | | · 위치: 광장 북쪽 |
| 해산호텔 (양강도해산) | | | | | 40 | | |
| 배개봉려관 (량강도삼지 연군) | 3급 | | | 2층 | 47 | | |
| 온수봉려관 (백두산 삼지 연 온수봉) | | | | | 21 | | |
| 삼지연려관 (량강도 삼 지연군) | 3급 | | | 2층 | 23 | | |
| 38려관 (황북 사리원 시 산양동) | 3급 | | | 4층 | 26 | | |

4

觀 光 프 로 그 램

가. 基本觀光日程

| 프 로 그 램 | 날 자 | 日 程 |
|------------------------------|------|--|
| ① 평 양 (3박 4일) | 제 1일 | 평양 도착 |
| | 제 2일 | 만경대 - 평양지하철 - 대성산성 - 연극공연 관람 |
| | 제 3일 | 주체사상탑 - 동명왕릉 - 만수대예술영화촬영소 |
| | 제 4일 | 귀 국 |
| ② 평양 - 개성 (4박 5일) | 제 1일 | 평양 도착 |
| | 제 2일 | 만경대 - 인민대학습당 - 연극공연 관람 |
| | 제 3일 | 개성 향발(버스, 192km) - 공민왕릉 - 인삼밭 - 판문점 - 고려박물관 |
| | 제 4일 | 평양 향발/도착 - 주체사상탑 - 대성산성(지하철) - 만수대예술영화촬영소 |
| | 제 5일 | 귀 국 |
| ③ 평양 - 묘향산 (4박 5일) | 제 1일 | 평양 도착 |
| | 제 2일 | 만경대 - 주요 교육기관 - 연극공연 관람 |
| | 제 3일 | 묘향산 향발/도착(버스, 162km) - 대홍홀 - 만폭동계곡(도보, 9km) |
| | 제 4일 | 국제친선전람관 - 평양 향발/도착(버스) |
| | 제 5일 | 귀 국 |
| ④ 평양 - 개성 - 남포 (4박 5일) | 제 1일 | 평양 도착 |
| | 제 2일 | 만경대 - 주요 교육기관 - 연극공연 관람 |
| | 제 3일 | 개성 향발/도착(버스) - 공민왕릉 - 인삼밭 - 판문점 - 고려박물관 |

| 프 로 그 램 | 날 자 | 일 | 程 |
|---|------|---|---|
| | 제 4일 | 평양 향반/도착-주체사상탑-남포 향반/도착 (버스 55km)-서해감문-평양 향반/도착 (버스 70km) | |
| | 제 5일 | 귀 국 | |
| ⑤ 평양-묘향산 -개성 (5박 6일) | 제 1일 | 평양 도착 | |
| | 제 2일 | 만경대-묘향산 향반/도착(버스) | |
| | 제 3일 | 국제친선전람관-대흥홀-평양 향반/도착- 연극공연 관람 | |
| | 제 4일 | 개성향반/도착(버스)-공민왕릉-인삼밭- 판문점-개성시내관광-고려박물관 | |
| | 제 5일 | 평양 향반/도착(버스)-주체사상탑-주요 교육 기관 | |
| | 제 6일 | 귀 국 | |
| ⑥ 평양-원산 금강산 (5박 6일) * 관광시즌 : 4. 15-11. 30 | 제 1일 | 평양 도착 | |
| | 제 2일 | 만경대-원산 향반(버스 200km)-동명왕릉 (22km)-신평(86km)-원산 도착 | |
| | 제 3일 | 금강산 향반(버스 108km)-송도원유회장- 시중호(52km)-금강산 도착-삼일포-금강 산여관 | |
| | 제 4일 | 구룡폭포-상팔담-목란식당-금강산여관 | |
| | 제 5일 | 평양 향반(버스)-원산-평양 도착-주요교육기 관-연극공연 관람 | |
| | 제 6일 | 귀 국 | |
| ⑦ 평양-개성- 원산-금강산 (7박 8일) * 관광시즌 : 4. 15-11. 30 | 제 1일 | 평양 도착 | |
| | 제 2일 | 만경대-개성 향반/도착(버스)-공민왕릉- 인삼밭 | |
| | 제 3일 | 선죽교-고려박물관-판문점-평양 향반/ 도착(버스) | |
| | 제 4일 | 대성산성(지하철)-주체사상탑-주요 교육기관 -연극공연 관람 | |

| 프 로 그 램 | 날 자 | 일 程 |
|---|-------|--|
| | 제 5일 | 금강산 향발(버스) - 동명왕릉 - 신평 - 원산 - 송도원유회장 - 시중호 - 금강산 도착 |
| | 제 6일 | 구룡폭포 - 목란식당 |
| | 제 7일 | 삼일포 - 원산 - 평양 향발 - 신평 - 평양도착 |
| | 제 8일 | 귀 국 |
| ⑧ 평양-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9박 10일) * 관광시즌 : 6. 1-7. 30 * 20명이상 단 체 관광 | 제 1일 | 평양 도착 |
| | 제 2일 | 만경대 - 주요 교육기관 - 연극공연 관람 |
| | 제 3일 | 묘향산 도착(기차, 6 am) - 국제친선전람관 - 상원동계곡(상원암) - 보현사 - 평양 도착(기차) |
| | 제 4일 | 백두산 향발(비행기, 380km) - 삼지연 - 삼지연호텔 |
| | 제 5일 | 백두산 밀영(34km) - 장군봉(천지) - 삼지연호텔 |
| | 제 6일 | 평양 도착(비행기) - 원산 향발(버스) - 동명왕릉 - 원산 도착 |
| | 제 7일 | 금강산 향발(버스) - 시중호 - 삼일포(단풍식당) - 금강산여관 |
| | 제 8일 | 구룡폭포 - 원산 도착 |
| | 제 9일 | 평양 도착 - 대성산성 |
| | 제 10일 | 귀 국 |
| ⑨ 평양-백두산 -개성 (7박 8일) * 관광시즌 : 6. 1-9. 30 | 제 1일 | 평양 도착 |
| | 제 2일 | 만경대 - 주요 교육기관 - 연극공연 관람 |
| | 제 3일 | 백두산 향발(비행기) - 삼지연 |
| | 제 4일 | 장군봉(천지) - 백두산 밀영 - 삼지연 |
| | 제 5일 | 무포(32km) - 대흥단(13km) - 대흥단협동농장 (12km) - 삼지연 |
| | 제 6일 | 평양 도착(비행기) - 개성 향발/도착(버스) - 공민왕릉 - 인삼밭 |
| | 제 7일 | 관문점 - 고려박물관 - 선죽교 - 평양향발/도착 |
| | 제 8일 | 귀 국 |

| 프 로 그 램 | 날 자 | 일 程 |
|---|-------|--|
| ⑩ 백두산 등반 (14박 15일) | 제 1일 | 평양 도착 |
| | 제 2일 | 만경대 - 주요 교육기관 - 연극공연 관람 |
| | 제 3일 | 백두산 향발(비행기) - 삼지연 |
| | 제 4일 | 삼지연 - 포태 - 리명수(24km, 도보) |
| | 제 5일 | 리명수 - 전창 - 백두산 밀영(23km, 도보) |
| | 제 6일 | 백두산 밀영 - 사기문폭포 - 장군봉(28km, 도보) |
| | 제 7일 | 장군봉 - 백두교 - 무두봉 - 신무성(24km, 도보) |
| | 제 8일 | 신무성 - 무봉(26km, 도보) |
| | 제 9일 | 무봉 - 무포 - 대흥단(20km, 도보) |
| | 제 10일 | 대흥단 - 신사동 - 홍암 - 대흥단협동농장 (18km, 도보) |
| | 제 11일 | 대흥단협동농장 - 대흥단 - 신개척 - 두지바위 - 대흥단(16km, 도보) |
| | 제 12일 | 대흥단 - 무봉(16km, 도보) |
| | 제 13일 | 무봉 - 삼지연(26km, 도보) |
| | 제 14일 | 평양 도착(비행기) |
| | 제 15일 | 귀 국 |
| 11. 평양-묘향산 -백두산- 남포-개성- 금강산 (12박 13일) | 제 1일 | 평양 도착 |
| | 제 2일 | 만경대 - 주요 교육기관 - 연극공연 관람 |
| | 제 3일 | 묘향산 도착(기차, 6 am) - 국제친선전람관 - 하비로암 - 비로봉(1,909m) - 보현사 - 평양 향발/도착(기차) |
| | 제 4일 | 백두산 향발(비행기) - 삼지연 |
| | 제 5일 | 백두산 밀영 - 장군봉 - 무두봉 - 신무성 - 삼지연 |

| 프로그램 | 날 자 | 日 程 |
|------|-------|--------------------------------------|
| | 제 6일 | 평양 향발/도착(비행기)-남포 향발-서해감문 - 평양 도착 |
| | 제 7일 | 개성 향발/도착(버스)-공민왕릉-박연폭포- 대흥산(관음사) |
| | 제 8일 | 관문점-고려박물관-선죽교-평양 향발/ 도착 |
| | 제 9일 | 대성산성-만수대예술극장-원산향발(버스)- 동명왕릉-원산 도착 |
| | 제 10일 | 금강산 향발(버스)-사중호-삼일포-금강산여관 |
| | 제 11일 | 구룡폭포-원산향발/도착 |
| | 제 12일 | 평양 향발/도착(버스) |
| | 제 13일 | 귀 국 |

나. 專門觀光프로그램

| 區 分 | 日 程 | 位 置 |
|--------------|-------------------|---------------|
| 등산탐험관광 | 9박 10일 - 14박 15일 |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
| 무용표기법 배우기관광 | 7박 8일 - 15박 16일 | 평양음악무용대학 |
| 태권도 관광 | 22박 23일 - 40박 41일 | 평양체육관 |
| 골프관광 | 4박 5일 - 6박 7일 | 평양골프장 |
| 감탕치료관광 | 30일 - 37일 | 시중호요양지 |
| 조선말 배우기관광 | 15일 - 30일 | 평양외국어대학 |
| 교육일군관광 | 7일 - 14일 | 교육기관 |
| 동의치료관광 | 30일 - 40일 | 조선동의연구소 |
| 혼례식관광 | 4일 - 7일 | 평양, 개성 |
| 백두산도보관광 | 10일 - 15일 | 백 두 산 |
| 동식물조사관찰관광 | 10일 - 15일 |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
| 사냥관광 | 7일 - 15일 | 청단군, 연산군 |
| 백두산천지생물조사관광 | 10일 - 15일 | 백 두 산 |
| 백두산화산대지질연구관광 | 10일 - 15일 | 백 두 산 |

#5

公 休 日 現 況

| 番 號 | 休 日 名 | 日 字 | 備 考 |
|-----|---------|--------------|-------|
| 1 | 설 날 | 1월 1일 | 국가적명절 |
| 2 | 음력 설 날 | 1월 1일(음력) | 민족적명절 |
| 3 | 김정일 생 일 | 2월 16일 | 국가적명절 |
| 4 | 한 식 | 4월 6일(또는 7일) | 민족적명절 |
| 5 | 김일성 생 일 | 4월 15일 | 국가적명절 |
| 6 | 국제노동절 | 5월 1일 | 국가적명절 |
| 7 | 단 오 | 5월 5일(음력) | 민족적명절 |
| 8 | 해방기념일 | 8월 15일 | 국가적명절 |
| 9 | 추 석 | 8월 15일(음력) | 민족적명절 |
| 10 | 정권창건일 | 9월 9일 | 국가적명절 |
| 11 | 노동당창건일 | 10월 10일 | 국가적명절 |
| 12 | 헌 법 절 | 12월 27일 | 국가적명절 |

※ 국가적 명절 8, 민족적 명절 4

#6

兌 換 可 能 通 貨

| 番 號 | 國 名 | 貨 幣 (略 號) |
|-----|-----------|-----------|
| 1 | 영 국 | G B P |
| 2 | 미 국 | U S D |
| 3 | 프 랑 스 | F R F |
| 4 | 스 위 스 | C H F |
| 5 | 독 일 | D E M |
| 6 | 일 본 | J P Y |
| 7 | 홍 콩 | H K D |
| 8 | 오 스 트 리 아 | A T S |
| 9 | 싱 가 폴 | S G D |
| 10 | 호 주 | A U D |
| 11 | 카 나 다 | C A D |

※ 환전장소: 은행 및 은행대리점(호텔, 백화점, 식당, 국경역, 공항 등)

※ 크레디트 카드: 조선무역은행에서만 오전에 환전 가능(일요일 제외)

7

地域別 平均氣溫 및 降水量

| 地域 | 氣候 | 月 | | | | | | | | | | | | 年間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평 양 | 기온(℃) | -7.8 | -4.4 | 1.9 | 9.8 | 16.0 | 20.6 | 24.0 | 24.4 | 18.7 | 11.6 | 9.8 | -4.3 | 9.5 |
| | 강수량(mm) | 14.1 | 12.5 | 28.3 | 53.2 | 62.5 | 90.9 | 281.7 | 247.9 | 109.1 | 42.2 | 36.7 | 21.3 | 1000.4 |
| 백두산 | 기온(℃) | -21.3 | -18.0 | -8.8 | 1.7 | 8.4 | 13.1 | 17.7 | 17.0 | 9.5 | 1.6 | -7.4 | -18.2 | -0.4 |
| | 강수량(mm) | 11.7 | 13.5 | 30.4 | 48.5 | 81.4 | 143.5 | 192.2 | 193.8 | 111.0 | 40.8 | 32.3 | 22.4 | 921.5 |
| 개 성 | 기온(℃) | -5.4 | -2.8 | 2.9 | 10.2 | 15.7 | 20.7 | 23.8 | 24.4 | 19.3 | 12.6 | 5.0 | -2.4 | 10.3 |
| | 강수량(mm) | 18.3 | 22.0 | 41.4 | 81.4 | 89.3 | 124.2 | 292.7 | 302.5 | 130.8 | 42.7 | 34.6 | 22.2 | 1302.1 |
| 원 산 | 기온(℃) | -3.6 | -1.9 | 2.9 | 9.8 | 15.5 | 18.8 | 22.5 | 23.2 | 18.7 | 12.9 | 6.0 | -0.4 | 10.4 |
| | 강수량(mm) | 32.6 | 35.2 | 51.2 | 69.3 | 81.8 | 136.0 | 304.8 | 333.8 | 202.8 | 66.7 | 60.6 | 31.5 | 1406.3 |
| 묘향산 | 기온(℃) | -10.9 | -6.9 | 0.8 | 9.1 | 15.7 | 20.2 | 23.8 | 23.8 | 17.7 | 10.1 | 1.9 | -6.9 | 8.2 |
| | 강수량(mm) | 16.2 | 16.5 | 31.3 | 53.8 | 76.2 | 120.8 | 400.2 | 331.6 | 128.7 | 57.4 | 49.2 | 26.1 | 1308.0 |
| 남 포 | 기온(℃) | -6.5 | -3.9 | 2.1 | 9.6 | 15.6 | 20.1 | 23.9 | 24.3 | 19.3 | 12.7 | 4.9 | -3.0 | 9.9 |
| | 강수량(mm) | 12.7 | 12.8 | 26.6 | 46.6 | 52.0 | 82.9 | 241.0 | 215.8 | 91.1 | 34.9 | 39.2 | 24.6 | 880.3 |
| 과 일 | 기온(℃) | -5.4 | -3.5 | 1.8 | 9.1 | 14.7 | 19.3 | 23.5 | 24.0 | 18.8 | 12.3 | 5.3 | -2.0 | 9.8 |
| | 강수량(mm) | 13.2 | 11.5 | 22.8 | 50.7 | 44.9 | 69.3 | 174.9 | 187.5 | 92.4 | 30.9 | 39.6 | 23.7 | 761.4 |
| 해 주 | 기온(℃) | -4.8 | -2.6 | 2.8 | 9.9 | 15.6 | 20.0 | 23.6 | 24.7 | 19.7 | 13.1 | 5.7 | -1.6 | 10.5 |
| | 강수량(mm) | 15.5 | 14.9 | 32.6 | 67.2 | 81.4 | 119.7 | 344.7 | 295.7 | 113.0 | 38.2 | 36.2 | 24.4 | 1147.5 |
| 합 흥 | 기온(℃) | -5.4 | -3.3 | 2.1 | 9.1 | 15.0 | 18.6 | 22.2 | 22.9 | 18.1 | 11.9 | 4.5 | -2.5 | 9.4 |
| | 강수량(mm) | 13.9 | 14.4 | 28.0 | 49.7 | 61.0 | 91.9 | 237.8 | 245.8 | 106.0 | 41.0 | 28.4 | 16.3 | 934.2 |

其他情報資料

| 區 分 | 內 容 |
|-------------|---|
| 평양시내 교 통 | ○ 버스, 무궤도전차, 지하철 운행(요금 10전) ○ 택시는 필요한 장소에서 전화로 호출 이용 (TEL: 3-3428, 4-5615, 4-2007) |
| 국제우편 | ○ 국제전화·전보·텔레क्स·사진전송 등은 호텔이나 국제통신국에서 가능 * 「국제통신국」위치: 보통강구역 보통강 2동 ○ 소포는 국제우편에서 취급 * 「국제우편국」소포취급소 위치: 해방산거리 ○ 우표, 우편엽서 등은 호텔서점에서 구입 가능 ○ 우체통은 호텔 또는 시내요소에 비치 |
| 전 압 | ○ 주민용 전기 전압은 220V, 주파수는 60Hz * 모든 호텔은 220V/110V 겸용 소켓 구비 |
| 서 점 | ○ 서점은 시내 모든 호텔 및 각 구역에 소재 ○ 관광책자, 잡지, 지도, 안내책자, 우편엽서, 우표, 음반, 그림, 각종 서적 구입 가능 |
| 보 험 | ○ 조선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상해보험 가입 가 ○ 관심있는 여행자는 조선국제여행사 또는 조선국제보험회사로 연락 * 조선국제여행사(Korea International Travel Company) · TELEX: 5998 RHS KP · TEL : 35940, 35341 * 조선국제보험회사(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 TELEX: 5464 · TEL : 4-5477, 4-5217 |
| 교 회 | ○ 장충성당(천주교): 선교구역 위치, TEL: 2-3492 *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예배 ○ 봉수교회(기독교): 만경대구역 위치, TEL: 3-2903 *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예배 |

北韓의 貨幣交換 關聯 分析

1992. 7

1. 概 要

北韓은 7. 14 中央人民委員會 政令 「새돈을 發行함에 대하여」를 發表함으로써 貨幣交換을 斷行하였음.

〈 政令 要旨 〉

○ 우리 앞에는 社會主義 建設이 힘있게 推進되어 勤勞者들의 收入이 늘어나고 나라의 貨幣流通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貨幣流通을 公高히 하여야 할 중요한 課業이 나서고 있음.

① 1992年 7月 15日부터 새로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짜리 中央銀行券을 發行·流通

② 1992年 7月 15日부터 새돈을 유일한 支拂手段으로 하며, 1979년에 發行하여 써오던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짜리 中央銀行券은 無效
- 1원, 50전, 10전, 5전, 1전짜리 동전은 계속 流通
- 但, 食糧供給값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支拂에 한하여 7月 16日까지 낡은돈을 쓸 수 있음.

③ 1992年 7月 15日부터 1992年 7月 20日까지 낡은돈을 새돈과 交換

i) 交換比率은 낡은돈 1원에 대하여 새돈 1원으로 함.

ii) 貨幣流通을 원활히 하며, 주민들의 당면한 支拂을 원만히 保障하기 위하여 貨幣交換 期間중에 交換限度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交換해 주며, 그 限度를 넘는 돈은 中央銀行機關에 入金시켰다가 따로 정한데 따라 支拂

iii)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協同團體들이 1992年 7月 14日 현재 가지고 있는 낡은돈은 1992年 7月 17日까지 銀行機關에 入金시키고 필요한 만큼 새돈으로 支拂

〈政令 要旨〉

- ④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協同團體와 국민들이 낡은돈을 非法적으로 유통시키거나, 새돈과 바꾸는 規定과 秩序를 어겼을 경우 法的 制裁를 받음.
- ⑤ 政務院은 이 法令을 執行하기 위한 行政·實務的 對策을 세울것임.

2. 分 析

가. 背景

- 物資供給不足에 따른 높은 現金選好性向
 - 舊 社會主義 國家들의 體制崩壞以後 原料, 燃料 등 生産原資材 輸入 不振으로 '90년이후 生産施設稼働率 급격히 低下
 - 不足한 物資의 신속한 確保를 위해 銀行, 채신소 등 金融機關에 現金을 豫置시키기 보다는 個別 및 企業이 現金所持 選好
- 貨幣死藏 現象으로 貨幣供給量 過多
 - 그 結果 財政金融機關의 「원에 의한 統制」 機能이 크게 低下됨으로써 通貨管理에 蹉跌 招來
 - ※ 원에 의한 統制: 北韓이 財政銀行機關들로 하여금 收入金을 받아들이며 資金을 供給하기 위하여 機關·企業所의 經營活動에 대하여 실시하는 貨幣的 統制
- 財政資金支出 急增
 - 金父子 生日行事 및 3月1일부터 시행된 貨金, 年金, 獎學金, 農產物 收買價의 大幅的인 引上으로 財政支出 增大

— 이번 措置를 통해 死藏通貨를 還收함으로써 不足한 財政資金調達

※ 北韓은 일정한 限度를 넘는 「남은 돈」은 中央銀行에 入金시켰다가 따로 정한데 따라(필요한 만큼) 「새돈」으로 支拂한다고 發表

○ 經濟의 部分的 開放에 따른 否定的 影響 增大

— 合營企業의 北韓 元貨 不法流通 增大(換差利用)

— 在外僑民 訪北者 增加에 따라 現金保有가 많은 새로운 階層發生

○ 貨幣流通秩序 紊亂 및 地下經濟部門에서의 인플레이 유발

— 貨幣價値가 暗去來 등으로 名目的인 額面價와 크게 乖離

나. 目的

○ 不足한 財政資金 充當

— 死藏된 貨幣의 強制的 吸收

— 吸收된 돈은 經濟建設 資金으로 活用

○ 金融機關의 財政統制(원에 의한 統制)強化

—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協同團體 등의 脫法的 經濟活動 防止

○ 歪曲된 貨幣流通秩序 正常化

— 暗去來 등 地下經濟部門의 市場經濟的 要素 抑制, 計劃經濟 秩序 強化

※ 남은 貨幣의 脫法的인 流通防止 規定

○ 인플레이 要因 除去

- 現實的인 通貨供給量을 把握하여 適正水準 維持
- 루블貨의 平價切下('92. 7. 1시행) 등 措置에 對應한 北韓貨幣의 價値 保全

다. 評價 및 展望

○ 이번 措置는 實質的으로는 單純한 貨幣交換이 아닌 貨幣改革

- 死藏通貨 吸收을 통한 通貨供給量 減少效果로 新券과 舊券의 實質交換價値는 크게 變化

※ 北韓은 名目的으로 新券과 舊券을 1:1로 交換한다고 發表

○ 北韓經濟가 最惡의 狀態에 와 있음을 意味

※ 貨幣改革은 國民經濟가 最惡의 狀態일 경우 實施하는 劇藥 處方

○ 이번 措置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은 短期的으로는 北韓의 財政狀態가 다소 好轉됨에 따라 生産活動은 促進될 것이나 貨幣流通 및 商品去來는 오히려 梗塞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번과 같은 通貨政策만으로는 현재와 같이 극도로 沈滯된 經濟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

〈別 添〉

北韓의 貨幣交換 · 改革 過程

| 區 分 | 時 期 | 內 容 |
|---------|----------|---|
| 1次 貨幣改革 | 1947.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帝時代 發行 · 通用되던 貨幣中 補助貨幣를 제외한 全 貨幣를 1:1比率로 交換 ○ 1949. 5이후 새 補助貨幣 發行, 1949. 8. 15이후 「朝鮮中央銀行」發行 貨幣만 通用 ○ 「北朝鮮 人民委員會 法令 第30號」에 根據 |
| 2次 貨幣交換 | 1959.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戰爭으로 인한 인플레이 累增防止, 새로운 財政金融 土臺 構築 및 새 經濟計劃 實施에 따른 投資財源確保 目的 ○ 舊貨幣 100원 : 新貨幣 1원 比率로 交換 ○ 「內閣 決定 11號」에 根據 |
| 3次 貨幣交換 | 1979.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額의 制限없이 1:1比率로 交換 ○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는 保有貨幣를 銀行에 入金시킨 후 필요한 만큼 새돈을 支拂받음. ○ 「中央人民委員會 政令」에 根據 |

社會主義 固守를 위한 「金正日 論文」發表

1992. 11.

1. 概要

- 北韓은 11. 2 「中放」을 통해 金正日이 黨 創建 47周年(10. 10)에 즈음하여 집필했다는 社會主義의 옹호·고수를 위한 長文(80分 報道)의 論文 「革命的 黨 建設의 根本問題에 대하여」를 발표하였음.

〈論文 要旨〉

【社會主義 執權黨 建設의 歷史的 敎訓】

- 最近年間 일부 나라들에서 社會主義 執權黨이 붕괴되고 社會주의가 資本主義에로 되돌아 간 것은 人類歷史의 전반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정상적인 軌道에서 벗어난 一時的인 現象이라고 볼 수 있음.
- 社會主義 執權黨이 붕괴된 것은 黨 建設과 活動을 바로 하지 못한 것과 관련됨. 黨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튼튼하면 社會主義 執權黨을 파괴하려는 帝國主義者들과 階級的 원수들의 그 어떤 策動도 능히 파탄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적지 않은 社會主義 執權黨들은 社會주의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經濟建設만 하면 萬事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黨을 강화하고 黨員들과 人民들을 혁명적으로 敎養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였음.
- 적지 않은 黨들이 黨의 組織思想事業에 옹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결과 官僚主義와 不正腐敗現象과 같은 불건전한 要素를 극복할 수 없었음.

- 적지 않은 黨들은 부르조아自由化바람의 침습으로 말미암아 黨의 政治的·思想的 基礎가 약화되었으며 이틈을 타서 革命的 背信者들이 反革命的 路線을 공공연히 내리 먹이게 되었음.
- 그리하여 蘇聯과 東歐羅巴 여러 나라들에서 연이어 社會主義 執權黨이 붕괴되고 거의 동시에 社會主義 制度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음.
- 여러 나라에서 社會主義 執權黨과 社會主義 制度가 붕괴된 역사적 敎訓은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社會主義 思想의 純潔性을 확고히 固守하여야 한다는 것임.
- 修正主義는 예나 지금이나 社會主義 偉業 수행에서 주된 위험임. 우리는 現代修正主義가 아무리 교묘하게 자기를 僞裝한다 하더라도 그 反動的 本質을 꿰뚫어 보고 철저히 排擊해야 함.
- 여러 나라에서 社會主義 執權黨과 社會主義 制度가 붕괴된 역사적 敎訓은, 또한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領導의 繼承問題를 옮겨 해결해야 한다는 것임.

【主體의 革命的 黨 建設의 基本原則】

- 여러 나라에서 社會主義 執權黨이 붕괴되고 社會主義 制度가 무너진 쓰라린 敎訓은 우리에게 黨의 主體的인 黨 建設 路線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鬪爭을 보다 힘있게 벌여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主體思想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黨 建設과 活動을 벌여 나아갈때 黨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고 革命과 建設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革命的 實踐에 의하여 확증된 眞理임.
- 우리 黨의 唯一思想體系, 唯一的 領導體系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우리 黨을 首領의 영도밑에 하나와 같이 思考하고 움직이는 必勝不敗의 戰鬥的 隊伍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음.

- 一部 社會主義 執權黨 안에서 혁명의 背信者들이 나오는 것도 幹部들과 黨員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사업을 잘하지 않은 결과 變質되어 背信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임.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우리는 언제나 幹部들과 黨員들을 혁명적으로 敎養하고 鍛鍊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 함.
-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만을 자기의 政治的 嚮導者로 인정하고 黨에 자기의 運命을 전적으로 依托하고 있으며, 黨을 따라 主體革命 偉業을 끝까지 完成해 나아갈 확고한 결심에 넘쳐 있음.

【革命的 黨들의 國際主義的 團結과 連帶性】

- 現時期 革命的 黨들 앞에 나서는 공동의 切迫한 課業은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反革命的 攻勢로부터 社會주의를 옹호·고수하는 것임. 지금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이 反社會主義的 策動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破綻을 면할 수 없음.
- 世界 革命的 黨들과 人民들은 일시적 混亂을 이겨내고 새로운 투쟁에 나서고 있음. 인민대중의 自主性을 탄압하는 세력이 있는 한 인민들이 그것을 反對하여 투쟁하는 것은 必然的이며 그 투쟁에 의하여 社會主義 偉業이 승리하는 것은 歷史發展의 法則임.
-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범죄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資本主義가 복귀된 나라들에서는 破局的 危機가 조성되고 있음. 이 나라들에서 겪고 있는 危機는 社會主義의 危機가 아니라 復歸된 資本主義의 危機이며 그것은 부르주아 復歸主義의 破産을 의미함.
-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反帝鬭爭을 힘있게 벌여야함. 社會主義를 옹호·고수하고 온 세계의 自主化를 실현하는 데서 주되는 기본 대상은 美帝를 비롯한 帝國主義 反動勢力임.
- 社會主義 나라들과 國際共產主義運動 및 勞動運動, 民族解放運動, 불려不加擔運動, 世界平和愛好運動을 비롯한 모든 反帝自主力量이 團結하여 투쟁한다면 帝國主義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自主的인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임.

2. 分析

○ 이번 論文도 金正日의 1. 3字 談話「社會主義 建設의 歷史的 敎訓과 우리 黨의 總路線」과 같이 社會主義를 固守하자는 것으로 그 核心은 여전히

- 社會主義의 勝利가 역사발전의 必然的인 法則이라는 것
- 金日成의 領導 밑에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우리式 社會主義를 옹호·발전시켜 나아가자는 것
- 이른바 帝國主義者들의 反社會主義 策動을 공동으로 沮止하기 위해 社會主義 나라들과의 團結과 連帶性을 강화하자는 것 등임.

※ 北韓은 그동안 金正日의 1. 3字 談話를 住民思想武裝 學習의 中心 敎本으로 삼아 왔음.

○ 全體的으로 이번 論文의 特徵은

- 從前과는 달리 東歐 社會主義體制의 崩壞事實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言及한 점

※ 지금까지는 “일부 나라들에서의 社會主義 一時的 挫折”이라는 表現을 주로 사용

- 崩壞의 原因을 기존 社會主義國家 執權黨들의 修正主義, 官僚主義 및 不正腐敗와 黨幹部들의 背信行爲 때문이었다고 지적한 점

※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正當性은 계속 옹호

- 黨 幹部들의 教養과 鍛鍊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역설한 점
- 社會主義를 버린 나라들이 모두 破局的 危機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곧 資本主義體制의 危機를 말해 주고 있다고 強調한 점 등임.

○ 따라서 北韓은 東歐社會主義體制의 붕괴를 教訓 삼아

- 首領의 唯一的 指導體系를 더욱 강화하고 領導의 繼承問題를 올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
- 修正主義 및 資本主義的 要素의 침투를 조금도 許容할 수 없으며 「主體思想」을 확고한 指導指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 黨의 組織思想的 基礎를 강화하고 黨 幹部들과 黨員들을 혁명적 으로 교양, 黨內 背信行爲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 住民들의 思想改造事業을 끊임없이 持續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등임.

○ 이를 綜合的으로 分析해 볼 때

- 北韓 住民들 사이에는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의 沒落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 住民 뿐만아니라 특히 黨·政 高位 幹部들 사이에 社會主義에 대한 懷疑가 강도 높게 일고 있을 것이라는 점
- 後繼問題에 대한 住民들의 心情的 支持가 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 北韓의 指導部가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붕괴에 심각한 危機意

識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식 社會主義體制의 고수만이 金父子 體制를 維持할 수 있는 유일한 方途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推定할 수 있음.

○ 요컨대 이번 論文의 性格과 內容으로 보아 北韓은

- 당분간 對內外 政策에 별다른 變化를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 특히 閉鎖政策 및 住民思想 教養事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 南北關係에서도 短期的으로는 획기적인 姿勢變化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分析됨.

※ 北韓은 이번 論文을 앞으로 住民思想學習의 中心 教本으로 삼을 것으로 보임.

II

對外動向

外交部, 核査察 受容 聲明 發表

1992. 1.

1. 概要

- 北韓은 1.7 外交部 代辯人 聲明을 통해 “가까운 時日안에 核安全 協定에 署名, 批准하며 國際機構의 査察을 받기로 하였다”고 發表하였음.

〈聲明 要旨〉

- 南朝鮮 當局은 얼마전에 核武器 不在宣言을 發表한데 이어 이번에 朝鮮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採擇하는데 呼應해 나섰으며, 최근 美國도 여러 經路를 통하여 南朝鮮 當局의 核武器 不在宣言에 대해 歡迎의 뜻을 表示하였음.
- 朝鮮半島에서 核問題를 公正하게 解決할 수 있는 環境과 條件이 成熟된 形편에서 가까운 時日안에 核擔保協定에 署名하고, 이어 가장 빠른 時日안에 法的 節次를 밟아 그것을 批准하며, 國際原子力機構와 合意하는 時期에 査察을 받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이러한 立場을 國際原子力機構에 正式 通報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도 核武器傳播防止條約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義務를 성실히 履行함으로써, 地球上에서 核武器를 완전히 廢棄하고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守護하기 위한 偉業에 積極 寄與할 것임.

外交部, 核査察 受容 聲明 發表

1992. 1.

1. 概要

- 北韓은 1.7 外交部 代辯人 聲明을 통해 “가까운 時日안에 核安全 協定에 署名, 批准하며 國際機構의 査察을 받기로 하였다”고 發表하였음.

〈聲明 要旨〉

- 南朝鮮 當局은 얼마전에 核武器 不在宣言을 發表한데 이어 이번에 朝鮮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採擇하는데 呼應해 나섰으며, 최근 美國도 여러 經路를 통하여 南朝鮮 當局의 核武器 不在宣言에 대해 歡迎의 뜻을 表示하였음.
- 朝鮮半島에서 核問題를 公正하게 解決할 수 있는 環境과 條件이 成熟된 形편에서 가까운 時日안에 核擔保協定에 署名하고, 이어 가장 빠른 時日안에 法的 節次를 밟아 그것을 批准하며, 國際原子力機構와 合意하는 時期에 査察을 받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이러한 立場을 國際原子力機構에 正式 通報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도 核武器傳播防止條約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義務를 성실히 履行함으로써, 地球上에서 核武器를 완전히 廢棄하고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守護하기 위한 偉業에 積極 寄與할 것임.

2. 分析

- 北韓이 이번 「聲明」에서 아무런 前提條件 없이 가까운 時日內에 署名, 批准, 査察 등의 節次를 밝겠다고 發表한 것은
 - 지난 12. 31 南北間에 採擇한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이 第6次 高位級會談(2. 18~2. 21)에서 發效되도록 되어 있고
 - 第6次 對日修交會談도 1月 下旬에 열릴 豫定인 點 등을 勘案하여
 - 1月中으로 「署名」節次를 마칠려는 意圖로 보임.
- 한편 北韓은 外交部 聲明 當日
 - 오스트리아 빈駐在 代表部 전인찬 大使를 통해 1. 29~30 頃 「署名」할 것임을 IAEA側에 通報하였으며
 - 延亨默 總理 名義의 對南電通文을 통해서도 쌍방 總理가 署名한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을 당초 合意한대로 交換키 위해 1. 14 板門店에 北側 代表를 보내겠다고 알려 왔음.

<參考>

北韓의 核安全協定 署名後 査察 實施過程

① 北韓-IAEA間 協定文案 合意 및 署名

- '91. 7. 16 北韓-IAEA間 協定文案에 合意, '91. 9 理事會의 承認을 得함.

－ 英語, 露語 및 韓國語로 正本 作成

- 協定署名은 通常 IAEA事務局이 비엔나에서 먼저 署名한 後 協定當事國은 自國 首都에서 署名

－ 그러나 協定署名 資格있는 北韓代表가 언제 어디서 署名해도 無妨

② 協定批准 및 發效

- 北韓 憲法上(第96條) 條約의 批准은 主席(President)이 하도록 規定
- 北韓이 IAEA에 協定批准書를 寄託함과 同時에 發效

③ 補助約定書 締結

- 北韓은 核安全協定에 規定된 節次의 施行方法과 查察對象 施設을 具體적으로 明示하는 補助約定(subsidiary arrangement)을 核安全協定 發效後 90日 以內 發效시켜야 함.
- 查察對象이 될 모든 核物質에 관한 最初報告書(initial report)는 協定發效 該當月의 마지막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IAEA에 提出
 - － IAEA는 最初報告書에 包含된 內容을 確認하기 위해 臨時查察(ad hoc inspection) 實施可能

④ IAEA 一般查察 實施

- 北韓은 IAEA가 任命하는 查察官에 대하여 30日 以內에 受諾與

否 回報

- IAEA는 査察官 受諾回報 接受後 北韓에 事前通報(24時間 내지 1週日前)함으로써 一般査察 實施

「核安全協定」에 署名

1992. 1

1. 概 要

- 北韓은 1. 30 오스트리아 빈 所在 IAEA事務局에서 北韓內 모든 核施設에 대한 IAEA의 全面査察을 受容하는 包括的인 核安全協定에 署名하고, 같은 날 外交部代辯人 談話를 통해 “가장 빠른 時日內에 批准하고 核査察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談話 要旨〉

- 「核武器 傳播防止條約」의 公正한 履行을 위한 우리의 始終一貫한 立場과 積極的인 努力에 의하여 朝鮮半島에서의 核問題는 비로소 解決의 展望을 보게 되었음.
- 이번에 우리가 擔保協定에 署名하게 된 것은 「核武器 傳播防止條約」의 使命과 理念에 맞게 이 條約의 公正한 履行을 위한 우리 共和國 政府의 始終一貫하고 꾸준한 鬭爭過程에서 이룩된 빛나는 結實이며, 또한 美國과 南朝鮮 當局이 우리의 原則的인 要求에 順應한 結果임.
- 이번에 「核擔保協定」이 締結되고 우리가 査察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치도 核武器를 開發하고 있는 듯이 갖은 謀略을 일삼으면서 世界輿論을 誤導하고 우리를 謀害하려던 일부 나라들의 거짓 騷動과 反共和國 감싸 니아의 검은 眞相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임.
- 「核武器 傳播防止條約」에 충실한 우리 共和國 政府는 앞으로 가장 빠른 時日內에 擔保協定을 批准할 것이며, 이어 國際原子力機構와 合意되는 節次에 따라 核査察을 堂堂히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闡明함.

2. 分 析

○ 北韓은 이번에 「署名」함으로써

- 지난 '85. 12 「核擴散禁止條約」(NPT) 加入 以後 6年1個月만에 「核安全協定」에 加入한 것이며
- NPT 加入以後 18個月 以內에 「核安全協定」에 加入하게 되어 있는 關聯義務를 4年7個月동안 履行하지 않은 結果가 되었음.

○ 北韓에 대한 核査察 時期問題는

- 北韓이 조속히 그들 內部的 批准, 發效節次를 마치고 關聯義務를 성실히 履行하는가에 달려 있는 바
※ 批准權은 主席에게 있음. (北韓憲法 第 96條)
- 北韓은 同 協定 發效後 30日 以內에 IAEA에 保有核物質의 數量과 種類에 대한 最初報告書를 提出해야 하며, 同 協定發效後 90日 以內에 IAEA와 査察 開始를 위한 補助約定書를 締結해야 함.

○ 北韓은 이번 「署名」관련 外交部 談話에서

- '批准', '査察' 義務 등을 빠른 時日內에 履行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南北間의 相互 査察問題에 대해서는 일체 言及하지 않았음.
- 따라서 韓半島의 非核化를 檢證하기 위한 實質的인 北韓地域査察은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의 發效(2. 18, 第 6次高位級會談)以後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가 構成된 다음에나 可能할 것으로 보임.

※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 (91. 12. 31)

第4項: 南과 北은 韓半島의 非核化를 檢證하기 위하여 相對側이 選定하고 雙方이 合意하는 對象들에 대하여 南北核統制 共同委員會가 規定하는 節次와 方法으로 査察을 實施한다.

第5項: 南과 北은 이 共同宣言의 履行을 위하여 共同宣言이 發效된 後 1個月안에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金正宇, 對日本 記者會見 內容 分析

1992. 2

1. 概 要

- 北韓의 對外經濟事業部 副部長 金正宇는 2. 23 日本記者들과의 會見을 통해 지난해 北韓經濟 實績을 發表하면서 「先峰-羅津 自由經濟貿易地帶」내에서는 100% 外國人 投資를 許容할 方針임을 밝혔음.(교토·聯合通信, 2. 24)

〈記者會見 要旨〉

【經濟實績】

- 1991年度 北韓의 經濟成長率은 4~5%이며 1人當 國民所得은 2,460弗임.
- 舊 蘇聯產 原油導入量은 '90년까지는 70~80萬톤에 달하였으나 지난해에는 1/10水準임.

【軍事費】

- 南北間의 和解·不可侵 등의 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이 發效됨에 따라 “앞으로 軍費를 줄일 것”임.
- 4月 開催 豫定인 最高人民會議時 軍事費를 從前規模로 策定하고 運營面에서 調整

【對外經濟協力】

- 「先峰-羅津 自由經濟貿易地帶」(이하 特區)에 대한 外國人 投資를 촉진하기 위해 關聯 法律을 來年 上半期까지 마련할 豫定임.

- 外國人企業法, 外國企業 所得稅法 등의 草案은 마무리 되었으며 「外國人 出入國法」도 檢討中
- 特區內에서는 外國企業의 全額出資 子會社 設立을 許容하고
- 現行 合營法上의 所得稅率 25% 를 10~15%로 引下하며
- 外國人 出入査證(비자)을 特區現地에서 取得이 可能토록 措置할 豫定
- 來年 後半期부터 特區의 經濟基盤 整備作業의 一環으로 高速道路 300km 建設, 鐵道 164km 延長, 先峰港 建設(荷役能力 5,000萬톤), 羅津港 規模 擴張(現荷役能力 300萬톤 → 3,000萬톤)등을 着手할 것임.
- 羅津, 先峰 및 清津港의 開發 및 道路建設을 爲해 日本의 投資가 必要하 며 특히 電子工業, 輕工業部門에 對한 日本企業의 投資를 요청함.
- 韓國을 포함한 모든 國家들의 進出을 막지 않을 것임.
- 오는 4月末 平壤에서 33個 日本企業들이 參與한 가운데 對北韓 投資에 關한 國際會議을 開催할 豫定임.

2. 分 析

가. 經濟實績

- 北韓이 發表한 1人當 國民所得의 推移에 依하면 北韓經濟는 '90 年代 後半期이래 더욱 沈滯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北韓이 최근의 經濟的 어려움을 스스로 露모시킨 것임.
- 1人當 國民所得 增加率이 1975~86年 期間中에는 年平均 8.3% 를 記錄하고 있으나 1986~91年 期間中에는 年平均 0.5%로 增加幅이 극히 微微

北韓發表의 1人當 國民所得

| 區分 | 1975 | 1979 | 1982 | 1986 | 1987 | 1988 | 1991 |
|-------------|----------|---------|---------|----------|---------|---------|---------|
| 1人當 國民所得 | \$1,000 | \$1,920 | \$2,200 | \$2,400 | \$2,400 | \$2,530 | \$2,460 |
| 年平均 增加率 | ← 8.3% → | | | ← 0.5% → | | | |

出處: 金日成 新年辭('80), 「朝鮮概觀」, 每日新聞('83. 9. 13), 西方記者團 取材, 「뉴욕 타임즈」, 聯合通信 ('92. 2. 24) 등의 內容을 綜合한 것임.

- 또한 北韓의 國民所得 總額으로 보면 1988年 497億弗을 記錄한 以後 1990年에 480~485 億弗 水準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同 期間中 年平均 -1.4%의 속도로 「마이너스」成長 했음을 間接的 으로 是認하고 있음.

※ 當院은 1990年度 北韓의 經濟成長率을 -3.7%로 推定

- 그러나 去年의 경우에는 舊 蘇聯으로부터의 原油導入量이 前 年보다 1/10로 激減되었다고 하면서도 經濟成長率을 4~5% 示 顯하였다고 發表하고 있어 經濟現實과 發表內容이 相衝되고 있 음.
- 北韓은 經濟依存도가 가장 높은 舊 蘇聯과의 經濟協力 및 原油 導入이 比較的 圓滑했던 1989~90年 期間中에도 마이너스 成長 을 記錄하였고
- 이후 지금까지 北韓經濟 沈滯의 가장 큰 要因인 에너지 不足 問題는 打開되지 않고 있음.

最近 北韓發表의 國民所得 推移

| 區分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國民所得 | 458億弗 | 464億弗 | 497億弗 | (490億弗) | 480~485億弗 | 504億弗 |
| 成長率 | - | 1.3% | 7.1% | -1.4% | -1.4% | 4~5% |

註: 北韓發表의 1人當 所得과 人口를 基礎로 算出

- 따라서 이번 北韓의 經濟實績 發表는 統計的 信賴性 및 國民所得 概念에 있어서 상당한 問題를 안고 있으나 北韓 스스로가 自體의 經濟的 어려움을 間接的으로 是認하였다는 點이 注目됨.

나. 軍事費 減縮

- 北韓은 僞裝平和攻勢의 一環으로 '70年代初 이래로 지금까지 軍事費를 人民經濟費, 社會文化施策費 등 他 豫算項目에 隱匿編成하는 가운데 過多하게 支出하여 왔음.

— 北韓은 軍事費의 財政負擔率을 期間中 12.0~17.0% 로 發表하고 있으나 實質 軍事費는 約 30% 水準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음.

- 이와같은 軍事費 支出의 累積은 財政依存度가 높은 北韓經濟에 있어서 經濟成長을 직접적으로 制約하는 結果를 招來하였음

- 이번 金正宇의 軍事費 減縮 關聯 言及內容은 軍事費의 絕對規模는 從前과 同一하게 하면서 運用面에서 調整할 것임을 主要骨子로 하고 있음.

— 1991年度 軍事費 豫算規模: 45億 6,583萬원(21.3億弗)

— 1991年度 財政負擔率 : 12.3%

※ 當院 實質軍事費 推定值 : 53.3億弗

- 또한 北韓은 지난 2. 13字 中央人民委員會 政令으로 全體 勞動者, 事務員, 農民들의 生活費를 大幅 引上시킨다는 「住民福祉向上施策」을 決定, 이에 따른 막대한 規模의 追加財源(最小限 40 億원 상당)이 要求되고 있는 實情에 있음.
- 이로 볼때 北韓은 금년도 豫算編成에 있어서 종래 他項目에 은폐시켜 왔던 軍事費의 상당부분을 人民經濟費 및 社會文化施策費로 轉用시켜 부족한 財源을 確保하는 한편,
- 平和이미지 構築의 一環으로 財政豫算 收入의 規模를 높게 策定하여 外形的으로 財政負擔率을 낮출 것으로 判斷됨.

※ 1991年度 은폐된 軍事費 豫算規模 推定值 : 68億원 水準(32億弗)

- 그러나 北韓이 1962年 12月 4大軍事路線을 採擇한 이래 中央集權的 軍產複合體制를 固守하여 옴으로써 軍費減縮이 바로 軍事力의 減縮을 意味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分析됨.

다. 對外經濟協力

- 이번 金正宇의 對日本記者會見은 「先峰—羅津 自由經濟貿易地帶」내의 外國人 投資를 誘致하기 위해 北韓側 立場을 밝히는 「說明會」로서의 性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아직 法律的·制度的으로 整備된 段階는 아니나 北韓이 外國企

業의 全額出資 許容, 外國人 所得稅率의 大幅 引下(25% → 10~15%), 現地 「비자」發給 등을 檢討하고 있는 것은 종래의 合營法과 그 施行細則을 크게 緩和시키는 것으로서 特定地域에 局限한 對外開放 意志를 강도 높게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日本 企業으로 하여금 特區內에 要求되는 社會間接資本과 電子工業 및 輕工業 部門의 進出을 要請하고 있는 것은 北韓側이 日本을 가장 큰 經協相對國으로 設定해 놓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今年 4月末 北韓은 平壤에서 33個 日本企業들이 參與하는 「對北韓 投資에 관한 國際會議」開催 豫定

- 그러나 外國人企業法·所得稅法·出入國法 등 각종의 關聯法律의 檢討時限을 來年 上半期까지 잡고 있는 등 신중한 立場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經濟的 實利 獲得이 切實하다고 하더라도 對外經濟開放은 國際政治, 外交 및 軍事的 與件變化를 감안하여 伸縮的으로 對應해 나가겠다는 意圖를 나타낸 것으로 判斷됨.

라. 綜合判斷

- 北韓은 이번 記者會見을 통해 國際적으로 크게 실추된 北韓經濟力에 대한 이미지를 改善, 經濟外交活動의 領域을 넓히는 한편
- 그동안 他項目에 隱匿, 編成하여 變則的으로 運用해 오던 軍事費를 再編·運用함으로써
 - 對外的으로는 經濟部門에 필요한 所要財源을 상당부분 充當하는 동시에

－對外的으로는 平和 이미지를 부각시켜 核査察 등의 軍事部門에 대한 國際的인 壓力을 最少化해 보려는 意圖로 判斷됨.

- 또한 「先峰－羅津 自由經濟貿易地帶」내의 外國人 投資促進을 위해 關聯 法律을 慎重히 整備하는 가운데, 특히 日本을 主軸으로 하여 大規模의 資本이 요구되는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擴充과 電子工業 및 輕工業團地를 造成해 보려는 것으로 評價됨.

國際原子力機構에 査察對象目錄 提出

1992. 5

1. 概 要

- 北韓은 5. 5 外交部代辯人의 中央通信記者 質問에 대한 答辯形式을 통해 5. 4 國際原子力機構(IAEA)에 核査察對象目錄, 즉 「最初報告書」를 提出하였다고 밝히고 “核査察이 원만히 進行될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南韓에 대한 「全面査察」과 韓半島의 非核化를 위한 美·日兩國의 「誠意」를 要求하였음.

〈外交部代辯人 答辯 要旨〉

- 核査察을 빨리 進陟시키려는 念願에서 5月末까지 提出하면 되는 核物質 初期在庫量 報告書와 核設備明細를 훨씬 앞당겨 5月 4日에 國際原子力機構에 提出하였음.
- 國際原子力機構는 5月안으로 補助細則 合意를 위한 該當部門 專門家들을 보내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通報하여 왔음.
- 우리는 國際原子力機構가 派遣하는 專門家들과 核査察과 관련한 問題들을 충분히 協議할 것이며, 核査察이 원만히 進行될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다 할 것임.
- 우리가 核査察問題와 관련한 實務的 節次들을 漸進적으로 밟아 나아가는데 맞게 美國도 이제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化를 實現하는데 誠意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美國은 南朝鮮에 있는 核武器와 核基地에 대한 全面査察을 進行하는데 대한 우리의 原則的이고 公정한 要求를 受容하는 勇斷을 내려야 함.
- 우리의 核査察問題와 朝鮮半島의 非核化問題가 實現되어 가고 있는 現時點에 와서 東北아시아地域에서의 核威脅은 명백히 日本으로부터 오고 있음.
- 日本은 朝鮮半島에서의 非核化過程에 制動을 거는 行爲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世界平和에 威脅을 주는 核武裝化 野望을 당장 拋棄함으로써 그에 대한 國際的 憂慮를 解消하여야 할 것임.

2. 分 析

- 이번에 提出된 核査察 對象目錄은
 - 지난 4. 10 IAEA와 北韓間의 「核安全措置協定」이 發效됨에 따라
 - 5月末까지 提出케 되어 있는 北韓內 査察對象 核施設 및 核物質 관련 「最初報告書」임.
- 北韓은 同 目錄內容을 發表하지 않았으나 IAEA側이 밝힌 北韓의 14個 核施設 目錄은 다음과 같음.

| 施設名 | 數量 | 所在 | 備考 |
|---------------|----|------------|------|
| 研究用原子爐 및 臨界施設 | 1基 | 寧邊 核物理學研究所 | 既査察中 |
| 準臨界施設 | 1基 | 平壤 金日成大學 | 既存施設 |
| 核燃料棒製造 및 貯藏施設 | 1基 | 寧 邊 | 既存施設 |
| 核發電實驗原子爐 | 1基 | 寧邊 核物理學研究所 | 既存施設 |
| 放射化學實驗室 | 1基 | 寧邊 放射化學研究所 | 建設中 |
| 核發電所 | 2基 | 寧 邊 | 建設中 |
| 發電用原子爐 | 3基 | 新 浦 | 計 劃 |
| 우라늄鑛山 | 2個 | 順 川 등 | |
| 濃縮우라늄 生産工場 | 2個 | 平 山 등 | |

○ 上記 目錄은

— 北韓이 지난 4. 9 最高人民會議의 「核安全措置協定」批准을 前後하여 최초로 공개한 北韓의 核施設 및 核開發 實態內容과 거의 同一하며

— 核再處理施設에 관한 內容을 包含하고 있지 않음.

※ 北韓은 4. 28~5.4間 訪北한 美 카네기國際平和財團 代表團 (團長 셀리그 해리슨 등 4名)에게 核再處理實驗을 하고 있으며, 少量의 研究用 플루토늄을 生産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北韓이 예상보다 빠른 時點에 同 「最初報告書」를 提出한 것은

— 第7次 南北高位級會談(5. 5~5. 8)과 第7次 對日修交會談(5. 13~5. 14)을 앞둔 時點에서 이같은 措置를 취함으로써

— 該當 會談에서 韓·日 兩國의 核관련 壓力을 각각 稀釋시키는 한편

— 對外的으로 그들의 平和이미지를 提高하려는 意圖 등으로 分析 됨.

○ 한편 北韓은 최근 美國側에서 “國際原子力機構의 査察이 實現되더라도 北韓의 核開發 疑惑이 완전히 拂拭될 수 없다”는 主張이 대두하고 있는데 대해 北韓의 “自主權과 尊嚴을 모독하는 好戰的 妄動”이라고 非難하였음.

※ 5. 5 로동신문 論評, “好戰分子들의 妄發”

'91年度 北韓貿易 動向*

1992. 7

1. 概 要

가. '91年 貿易規模

○ '91年度 北韓의 對外貿易 總額은 41個 交易國을 대상으로 推計한 결과 前年보다 12.6% 減少한 26億 1,783萬弗이었음.

— '91년 輸出 9億 9,493萬弗, 輸入 16億 2,290萬弗

※ '90년 輸出 10億 9,505萬弗, 輸入 18億 9,891萬弗

'91年度 北韓의 交易規模

(單位: 千弗)

| 輸 出 | 前年比 | 輸 入 | 前年比 | 交易總額 | 前年比 |
|---------|-------|-----------|--------|-----------|--------|
| 994,933 | △9.1% | 1,622,900 | △14.5% | 2,617,834 | △12.6% |

* 國內 有關機關들은 '91년 교역총액을 27億弗(輸出 10億弗, 輸入 17億弗) 및 35.2億弗(輸出 12.4億弗, 輸入 22.8億弗)로 각각 推定

나. 對中國 貿易

○ '91년도 최대 교역국인 中國과의 무역규모는 前年比 29.3% 증가한 6億 5,436萬弗로서 北韓 輸出入 總額(26億 1,783萬弗)의 25.0%를 占有하고 있음.

* 이 報告書는 「日本 貿易振興會(JETRO)」에서 最近('92. 6. 28) 發表한 「'91年の 北朝鮮의 對外貿易動向について」의 內容을 토대로 作成한 것임.

— 수출은 鐵鋼, 石炭 등 主要品目の 수출부진으로 前年比 31.2% 減少된 7,710萬弗이었으나, 輸入은 原油價格의 상승으로 前年比 46.5% 增加하였음.

— '91년도 原油導入量은 110萬톤으로 '90년도의 106萬톤과 큰 차이가 없으나 導入單價가 톤당 58弗에서 126弗로 급증하였음.

※ '91년도 한국의 對中國原油導入量은 103萬톤(總導入量의 1.9%)으로 톤당 平均單價는 約 114.6弗이었음.

'91年度 對中國交易 內譯

(單位: 千弗)

| 輸 出 | 前年比 | 輸 入 | 前年比 | 交 易 總 額 | 前年比 |
|--------------------|--------|------------------------|--------|------------|-------|
| 77,103 〈主要輸出品目〉 | △31.2% | 577,258 〈主要輸入品目〉 | 46.5% | 654,361 | 29.3% |
| 鐵鋼(輸出比重 12.6%) | △69.0% | 石油製品(輸入比重 27.8%) | 117.5% | | |
| 石炭(輸出比重 31.7%) | △17.1 | 機械·輸送器機 (輸入比重 8.5%) | 47.7% | | |
| | | 食料品(輸入比重 10.5%) | 8.5% | | |

* '91年度 韓國의 對中國交易 總額은 58億 1,200萬弗(輸出: 23億 7,100萬弗, 輸入 34億 4,100萬弗)로서 前年比 51.0% 增加

다. 對日本 貿易

○ '91년도 北韓의 제2위 교역국으로 浮上한 日本과의 교역은 輸出이 前年比 5.6% 減少한 2億 5,522萬弗, 輸入은 27.3% 增加한 2

億 4,639萬弗로서 北韓 總交易規模의 19.2%를 占有

○ 주요 품목별 輸出入 內譯을 살펴보면

- 纖維類(14%), 鐵鋼 등 金屬製品(10.9%), 魚貝類(18%) 등의 수출은 增加趨勢를 보였으며
- 野菜類, 金屬礦物, 纖維材料, 石炭 등은 減少하였음.

'91年度 對日交易 內譯

(單位: 千弗)

| 輸 出 | 前年比 | 輸 入 | 前年比 | 交易總額 | 前年比 |
|---------|------|---------|-------|---------|------|
| 255,217 | △5.6 | 246,392 | 27.3% | 501,609 | 8.2% |

라. 對CIS 貿易

○ 종래 北韓의 최대 交易國이었던 舊蘇聯과의 交易은 급격한 減少 趨勢를 보이고 있는바, 年度中 輸出은 前年比 61.2% 감소된 1億 7,102萬弗, 輸入은 2.4% 감소된 1億 9,373萬弗에 그침으로써 北韓의 第3位 交易國으로 전락하였음.

- 兩國間의 交易額이 '91年度 北韓 總交易規模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13.9%임.

'91年度 對蘇交易 內譯

(單位: 千弗)

| 輸 出 | 前年比 | 輸 入 | 前年比 | 交易總額 | 前年比 |
|---------|--------|---------|-------|---------|-------|
| 171,018 | △61.2% | 193,725 | 72.4% | 364,743 | 68.1% |

* 舊蘇聯은 '90년까지는 公定換率(1弗: 0.6루블)에 基準한 魯블換算 方式으로 貿易統計를 발표하여 왔으나, '91年度 統計는 '90. 11 채택한 商業換率(1弗: 1.75

루블)에 基準하였음.

* 91년도 한국의 對蘇交易 總額은 12億 2,400萬弗(輸出: 6億 4,200萬弗, 輸入: 5億 8,200萬弗)로서 前年比 37.7% 增加

마. 其 他

- 對香港 輸出規模增加(前年比 40.8% 增加), 對카나다 穀物 輸入量 增加 등 북한은 交易相對國 多邊化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國家와의 交易規模가 너무 적어 對蘇聯 交易量 減少分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評 價

- 當院에서 '91년도 북한의 貿易實績을 國內 情報·有關機關의 推定値와 JETRO의 이번 發表資料 등을 綜合하여 檢討한 結果 '91年 交易規模는 前年比 大幅 減少된 것으로 判斷됨.

※ 舊蘇聯과의 交易實績이 評價機關에 따라 差異를 보이고 있는 바, 그 이유는

- ① 환율적용상의 混亂(3가지 換率이 존재, '92. 7. 1이후 1弗: 125.26루블로 單一化 되었음)
 - ② 舊蘇聯에서의 精確한 貿易統計資料 入手 곤란
 - ③ 북한의 對蘇 債務에 대한 現物償還分을 貿易實績에 算入하는 문제의 차이 등에 기인함.
- 이번 JETRO 자료에서 나타난 特異 事項은 舊蘇聯과의 交易規模가 급격히 減少한 점과 멕시코가 主要 交易相對國으로 浮上한 점 등임.

- 舊蘇聯 崩壞以後 CIS 諸國과의 交易은 '91년부터 施行된 「硬貨 決濟方式」의 채택으로 相互 交易規模가 激減
- 北韓經濟는 閉鎖 經濟體制의 固守로 貿易依存도가 比較적 低水準(約 20%)일 뿐아니라, 外債에 대한 元利金 償還을 대부분 遲延시킴으로써 貿易赤字의 累增에도 불구하고 當장의 破局狀況을 모면하고 있음.
- 原油 등 必須 不可缺한 物品의 導入은 바터交易方式 또는 武器 輸出에 대한 代價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은 舊蘇聯 및 東歐圈 등 既存 貿易基盤의 喪失과 外貨不足에 따른 에너지, 資本材 導入의 不振 등의 영향으로 '90년 이후 마이너스 成長이 계속되고 있음.
-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既存 債務에 대한 現物償還을 조속히 履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 ※ 「'91 朝·蘇 相互貿易 및 支拂에 관한 協定」에서 對蘇債務總額 (33億 1千萬루블)중 5億루블을 現物로 償還토록 규정
- 이에 따라 북한은 西方圈, 아시아圈 國家 등 그들이 主張하는 「友好的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交易擴大에 注力하는 등 보다 積極적인 貿易政策을 展開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의 換率單一化 措置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1992. 7

1. 概 要

- 러시아의 中央銀行은 '92. 7. 1부터 盧布貨를 兌換性 貨幣로 전환키 위해 盧布貨의 對美換率을 125.26盧布로 單一化하는 한편,
- 그간 盧布貨 價値를 人爲的으로 높게 策定, 사용하여 왔던 公定換率, 商業換率 등은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모스크바=外信綜合)

2. 分 析

「루블」貨에 대한 「북한원」貨의 相對的 評價切上

- 이번 러시아의 換率單一化 措置에 의해 「루블」貨의 對美換率은 보다 大幅 引上되었으며 따라서 「루블」의 貨幣價値는 그만큼 平價切下되는 結果가 되었음.

— 公定換率 基準時 223배, 商業換率 基準時 약 1.5배 引上

중전 「루블」貨의 對美換率

('92. 6. 22 현재)

| 公 定 換 率 | 商 業 換 率 |
|----------|----------|
| 0.5607루블 | 84.781루블 |

出處: The Financial Times (1992. 6. 23)

- 북한은 自己通貨의 對美換率을 任意的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최근의 公定換率은 1원內外, 商業換率은 2.15원 內外에서 맴돌고 있음.
- 따라서 「루블」貨에 대한 北韓 元貨의 換率은 「루블」貨의 換率引上(平價切下)에 따라 相對적으로 크게 下落(平價切上)하는 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對러시아 輸出은 不利하나 輸入與件은 好轉

- 對러시아 輸出은 盧布貨(硬貨)의 影響을 받으므로 상대적인 輸出價格 上昇을 초래, 輸出(用役輸出 포함)은 종전보다 어려워질 것임.
- 시베리아 勞動力 送出 등 用役輸出의 경우 「루블」貨로 받고 있는 勞働者 貨金은 實質적으로 下落
- 반면 北韓 貨幣價値의 상대적 平價切上에 따라 對러시아 輸入原價가 下落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輸入物量이 增大되는 效果가 있음.
- 따라서 雙方間 換率調整을 위한 별도의 外換管理方案이 政治外交적으로 강구되지 않는 한 北韓의 對러시아 貿易收支는 보다 惡化될 것으로 보임.

對러시아 外債負擔 크게 輕減

- 對러시아 外債負擔은 47億弗 수준(27億루블)에서 2,200萬弗 수

준으로 大幅 下落함으로써 美貨로 償還할 경우 크게 輕減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북한의 總外債規模(1990년): 78.6億弗

○ 따라서 러시아側은 換率變動에 따라 발생하는 換差損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多角的인 方案을 摸索하는 한편 北韓은 換差利益을 最大化하는데 注力할 것임.

※ 러시아 經濟改革以後 「루블」貨의 價値가 계속 큰 幅으로 下落함에 따라 금년 3月 金正일은 「루블」貨를 回收하라는 指示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對러시아 貿易代金 決済 및 外債償還을 위한 것으로 보임.

3. 綜合 評價

○ 러시아의 換率單一化 措置는 北韓經濟에 當장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지 않으나 북한이 「루블」貨에 대한 既存換率을 固守할 경우 「루블」貨의 平價切下에 따른 北韓원貨의 相對的 平價切上 效果로 인해

— 對러시아 交易에 있어서 輸入增加와 輸出 減少의 壓力으로 작용, 貿易赤字가 擴大될 것으로 보이며

— 對러시아 外債는 「루블」貨 보다는 美달러, 마르크, 엔 등 硬化로 償還할 경우 外債負擔이 대폭적으로 輕減하게 될 것임.

○ 그러나 「루블」貨의 換率引上은 北韓과 러시아間의 經濟交流 및

協력이 유지되는 한 北韓 원화에 대해 換率引上 壓力으로 作用할 것으로 分析됨.

- 북한은 그동안 對蘇聯 經濟依存도가 50%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産業構造的으로 러시아와의 緊密한 經濟協력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 러시아側으로서도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하였던 債權의 價値保全을 위해 努力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雙方間의 協商이 不可避할 것임.
- 따라서 北韓은 對러시아 經濟交流 및 協力の 活性化는 물론 海外資本誘致를 위해 自己通貨의 平價切下를 斷行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展望됨.

시베리아 北韓伐木場 人權實相 分析*

1992. 9

1. 伐木工 志願實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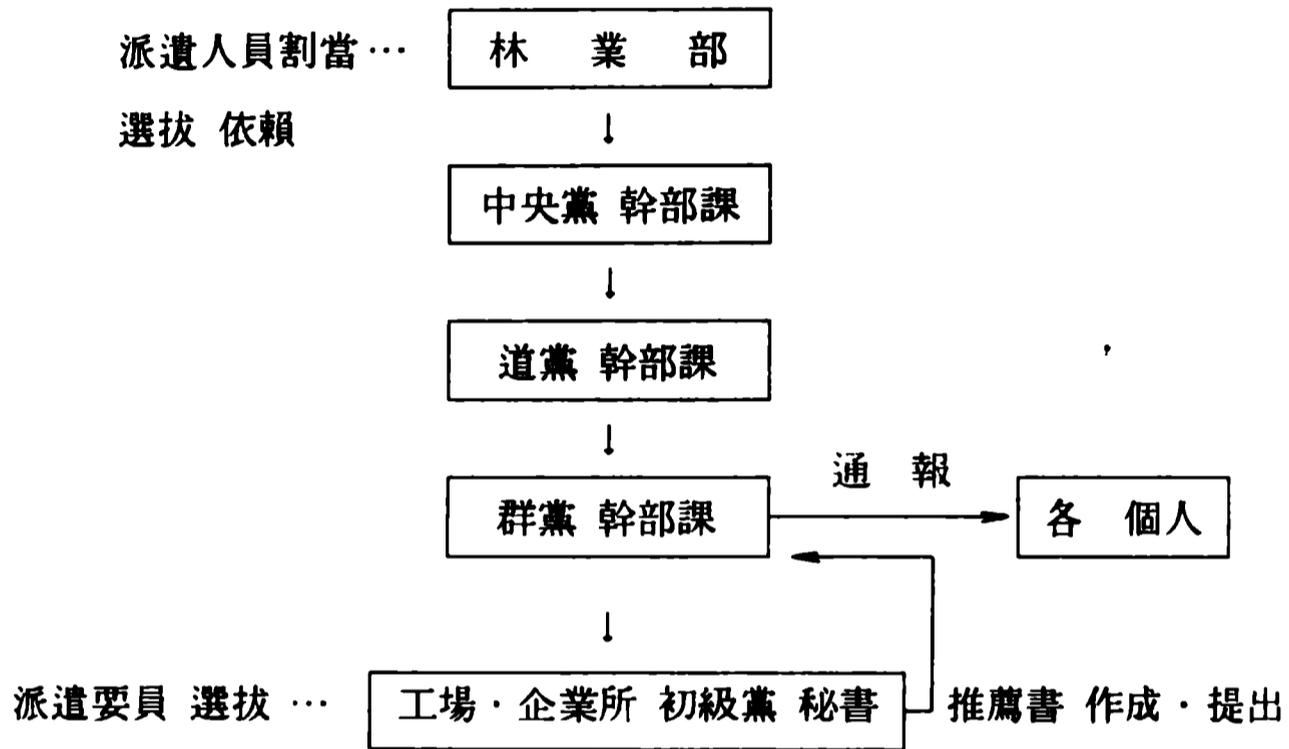
〈選拔 對象者〉

- 北韓의 시베리아 伐木事業은 '60년대 중반부터 시작, 初期에는 주로 成分不良者, 犯罪者 등을 중심으로 選拔·派遣하였음.
- 그러나 體制不滿者가 대부분인 이들은 北韓의 治安行政權을 벗어난 蘇聯에서 脫出을 빈번히 試圖, 北韓 當局의 문제거리로 登場하였음.
- 그러던중 '70년대 中반부터 시베리아 伐木工들의 所得水準, 生必需品 調達, 그리고 日常生活 與件 등이 北韓보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認識이 北韓 住民들간에 퍼지면서부터 伐木工 志願者가 急増하는 趨勢를 보이자,
- 北韓當局은 初期의 性分不良者 중심에서 性分優秀者로 選拔基準을 바꿔, 派遣하여 오고 있음.

* 이 報告書는 最近 시베리아 北韓伐木場의 人權問題가 國內外 言論의 注目を 받아오면서, 그곳의 人權實態가 「最惡의 狀況」이라고 認識되고 있는데 반해, 正작 北韓住民들은 시베리아 伐木勤務를 羨望하고 있는 二律背反的 狀況認識을 解消하기 위해 귀순자 證언을 토대로 作成한 것임.

〈選拔 節次〉

- 시베리아 伐木工 選拔은 初期에는 市·郡 行政委員會 勞動課에서 管掌하였으나 志願者 急增으로 인해 選拔基準을 보다 強化하려는 意圖에서 '85년부터 選拔 管掌業務가 市·郡 勞動黨 幹部課로 移管됨.



- 選拔은 주로 黨員, 既婚者 등을 中心으로 하고 健康이 나쁘거나 시베리아 伐木經驗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賂物額數에 의해 選拔이 左右되고 있는 실정임.

2. 伐木工 日常生活

〈賃 金〉

- 月 賃金은 每月初 루블貨로 支給하는데, 伐木工의 경우 약 150 루블(북한화 250원)로서 北韓 一般勞動者 月 賃金(70-100원)보

다 2~3배 가량 많음.

* 月 賃金중 40루블은 食費, 文化費(이발·목욕비 등) 명목으로
일괄 控除

○ 伐木事業 初期에는 月給의 5%(루블화)만 本人에게 支給하고 나
머지 95%(루블화)는 北韓貨와 1:1로 交換하여 事業所側이 직접
집으로 送金시켜 왔으나, '80년부터는 本人支給 50%, 送金 50%
로 完化하고 '88년부터는 100% 本人支給으로 擴大, 伐木工의 實
質所得이 向上되었음.

* '91년 公定換率은 1루블: 1.66北韓貨, 특히 暗市場에서는 1루블
: 40北韓貨까지 거래되는 바, 루블貨와 北韓貨의 1:1 交換은
벌목공에게 엄청난 不利益임.

<衣·食·住>

○ 伐木工에 대한 被服支給은 여름作業服은 1년에 1벌, 겨울作業服
은 3년에 1벌씩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伐木工들이 전혀 말
래를 하지 않고 作業中 찢기거나 헤진 것을 버릴 때까지 그대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外部人들이 北韓伐木工들을 「거지」라고 酷
評하기도 함.

* 실제 지난 '84년 金日成이 蘇聯 및 東歐巡訪 당시 北韓 伐木工
들을 「아프리카 메뚜기」라고 비웃는다는 얘기를 듣고 處遇改善
을 講究해 보라고 指示했다 하나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
음.

— 그러나 이마저도 北韓에 비하면 나은 것으로, 北韓의 경우 被服支給規程이 있기는 하지만 經濟事情 惡化로 鐵道·炭鑛 등 重勞動 從事者를 제외하고는 거의 被服支給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식사는 主食으로 '88년까지 1일 800g씩 백미(100%)가 配給됐으나 이후 北韓內의 食糧事情 惡化로 節約米 名目으로 10%씩 控除하게 되어 하루 한끼씩(점심 또는 저녁)강냉이죽이나 밀가루 죽 등으로 식사하여 왔음. 그러나 이것도 北韓과 비교하여 보면 월등히 좋은 수준인데, 특히 순백미 식사는 北韓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실정임.

— 副食은 염장무, 미역국, 소금국 등으로 고기는 특별한 行事(金父子生日 등) 때나 配給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각자 外部에서 가제미통조림, 오징어 등을 조달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찮은 편임.

○ 宿所는 대부분 移動式 幕舍(5~6명 정도로 '빵통'이라고 함)로서 4명이 함께 生活하고 있으나 남자들만 생활하기 때문에 衛生狀態가 극히 不良함.

<日課 生活>

○ 勤務는 1日 3交代(08:00~16:00~24:00)로 8시간씩 하며 이 時間中 「社會主義 競爭目標」인 板木(제품) 25m³만 生産하면 個人의 義務勞動量은 달성한 셈이며, 追加 生産量은 賃金에 加算되기 때문에 自發的으로 勞動에 參與하고 있음.

- 그러나 「社會勞動」이라 하여 하루 3~4시간씩 無報酬 勞動을 해야 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1일 11~12시간의 重勞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不滿을 가지고 있음.

○ 外出을 하고자 할 경우 各 事業所 統計員에게 申請, 安全員의 許可를 받고 나가게 되는데 事業所當(약 1,500명) 1日 20名 정도를 許可해 주고 있음.

- 그러나 外出許可를 받지 못한 자는 越牆하여 無斷外出을 하는 예가 많은데, 주로 市內에 나가 장사를 하거나 映畫구경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냄.

* 北韓 伐木工들은 蘇聯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 市內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事業所 勞動者들에게 비싸게 팔거나 사향노루를 남획, 蘇聯人들에게 팔기도 함.

- 만약 無斷外出時 安全員에게 摘發되면 벌금 50루블을 내고 無報酬勞動을 해야하기 때문에, 無斷外出中 安全員이 나타나면 伐木工들은 체면불구하고 극장·가게 등지에서 뛰어 달아나는 것이 예사임.

3. 犯法者 處罰

〈安全員 配置〉

○ 北韓은 시베리아 各 伐木事業所에 安全員으로 身分을 위장한 國家保衛部 要員들을 配置, 伐木工들을 監視·統制하고 있음.

- 이들은 各 事業所當 3~4명 정도 配置되어 있는데, 주로 伐木工들의 思想動向 把握, 脫走者 색출, 犯法者 檢舉 등의 任務를 수행하고 있음.

< 留置場 運營 >

- 各 事業所는 「拘留場」(일명 '토끼장')이라고 하는 留置場을 設置·運營하고 있는데, 拘留場별로 통상 10여명 정도가 收監되고 있음.
- 특히 비르비잔市에는 '88년 舊 蘇聯 收容所建物を 引受해서 設置한 「在蘇 林業代表部 監獄」이 있는데, 여기에는 專門看守 5명이 配置되어있음.
- 同 監獄에는 各 事業所 拘留場에서 送致되어 온 重犯이나 管轄 區域內的 犯法者를 收監하고 있음.

< 犯法者 處罰方法 >

- 犯法者는 경미한 竊盜·暴行·無斷外出者 등 單純犯과 南韓放送 聽取者·脫出者·體制不滿 發言者 등 政治犯으로 區分되는데, 單純犯은 事件의 輕重에 따라 대개 일주일내에 釋放되는데 반해, 政治犯으로 分類되면 보통 4~6개월 동안 拘留場에 收監·待機시키면서 北韓內 國家保衛部の 指示에 따라 處罰하게 됨.
- 즉 政治犯의 경우 各 事業所 安全員이 調書를 作成, 在蘇 林業代表部 安全部를 經유하여 北韓內 國家保衛部에 報告하면, 國家保衛部에서는 犯法者의 處罰 節次와 方法을 決定·下達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北韓內 政治犯收容所에서 受刑生活을 하게 됨.

○ 收監者의 處遇는 食事의 경우 定量의 1/3에 소금국 등을 주는 정도로 극히 不良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심한 구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70년대까지만 해도 北韓伐木工이 市內에 나가 犯法行爲를 하다가 蘇聯 安全員에게 逮捕됐을 경우에는 蘇聯法에 의해 裁判받고 蘇聯收容所에 收監됐음.

- 그런데 蘇聯收容所의 施設 및 生活이 北韓 伐牧場보다 좋고, 또한 刑期滿了 이후 本人이 원할 경우 蘇聯居住도 許容됐었기 때문에 일부러 犯法行爲를 하는 경우도 發生하고, 또한 北韓側의 反撥도 있고 해서 '80년대 이후부터는 犯法者를 무조건 北韓側에 引渡하고 있음.

4. 綜合判斷

○ 最近 시베리아 北韓 伐牧場의 人權實態에 관한 國內外 言論의 報道가 잇따르면서 伐木工들의 비참한 生活相과 強制勞動, 政治犯收容 등의 內容이 公開되자 國際社會에 커다란 衝擊과 함께 이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어 왔음.

* 主要報道: 「모스크바 뉴스」('91. 3. 10), 「서울신문」('91. 5. 28 ~ 6. 13, 5회연재), 「모스꼬프스키 콤포물레츠」('92. 1. 4), 「런던채널 4TV방송」('92. 5. 27), KBS 1 「시베리아 북한 벌목장을 가다」('92. 8. 26)등

○ 그러나 정작 北韓住民들은 시베리아 伐木場 勤務가 「돈」과 「자

유」를 동시에 保障해 주는 「녹색의 땅」이라고 認識, 치열한 競爭 속에 志願을 自請하고 있는 바, 시베리아 伐木場이 「最惡의 人權 死角地帶」라는 일반적인 輿論을 무색케 하고 있음.

○ 따라서 歸順玆 證言, 國內外 言論報道, 其他 關聯資料를 分析· 綜合해 본 結果,

— 北韓 勞動者들의 生活實相은 長期間에 걸친 重勞動과 蘇聯住民에 비해 形편없이 낮은 報酬·衣食住 등 相對的 貧困感으로 인해 不滿이 加重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北韓에 비해서는 나은 報酬와 食生活, 그리고 「制限된 自由」나마 享有하고 있고,

— 시베리아 北韓 伐木工들이 「統制된 營內生活」을 原則으로 하고 있고, 옷차림 등이 지극히 남루하기 때문에 外部 言論에 의해 「強制勞動收容所」로 비취질 수도 있으나 基本的으로 시베리아 勤務가 北韓 住民들의 자발적인 志願에 의해 可能하다는 점을 勘案해 보면 信憑性이 적으며,

— 脫走者·南韓放送 聽取者 등을 北韓으로 召還, 處罰하고 있는 것은 確認되나, 北韓內 政治犯의 시베리아 強制移送 集團收容은 脫出, 國際言論機關에의 露出憂慮 등 危險負擔이 따른다는 점에서 可能性이 稀薄한 것으로 判斷됨.

○ 結論的으로 시베리아 伐木場의 生活實態는 強制勞動, 政治犯 集團收容등의 論難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價値基準으로 보았을 때 最惡의 狀況임은 틀림없으나, 오히려 北韓住民들의 羨望의 對象이 되고 있는 現實은 「北韓內 人權狀況의 現住所」를 克明하게 잘 代辯해 주고 있음.

北韓 · 中國 貿易 現況

1992. 11

1. 北 · 中 貿易規模 및 貿易收支

- 北 · 中 交易은 雙方間의 傳統的인 友好協力體制를 바탕으로 '85년 이후 매년 平均 5億弗 規模의 交易이 이루어 짐으로써 '90년까지 中國은 蘇聯에 이어 北한 第2의 交易對象國이었음.
- 그러나 '89년 이후 東歐諸國의 崩壞 및 舊蘇聯 解體 등 國際情勢 變化로 北한의 해외시장 구조가 改편됨으로써 '91년에는 中國이 北韓 第1의 交易國으로 浮上하였음.
 - '91年度 北 · 러시아 交易總額은 4.7億弗로 前年度의 25.7億弗에 비해 81.7% 減少한 반면, 北 · 中 貿易은 前年度 4.8億弗에서 29.2% 增加한 6.2億弗을 記錄하였음.
- 北한의 對中 輸出은 '86년이래 5年 連續 減少趨勢를 나타내었으며 貿易收支 赤字도 5年 連續으로 增加趨勢를 보였으며, 특히 '91年度에는 貿易赤字幅이 大폭 增加되었음.

'85~'91 北韓의 對中 交易現況

(단위: 億弗)

| 區分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
| 總額 | 5.1 | 5.5 (7.8%) | 5.2 (△5.5%) | 5.8 (△11.5%) | 5.6 (3.4%) | 4.8 (△14.3%) | 6.2 (29.2%) |
| 輸出 | 2.7 | 2.9 (7.4%) | 2.4 (△17.2%) | 2.3 (△4.2%) | 1.8 (△21.7%) | 1.2 (△33.4%) | 0.9 (25.0%) |
| 輸入 | 2.4 | 2.6 (8.3%) | 2.8 (7.7%) | 3.5 (25.0%) | 3.8 (8.6%) | 3.6 (△5.3%) | 5.3 (47.2%) |
| 貿易 收支 | 0.3 | 0.3 | △0.4 | △1.2 | △2.0 | △2.4 | △4.4 |

* ()는 前年比 增減率 표시임.

北韓의 主要 國別 貿易現況('85~'91)

(단위: 億弗)

| 區 分 | 總規模 | 러시아(舊蘇) | 中 國 | 日 本 | 其 他 | |
|-----|-----|---------|-------------|------------|------------|-------------|
| '85 | 總額 | 31.0 | 13.1(42.3%) | 5.1(16.4%) | 4.3(13.9%) | 8.5(27.4%) |
| | 輸入 | 17.9 | 8.1 | 2.4 | 2.5 | 4.9 |
| | 輸出 | 13.1 | 5.0 | 2.7 | 1.8 | 3.6 |
| '86 | 總額 | 35.7 | 16.9(47.3%) | 5.5(15.4%) | 3.5(9.8%) | 9.8(27.5%) |
| | 輸入 | 20.6 | 10.6 | 2.6 | 1.8 | 5.6 |
| | 輸出 | 15.1 | 6.3 | 2.9 | 1.7 | 4.2 |
| '87 | 總額 | 41.5 | 19.5(47.0%) | 5.2(12.5%) | 4.5(10.8%) | 12.3(29.7%) |
| | 輸入 | 25.0 | 12.7 | 2.8 | 2.1 | 7.4 |
| | 輸出 | 16.5 | 6.8 | 2.4 | 2.4 | 4.9 |
| '88 | 總額 | 52.4 | 26.4(50.4%) | 5.8(11.1%) | 5.6(10.7%) | 14.6(27.8%) |
| | 輸入 | 32.1 | 17.5 | 3.5 | 2.4 | 8.7 |
| | 輸出 | 20.3 | 8.9 | 2.3 | 3.2 | 5.9 |

| | | | | | | |
|-----|----|------|-------------|------------|------------|-------------|
| '89 | 總額 | 48.0 | 23.9(49.8%) | 5.6(11.7%) | 5.0(10.4%) | 13.5(28.1%) |
| | 輸入 | 28.9 | 15.0 | 3.8 | 2.0 | 8.1 |
| | 輸出 | 19.1 | 8.9 | 1.8 | 3.0 | 5.4 |
| '90 | 總額 | 47.7 | 25.7(53.8%) | 4.8(10.1%) | 4.8(10.1%) | 12.4(26.0%) |
| | 輸入 | 28.1 | 15.2 | 3.6 | 1.8 | 7.5 |
| | 輸出 | 19.6 | 10.5 | 1.2 | 3.0 | 4.9 |
| '91 | 總額 | 27.2 | 4.7(17.3%) | 6.2(22.8%) | 5.0(18.4%) | 11.3(41.5%) |
| | 輸入 | 17.1 | 2.8 | 5.3 | 2.2 | 6.8 |
| | 輸出 | 10.1 | 1.9 | 0.9 | 2.8 | 4.5 |

* 단, ()는 總額에 대한 占有率 表示임.

2. 品目別 交易內譯

- '91년도 북한의 對中國 輸出品目は 石炭, 鑛石, 水産物 등 1次産品 및 鐵鋼이 主종을 이루었으며, 이들 品目は 對中國 輸出總額의 71.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鑛石 이외의 품목들은 輸出規模가 매년 減少됨으로써, 對中國 輸出減少의 결정적인 要因으로 되고 있음.
- 한편 '91年度 主要 輸入品目は 原油 등 燃料를 비롯하여 原料, 機械製品, 化學製品이 主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中國은 과거와는 달리 對北韓 原油輸出에 國際市場價格을 적용함으로써 북한의 輸入負擔을 가중시키고 있음.

'89~'91 北韓·中國間 品目別 交易內譯

(單位: 萬달러)

| 수 | | 출 | | | 수 | | 입 | | |
|------------|---------|---------|---------|------------|---------|---------|----------|--|--|
| 품 목 | 1989 | 1990 | 1991 | 품 목 | 1989 | 1990 | 1991 | | |
| 총 액 | 18,535 | 12,458 | 8,567 | 총 액 | 37,737 | 35,816 | 52,478 | | |
| 식품 및 식용동물 | 2,873 | 2,029 | 853 | 식품 및 식용동물 | 7,576 | 5,068 | 5,499 | | |
| -어류 및 갑각류 | | | (531) | -육류 및 가공제품 | | | (1,323) | | |
| -곡물 및 가공제품 | | | (143) | -곡물 및 가공제품 | (4,459) | (3,092) | (2,542) | | |
| -채소 및 과일 | | | (179) | | | | | | |
| 음료 및 담배 | 10 | 0 | 1 | 음료 및 담배 | 123 | 108 | 283 | | |
| -음 료 | | | (1) | | | | | | |
| 비식용원료 | 3,503 | 1,790 | 2,293 | 비식용원료 | 4,787 | 4,511 | 4,064 | | |
| -생고무 | | | (1) | -방직섬유스크랩 | (1,263) | (1,741) | (1,845) | | |
| -연목 및 목재 | | | (311) | | | | | | |
| -방직섬유 | | | (7) | | | | | | |
| -천연비료·광물 | | | (10) | | | | | | |
| -금속광·스크랩 | (1,219) | (1,294) | (1,808) | | | | | | |
| -기타 동식물원료 | | | (156) | | | | | | |
| 광물연료·운활유등 | 5,149 | 3,341 | 2,850 | 광물연료·운활유등 | 14,476 | 13,806 | 22,597 | | |
| -석유 및 동제품 | | | (70) | -석유 및 동제품 | (7,192) | (6,697) | (14,568) | | |
| -석탄·코크스 | (4,852) | (3,278) | (2,718) | -석탄·코크스 | (7,284) | (7,106) | (8,029) | | |
| ·연탄 | | | | ·연탄 | | | | | |
| -천연·인조가스 | | | (62) | 동·식물성 유지 | 27 | 16 | | | |
| 화학 및 관련제품 | 691 | 372 | 904 | 화학 및 관련제품 | 2,868 | 3,679 | 4,308 | | |
| -유기화학 | | | (121) | -유기화학 | | | (459) | | |
| -무기화학 | | | (46) | -무기화학 | | | (602) | | |
| -비 료 | | | (549) | -염료·안료 | | | (458) | | |
| -인조수지 | | | (176) | -향료류 | | | (786) | | |
| -기 타 | | | (12) | -화학류 | | | (524) | | |
| | | | | -인조수지 | | | (1,178) | | |

| 수 | | 출 | | 수 | | 입 | |
|-----------|---------|---------|---------|-----------|---------|---------|---------|
| 품 목 | 1989 | 1990 | 1991 | 품 목 | 1989 | 1990 | 1991 |
| 원료별제품 | 5,986 | 4,637 | 1,577 | 원료별제품 | 3,300 | 4,402 | 6,542 |
| -피혁·모피 | | | (12) | -고무제품 | (1,549) | (1,280) | (1,049) |
| -펄프·판지 | | | (4) | -펄프·판지 | | | (534) |
| -섬유사·직물 | | | (14) | -섬유사·직물 | | | (1,571) |
| -비철금속 | | (796) | (139) | -비철금속 | | | (332) |
| 광물제품 | | | | 광물제품 | | | |
| -강 철 | (2,951) | (3,476) | (1,076) | -강 철 | | | (1,053) |
| -유색금속 | (1,010) | (307) | (330) | -유색금속 | | | (1,636) |
| | | | | -금속제품 | | | (356) |
| 기계 및 운송설비 | 62 | 83 | 21 | 기계 및 운송설비 | 3,036 | 3,006 | 4,440 |
| -특수·전문기계 | | (3) | | -동력기계·설비 | | | (299) |
| -일반공업기계 | | (15) | | -특수·전문기계 | | | (1,057) |
| -전력기계 | | (3) | | -금속가공기계 | | | (182) |
| | | | | -일반공업기계 | | | (417) |
| | | | | -전기통신기계 | | | (986) |
| | | | | -전력기계 | | | (430) |
| | | | | -육로차량 | | | (861) |
| | | | | -기타운수설비 | | | (187) |
| 잡제품 | 24 | 24 | 21 | 잡제품 | 883 | 604 | 3,811 |
| -의류·부착부품 | | (1) | | -의류·부착부품 | | | (1,600) |
| -신발류 | | (1) | | -신발류 | | | (581) |
| -카메라 등 | | (1) | | -과학기기 | | | (54) |
| -기 타 | | (19) | | -카메라 등 | | | (256) |
| 기타품목 | 238 | 181 | 46 | 기타품목 | 659 | 617 | 881 |

* 자료: 중국해관통계

3. 展 望

- 지금까지의 北·中 交易은 通常的으로 5年間の 長期貿易協定을 締結하고 이에 根據하여 교환되는 每 年度別 商品交流에 관한 議定書에 따라 求償貿易, 清算決濟方式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91년 이후 中國은 北韓에 대해 兩國間 貿易을 國際價格을 기준으로 한 硬化決濟方式으로의 전환을 거듭 요구함으로써 「'91 年度 貿易協定」에서는 원칙적으로 硬化決濟方式을 적용한다는데 合意하였음.
 - 이러한 合意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직도 硬化決濟方式과 清算決濟方式이 混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北韓의 對外貿易이 안고 있는 問題點은 輸出商品의 不足, 낮은 技術水準과 조악한 品質, 輸入에 필요한 硬化의 不足 등인 바,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北·中 貿易이 '91년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으로 增加될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특히 中國은 韓·中修交 等 東北亞 情勢變化로 지금까지 北韓에 대해 베풀어 왔던 施惠的 次元의 協力關係를 實利爲主의 互惠的 協力關係로 전환할 可能性이 增加되고 있기 때문에 北·中 貿易의 增大를 제약하게 될 것으로 보임.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 分析·評價*

1992. 11

1. 外國人 投資關聯法 制定의 背景

가. 對西方 外債 累增 및 「合營法」 制定

○ 북한은 '60年代까지는 中·蘇를 비롯한 社會主義 諸國으로부터의 經濟支援과 住民消費 抑制를 통한 內部資源 動員의 極大化로 經濟開發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61년에 시작한 第1次 7個年計劃은 中·蘇 理念紛爭 激化에 따른 社會主義國家 支援 減少로 計劃期間을 3년 연장하였음에도 失敗

○ 이에 따라 6個年計劃('71~'76)에서는 西方先進國으로부터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함으로써 社會主義國家 經濟支援 減少 및 自力更生 노선의 限界를 극복하려고 試圖하였음.

— 그러나 西方借款 導入不振, 設備 管理·運用能力 不足, 第1次 石油波動('73) 등에 기인한 外債償還能力의 상실로 資本導入이 不可能

○ '84. 9에는 外債償還 負擔없이 西方의 資本·技術을 誘致하는 方

* 이 報告書는 北韓當局이 '92. 10. 5 제정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등에 대한 專門家 세미나 및 自體分析 結果를 토대로 作成한 것임.

途로서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79년)을 모델로 한 「合營法」을 制定하였음.

— 이어서 「朝鮮國際合營總會社」設立(’86년), 政務院內 合營工業部 新設 등 外資誘致 노력을 추가

나. 合營實績 不振 및 經濟沈滯의 加速化

○ 合營法에도 불구하고 政治·社會的 폐쇄성, 社會間接資本施設의 낙후, 內需市場의 협소, 外資誘致관련 法·制度 미비 등으로 合營誘致 實績은 不振

— ’91년말 현재 朝總聯 商工人들이 主軸(68건)을 이루는 100여건의 合營契約이 締結되었으며, 總 投資規模는 1億 5千萬달러 정도에 불과

○ 특히 ’89년이후 東歐 및 蘇聯에서의 社會主義體制 崩壞로 主要 海外市場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貿易이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經濟沈滯가 加速化되었음.

— ’91년도 貿易總額은 27.2億달러로 前年비 57% 減少되었으며, 經濟成長率은 -5.2%로 前年度 (-3.7%)보다 더욱 沈滯

다. 西方資本 誘致를 위한 法·制度的 與件造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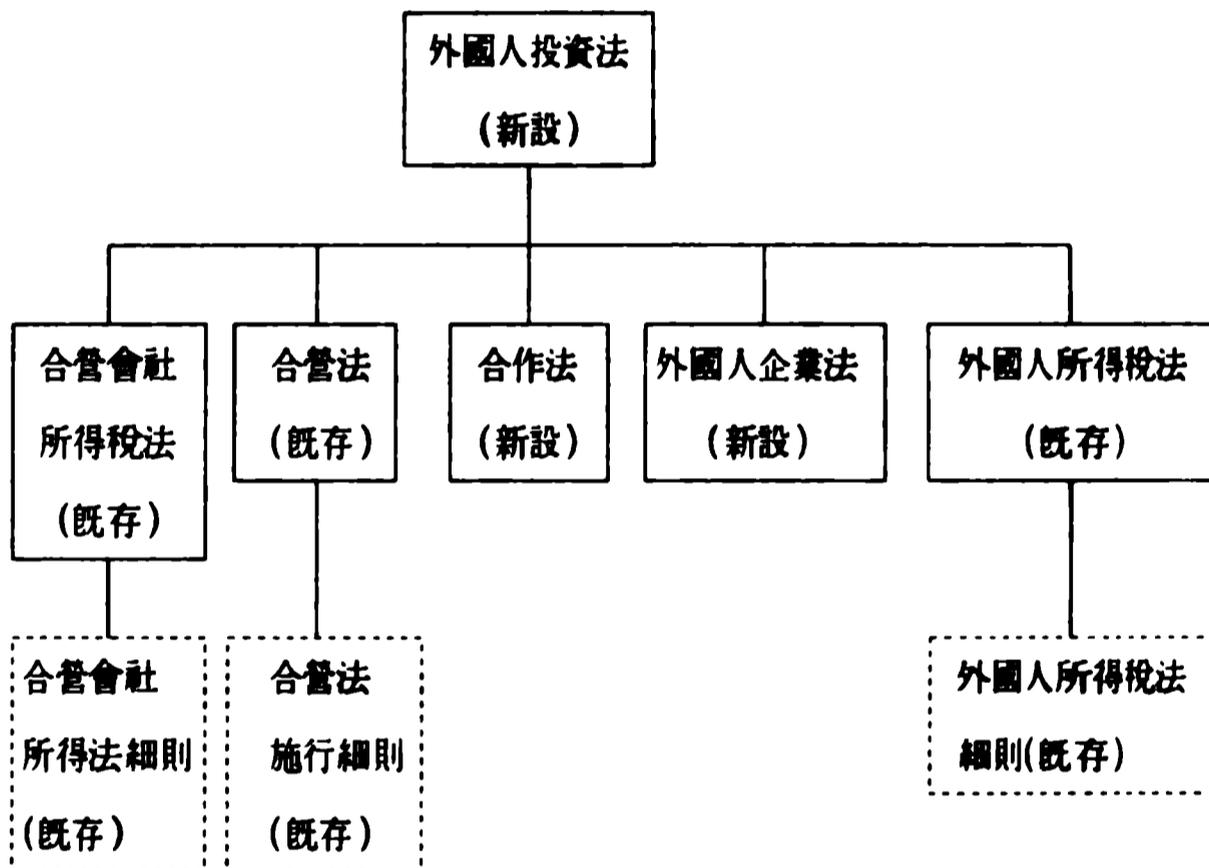
○ 國際的 經濟孤立과 이로 인한 經濟沈滯를 벗어나기 위해 經濟開放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91년부터 對外政策의 轉換을 시작하였음.

— ’91. 9 유엔加入, ’91. 12 羅津·先峰 自由經濟貿易地帶 設置 등

○ 또한 法·制度的인 投資與件 改善을 통해 남한 및 서방제국으로부터의 資本·技術導入을 위해 外國人投資 관련 3個法을 제정하였음.

2. 外國人 投資關聯法 體系

○ 북한의 外國人 投資關聯法은 이번에 신설한 「外國人投資法」을 基本法으로 하여 「合營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合營會社所得稅法」, 「外國人所得稅法」 등이 부수법으로 되어 있음.



○ 外國人 投資關聯法 制定過程을 보면

- 北韓은 '84. 9 外國人 投資關聯法으로서는 최초로 全文 5章 26條의 「合營法」(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第10號)을 制定하였음.
- '85. 3에는 全文 10章 71條로 된 「合營法施行細則」(政務院 決定 第14號)을 제정

- 다음해인 '85. 3 全文 8條의 「合營會社所得稅法」(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決定 第12號)과 全文 10條의 「外國人所得稅法」(同 決定 第13號)을 制定하였음.
- 이어서 '85. 5에는 全文 11條의 「合營會社所得稅法 細則」(政務院 決定 第22號)과 全文 14條의 「外國人所得稅法 細則」(政務院 決定 第23號)을 制定
- '92. 10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가 「外國人投資法」(全文 22條)과 「合作法」(全文 21條), 「外國人企業法」(全文 4章 31條)을 採擇함으로써 外國人 投資와 관련된 法規는 總 6個의 法과 3個의 細則으로 정비되었음.
- 이번에 新設한 3個法중 「合作法」과 「外國人企業法」은 「合營法」과 마찬가지로 施行細則이 制定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現在까지는 미비된 상태임.
- ※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10. 5 제정한 外國人 投資關聯法 외에도 현재 「自由經濟貿易地帶法」, 「外換法」, 「銀行法」, 「租稅法」 등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外國人 投資關聯法 內容 分析

가. 「外國人投資法」의 主要 內容과 問題點

(1) 主要 內容

〈制定目的과 概念〉

- 外國人 投資企業의 創設·運營에 관한 一般原則과 秩序를 包括적으로 規制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음.
- 外國人 投資企業은 「共和國領域」안에 設立한 合作企業, 合營企業, 外國人企業을 말함.
 - 合營企業은 兩側이 共同으로 投資·運營하며 投資持分에 따라 利潤을 分配하는 典型的인 조인트-벤처임.
 - 合作企業은 兩側이 共同으로 投資하고 北韓側이 運營하며, 投資의 償還 또는 利潤配分은 契約條件에 따라 하는 企業임.
 - 外國人企業은 外國投資家가 單獨으로 投資·經營하는 企業임.

〈投資地域 및 投資의 當事者〉

- 合作企業과 合營企業은 北韓 全地域에 설립할 수 있으나 外國人企業은 自由經濟貿易地帶안에서만 創設·運營할 수 있음.
- 外國의 機關·會社·企業體·個人 및 其他 經濟組織은 물론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투자가 가능함.

〈投資對象 및 獎勵部門〉

- 工業, 農業, 建設, 運輸, 遞信, 科學, 技術, 觀光, 流通, 金融을 비롯한 全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특히 尖端技術部門과 競爭力이 높은 製品을 生産하는 部門, 資源開發 및 下部構造建設部門, 科學研究 및 技術開發部門에 대한 投資를 장려하고 있음.

- 다음해인 '85. 3 全文 8條의 「合營會社所得稅法」(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第12號)과 全文 10條의 「外國人所得稅法」(同 決定 第13號)을 制定하였음.

· 이어서 '85. 5에는 全文 11條의 「合營會社所得稅法 細則」(政務院 決定 第22號)과 全文 14條의 「外國人所得稅法 細則」(政務院 決定 第23號)을 制定

○ '92. 10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가 「外國人投資法」(全文 22條)과 「合作法」(全文 21條), 「外國人企業法」(全文 4章 31條)을 採擇함으로써 外國人 投資와 관련된 法規는 總 6個의 法과 3個의 細則으로 정비되었음.

○ 이번에 新設한 3個法중 「合作法」과 「外國人企業法」은 「合營法」과 마찬가지로 施行細則이 制定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現在까지는 미비된 상태임.

※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10. 5 제정한 外國人 投資關聯法 외에도 현재 「自由經濟貿易地帶法」, 「外換法」, 「銀行法」, 「租稅法」 등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外國人 投資關聯法 內容 分析

가. 「外國人投資法」의 主要 內容과 問題點

(1) 主要 內容

〈制定目的과 概念〉

- 外國人 投資企業의 創設·運營에 관한 一般原則과 秩序를 包括적으로 規制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음.
- 外國人 投資企業은 「共和國領域」안에 設立한 合作企業, 合營企業, 外國人企業을 말함.
 - 合營企業은 兩側이 共同으로 投資·運營하며 投資持分에 따라 利潤을 分配하는 典型的인 조인트-벤처임.
 - 合作企業은 兩側이 共同으로 投資하고 北韓側이 運營하며, 投資의 償還 또는 利潤配分은 契約條件에 따라 하는 企業임.
 - 外國人企業은 外國投資家가 單獨으로 投資·經營하는 企業임.

< 投資地域 및 投資의 當事者 >

- 合作企業과 合營企業은 北韓 全地域에 설립할 수 있으나 外國人企業은 自由經濟貿易地帶안에서만 創設·運營할 수 있음.
- 外國의 機關·會社·企業體·個人 및 其他 經濟組織은 물론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투자가 가능함.

< 投資對象 및 獎勵部門 >

- 工業, 農業, 建設, 運輸, 通信, 科學, 技術, 觀光, 流通, 金融을 비롯한 全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특히 尖端技術部門과 競爭力이 높은 製品을 生産하는 部門, 資源開發 및 下部構造建設部門, 科學研究 및 技術開發部門에 대한 投資를 장려하고 있음.

- 이 部門 投資에 대해서는 税金, 土地使用條件, 銀行貸付 등에
서 優待措置

< 自由經濟貿易地帶에 대한 投資優待 >

- 自由經濟貿易地帶內의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서는 特惠的인
經營活動條件을 保障하고 있음.

- 특별히 정한 品目を 제외한 輸出入 物資에 대한 關稅 免除
- 利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所得稅 免除, 그 다음 2
년까지 所得稅를 50% 範圍內에서 減免
- 同 地域內 外國投資家에 대해서는 輸出入 節次에도 簡素化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投資 手段 >

- 外國投資家は 貨幣, 現物, 工業所有權, 技術秘訣 등 財産과 財
産權으로 投資할 수 있으며, 投資價値는 國際市場價格에 基礎
한 當事者間 合意로 決定함.

※ 中國의 경우 第3者에게 評價依賴 可能

< 土地使用 및 勞務管理 >

- 필요한 土地는 最高 50년까지 임대해주고 貸貸期間中 該當機
關承認下에 讓渡 및 相續을 許容하고 있음.
- 外國人 投資企業의 人力採用은 계약상 정해진 管理員, 특수한
職種의 技能工을 제외하고는 北韓住民을 採用하도록 하고 있
음.

- 北韓人の 雇傭 및 解雇는 해당 勞動機關과의 契約에 따라서 할 수 있음.

〈外國人 投資에 대한 保護〉

- 外國人 投資財産은 原則적으로 國有化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補償을 함.
- 合法的 利潤과 其他收入, 企業을 清算하고 남은 資金은 北韓의 外貨管理法에 따라 國外로 送金할 수 있음.

〈紛爭의 處理〉

- 紛爭發生時 協議의 方法으로 解決하되 協議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北韓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審議하거나 雙方 合意에 따라 第3國 仲裁機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음.

2) 問題点

- 「外國人投資法」은 北韓의 合營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등 外國人 投資와 관련한 각종 부수법을 규정하기 위한 基本法의 性格을 가지고 있으나 社會主義 國家의 法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선언성(정책방향), 추상성 등으로 인해 내용이 不明確함, 勤勞者의 雇傭이나 解雇 및 企業經營에 대한 北韓當局의 干涉과 排他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임.

ㄱ. 既存 「合營法」의 主要 內容과 問題點

(1) 主要 內容

〈合營의 基本〉

- 合營當事者는 北韓의 會社·企業所와 外國의 會社·企業所·個人으로 함.
 - － 在日同胞 商工人을 포함한 海外同胞도 合營當事者로 규정
- 合營對象은 工業, 建設, 運輸, 科學技術, 觀光 등 여러 분야로 되어 있어 사실상 制限이 없음.

〈合營會社의 組織 및 性格〉

- 設立節次는 北韓 對外經濟事業部의 承認을 받은 北韓側 合營當事者가 外國側 合營當事者와 合營契約을 締結한 후 對外經濟事業部의 承認을 얻어 해당 道 人民委員會에 신고함으로써 설립됨.
- 合營會社에 대한 出資額과 持分은 當事者間 合意에 의하며, 出資目的物은 貨幣, 建物, 原料, 機械設備, 發明權, 技術文獻, 土地등으로 出資할 수 있음.
- 合營會社는 有限責任會社와 같은 法的 .性格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出資持分을 第3者에게 讓渡 가능

〈理事會 및 經營活動〉

- 合營會社는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두며, 議決方式은 全원일치제로 하고 있음.

- 생산에 필요한 物資는 北韓産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發明權, 技術文獻, 技術秘訣 및 북한에서 購入할 수 없는 物資는 輸入도 가능하고 생산된 製品은 輸出을 기본으로 함.
 - 북한의 機關, 企業所는 合營會社의 物資購入을 우선적으로 保障
 - 北韓産 물자의 구입이나 생산품을 북한에 販賣할 경우는 해당 貿易機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價格은 國際市場價格을 기준
- 용수, 電氣, 電話는 사용료를 물어야 하며, 合營會社는 財産에 대해서는 북한의 保險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勞務管理 >

- 合營會社 종업원의 雇傭 및 解雇는 북한 勞動行政機關을 통해서 하며, 勞動時間, 休息, 勞動保護는 북한 勞動法規에 따라야 함.
- 合營會社 종업원은 북한의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度를 적용함.
 - 合營會社와 종업원은 勞動補酬의 7%와 1%를 각각 社會保險料로 납입

< 外貨管理 및 送金 >

- 合營會社는 北韓 貿易銀行 또는 貿易銀行이 지정하는 은행에 원화計座와 外貨計座를 開設하고 外貨의 輸入, 支出은 外貨計座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음.

- 經營決算은 북한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利益配當金은 合營當事者의 요구에 따라 送金을 保障함.
- 合營會社에 일하는 外國人은 勞賃額의 60%까지 海外送金 可能

<決算과 分配>

- 決算年度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年間 總 수입에서 原價補償, 所得稅, 豫備基金(法定準備金)등을 공제한 후 出資持分에 따라 分配함.
- 豫備基金은 登錄資金의 25%가 될 때까지 매년 純所得중 5%씩 적립

<紛爭解決>

- 모든 紛爭은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協議에 의해 解決할 수 없는 紛爭은 북한의 裁判機關 또는 貿易仲裁機關에서 審議 해결함.
- 裁判은 북한의 民事訴訟節次에 따름.
- 合營當事者의 合意에 따라 第3國의 貿易仲裁機關에 紛爭問題를 제기할 수 있음.

(2) 問題點

- 「合營法」에 의할 경우 南韓의 企業이나 個人은 事實상 合營當事者로 될 수 없음.
- ※ 中國의 關聯法은 「臺灣同胞」를 合營當事者로 명시하고, 이를 장려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 合營對象에서 資源開發과 같은 讓許事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 중국의 경우 「中外合作 沿岸石油資源探查開發 條例」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 合營會社 設立時 承認申請節次, 處理期間 등 節次的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出資目的物(주로 북한이 출자하는 土地·건물 등)의 評價基準이 불확실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 投資保障에 있어서도 出資持分에 대한 관련法規의 미비로 債權的 수준의 保護에 불과함.
- 理事會의 意思決定方式이 전원일치제로 되어 있어서 外國側 合營당사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음.
- 北韓產 原資材 구입시 國際價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북한 貿易機關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原資材의 安定的인 확보가 어려움.
- 종업원의 고용이나 解雇 등에 기업의 自律權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勞動組合과 北韓 職業同盟과의 關係 등 관련 規定에 扞觸이 있음.
- 合營會社 해산시 投資回收分에 대한 送金保障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 「合作法」의 主要 內容과 問題點

(1) 主要 內容

〈合作의 對象〉

- 輸出品 生産 및 先進技術이 導入된 工業部門을 기본으로 하면서 觀光·奉仕(서비스)部門도 可能함.
 - 특히 現代적 設備 및 尖端技術部門과 競爭力이 높은 製品을 生産하는 부문에 대한 投資를 장려

〈合作企業 設立節次 및 運營〉

- 합작을 하려는 機關·企業所·團體는 해당 上級機關과 협의하고 外國投資家와 合作契約을 締結한 후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에 合作신고서를 제출함.
 - 對外經濟機關은 申請書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承認 또는 否決을 결정
- 合作 承認後 30일 이내에 해당 企業所 所在地의 道·直轄市 行政經濟委員會에 등록함.
- 契約에 따라 外國投資家側의 技術者를 받아 쓰거나 政務院 對外經濟機關과의 협의하에 第3國의 技術者 채용도 可能함.
- 國家의 承認下에 生産·經營에 필요한 物資輸入 및 生産製品의 輸出이 可能함.

<投資에 대한 利潤, 償還, 送金>

- 外國投資家の 投資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合作製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도 가능함.
- 생산된 제품과 수입은 合作契約에 따라 償還 또는 分配義務를 이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함.
- 外國投資家が 合作企業에서 얻은 利潤, 其他 輸入은 북한 外貨管理 법규에 따라 國外로 送金이 가능함.

<決算 및 稅金>

- 決算은 月別·分期別·年別로 하고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 決算書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財政銀行機關이 監督함.
- 合作企業은 契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

<合作企業의 終了, 清算 및 紛爭解決>

- 合作은 合作期間이 끝나면 종료되며, 合作期間 終了 및 期限前 해산의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債權·債務關係를 청산하며 등록을 취소함.
 - 합작을 계속할 경우, 기간종료 6개월 전에 政務院 對外經濟 機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紛爭事件은 북한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審議·解決함.

(2) 問題點

- 北韓式 합작의 개념상 外國投資家は 經營에 介入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危險負擔이 큼.
- 紛爭解決 방식중 基本법인 「外國人投資法」에는 분쟁발생시 합의에 따라 제3국의 仲裁機關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合作法」에는 北韓內 裁判機關 또는 절차에만 의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合作對象의 업종, 장려사업의 대상업종, 이윤분배시 납부하게 되어 있는 稅金의 種類 등에 대한 규정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施行細則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북한식 合作概念은 外國投資家が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利潤分配나 償還을 生産製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投資家側이 그 판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함.
 - 따라서 外國投資家側은 반드시 製品의 판로를 확보하고 合作契約을 체결해야 할 것임.
- 合作法에서는 北韓當局의 承認下에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 두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음.
 - 첫째, 契約不履行이 북한측에 있다는 사실의 인정을 북한당국으로 부터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임.
 - 둘째, 北韓當局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紛爭解決方式이

북한의 裁判機關이나 仲裁機關의 判定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裁判이나 仲裁判定을 기대할 수 없음.

○ 社會主義 國家의 경우, 합작이나 合營事業에 當局의 干涉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나 「合作法」의 규정(第7條)과 같이 매월 經營決算을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임.

— 물론 同法에는 非常設的 共同協議機構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기구를 통하여 外國投資家가 經營에 介入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합작당사자의 契約義務 不履行에 따른 企業解散은 國際法の 慣例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合作法」에는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의 承認이 있어야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外國投資家에게 불리할 수 있음.

라. 「外國人企業法」의 主要 內容과 問題點

(1) 主要 內容

〈「外國人企業法」의 基本〉

○ 外國人企業은 外國의 法人과 個人이 企業設立에 필요한 資本의 全部를 投資하는 企業으로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 創設·運營하는 것을 許容함.

○ 投資對象分野는 電子, 自動車, 機械製作, 被服加工 및 日用品工業과 運輸, 奉仕(서비스) 등으로 함.

— 나라의 安定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落後한 기업의 創設은 不許

○ 국가는 外國投資家가 투자한 資本과 企業運營에서 얻은 所得을 법적으로 보호함.

○ 北韓 領域 밖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의 독자적인 企業創設과 운영이 가능함.

< 企業의 創設 >

○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은 申請書를 接受日로부터 80일내에 承認與否를 결정하여야 함.

○ 企業創設 승인후 30일내에 企業所在地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등록하고, 그후 20일내에 기업소재지의 財政機關에 稅務登錄을 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한내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 該當機關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 연기 가능

< 經營活動 >

○ 經營活動에 필요한 物資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生産製品의 輸出과 북한내에서의 販賣도 가능함.

— 북한 原料·資材·設備의 구입이나 生産製品의 北韓內 販賣는 북한 貿易機關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企業所在地 勞動機關과의 契約에 따라 北韓人力을 채용해야

하며, 해고할 수도 있으나 外國技術者·技能工의 採用은 政務院 對外經濟機關과 合意해야 함.

- 外國人企業의 종업원들은 職業同盟組職을 結成할 수 있고 外國인 기업은 職業同盟組職의 活動조건을 保障해 주어야 함.
- 企業運營에서 얻은 合法的 利潤은 再投資할 수 있고 關係法規에 따라 海外에 送金도 할 수 있음.
- 外國인기업은 保險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北韓의 保險에 가입해야 하며, 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하고 經營에 필요한 물자나 生産製品의 輸出入은 非關稅로 함.

〈企業의 解散과 紛爭解決〉

- 이 法을 違反할 경우 그 正상에 따라 企業을 中止 또는 解散시키거나 罰金을 부과할 수 있음.
- 기업이 解散되거나 破産될 경우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신고해야 하며, 財産은 清算수속이 끝나기 전에 처리할 수 없음.
- 紛爭事件은 北韓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該當節次에 따라 審議·解決함.

(2) 問題點

- 外國企業은 自由經濟貿易地帶內로 한정하고 있으나 短期的으로 볼 때 이 지역의 投資與件은 매우 脆弱한 地域임.
－ 常住 人口 부족, 社會間接資本施設 미비 등

- 나라의 安定에 지장을 주거나 技術的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創設할 수 없으며 人民經濟發展에 障礙를 주는 行爲를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判斷基準도 모호함.
- 外國人企業은 기업을 등록한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生産 및 輸出計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도 北韓 保險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外國人企業은 기업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國際保險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고용의 硬直性和 職業同盟組職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外國人企業은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을 비롯한 該當機關은 외국인기업이 이 法을 違反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中止 또는 해산시키거나 罰金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惡用할 여지가 있음.
- 紛爭事件 역시 「合作法」과 마찬가지로 北韓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外國人投資法」과의 乖離로 인해 北韓當局의 법적인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4. 綜合 評價 및 展望

가. 肯定的인 面

- 북한이 合營法 發表以後 8년만에 外國人 投資와 관련한 법규

를 整備한 것은 제한적이긴 하나 對內外 情勢變化에 따라 북한이 對外經濟開放의 政策轉換 意志를 나타냈다는데 意義가 있음.

○ 또한 法·制度的 裝置의 마련을 통해 외국인의 對北 投資에 대한 不安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外國人 投資를 장려한다는 原則을 채택한 것은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음.

— 自由經濟貿易地帶로 한정하고는 있으나 100% 外國人 投資企業을 許容

— 土地의 50년 임대, 稅制上 惠澤, 外國人 投資財產의 國有化 禁止 규정

— 利潤의 國外 送金許容 및 經營秘密保障 규정 등

○ 특히 合營法('84년 발표)에서는 南韓企業이나 個人을 투자 당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표된 법규들에서는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同胞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南韓企業이나 個人에 대해서도 對北 投資 문호를 사실상 개방한 점은 매우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음.

나. 否定的인 面

○ 그러나 북한의 外國人 投資關聯 법규를 中國과 비교할 경우 아직도 상대적으로 미비점이 많음.

※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법규외에도 涉外經濟契約法, 特許法, 商標法, 外國人投資 獎勵規程, 기타 租稅에 관한 規程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次元의 법규외에도 地方

政府次元의 特別法들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음.

- 또한 外國人 投資機關法 상호간에도 內容上 일부 모순점이 있으며, 법규의 추상성으로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많아 既存 合營法이나 동施行細則, 合營會社 所得稅法 및 同細則, 外國人所得稅法 및 同細則 등의 개정은 물론 필요한 法令의 追加 制定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북한에 投資를 하려고 할 경우, 모든 조건들은 당사자들간의 契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投資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를 生産製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投資 위험을 外國投資家가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 종업원 採用의 배타성과 北韓產 原資材 우선 使用原則, 北韓 國內保險加入 規程 등 經營活動에 대한 北韓當局의 지나친 干涉을 피하기 어렵고,
 - 분쟁발생시 북한의 裁判機關이나 仲裁機關에 의해 解決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며,
 - 法의 적용이나 解釋에 있어서도 北韓側의 자의성이 介入할 여지가 많은 점 등임.

다. 展 望

- 북한이 外國人 投資關聯 법규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法·制度的 側面에서의 投資與件은 상당히 改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政治·社會的 硬直性이나 社會間接資本施設의 落後 등으로

인하여 西方企業의 對北投資가 短期間內에 增大될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특히 西方資本誘致의 競爭國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비교할
때 政治·社會的 環境이나 資源·內需市場 규모 등에서 중국
이 유리한 측면이 많음으로 外國 投資家는 북한보다 오히려
중국을 投資對象國으로 選擇할 可能性이 높음.

○ 결국 外國人 投資關聯法 정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와 마찬가지로 海外同胞들의 資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
황에 처함으로써 북한은 對美·日 關係改善 및 南北經濟交流
協力擴大를 위해 對外政策의 本質적인 轉換을 적극 摸索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對 南 動 向

「南朝鮮人民의 金正日 欽慕」 報道內容 分析

1992. 1

1. 北韓 報道實態

- 北韓은 1987년부터 金父子 世襲體制 強化策의 一環으로 '南朝鮮의 人民'들도 金正日을 欽慕·尊敬하고 있다는 날조된 記事를 간헐적으로 報道하여 왔는바,
 - 最近들어서는 그 頻度가 더욱 늘어나는 傾向을 보이고 있음.
- 그 特徵을 살펴보면
 - 이전에는 주로 對南宣傳煽動用인 平壤放送을 통해 報道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對內言論媒體인 中央放送 및 勞動新聞·民主朝鮮 등을 통해 集中報道함으로써 住民의 思想教養에 利用하고 있으며
 - 金正日을 尊敬·欽慕한다는 '南朝鮮人民'들도 종전과는 달리 知識人, 勞動者, 藝術人, 學生 등 各界各層을 망라하고 있는 점임.
- 또한 報道內容面에서는 金正日을 '主席의 後繼者로 모신 것은 우리 民族의 大幸運'이라고 말한다는 점을 重點 報道, 南韓社會에서도 金正日의 權力承繼를 既定事實로 認定하고 있는 것처럼 北韓住民들에게 宣傳하고 있으며
 - 金正日을 「祖國統一의 嚮導星」, 「民族의 領導者」, 「自主時代의 嚮導星」 등 統一을 이룰 수 있는 民族의 指導者로서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탁월한 능력을 지닌 全知全能한 人物로 浮刻시키고 있음.

- 이처럼 北韓이 '南朝鮮人民'의 이름을 빌려 날조된 記事를 報道하고 各種 象徵造作에 血眼이 되고 있는 것은 金正日이 '全朝鮮民族의 指導者'임을 北韓住民들에게 심어 주어 權力世襲의 正當性을 浮刻시키고, 나아가 그 承繼時期를 앞당기려는데 있는 것으로 分析됨.

2. 主要 報道事例

- 부산에 사는 국민학교의 한 교원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노래 <그리운 향도성>을 지어 학생들에게 보급하였다.

“민족의 진로를 주체의 등불로 밝혀주시고
겨레의 운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민족의 위대한 향도성
그분은 겨레의 자애로운 스승
그림습니다.
꿈결에도 달려가 안겨보는
김정일지도자 선생님의 위대한 품
분단민족의 고통과 설움을 두고
이 밤도 잠못이루시는 분
7천만 겨레의 앞길에
통일의 청사진 펼쳐주시는 분
그분은 통일의 빛나는 향도성
그분은 배달민족의 행복한 미래의 수호자

김정일지도자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통일의 단상에 우러러 모실

김정일지도자 선생님의 영명한

그모습.” (로동신문, '91. 11. 30)

○ 쉐라톤 호텔의 한 직원은

“북의 손님이 오기 전날 밤에 나는 참 회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우에 밝은 태양과 큰 별이 떠서 밝은 빛을 뿌리더니 금시에 이 넓은 서울 장안이 환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더니 온 서울시가 환호성으로 들끓고 만백성이 그 태양과 별을 향해 두손을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겠지요. 그래 나도 다른이들처럼 금빛찬란한 그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더니 글썽 내 손에 금빛물이 들었더라 말입니다.”

“순간 나는 바로 저 태양, 저 별이 김일성장군님, 김정일지도자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뵙고야겠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려니 어디 다리가 놀려져야지요. 꿈꿈 갑자르다가 깨어나니 글썽 꿈이더라 말입니다. 야 얼마나 아쉽던지.”라고 말하였다.

(로동신문, '91. 12. 22)

○ 진압이 지나보이는 한 로인은

우리 기자들이 서울의 롯데월드민속관을 참관하러 갔을 때 우리들의 가슴우에 정중히 모셔져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회장을 감격어린 눈매로 한참이나 우러르고는 “김일성주석의 초상회장

과 함께 김정일 선생님의 초상회장도 모시고 오지, 이 늙은이가 뵙게 말이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힘주어 우리 기자를 향해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 잘 가시오! 통일된 날 다시 만납시다. 위대한 장군님과 지도자 선생님을 통일의 광장에 어서 빨리 모시고 싶은 것이 이 늙은이의 평생소원이요.”

(로동신문, '91. 12. 22)

○ 충남 청양군의 한 주민은

“우리 나라 역사가 유구하여 반만년이라 하지만 김정일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처럼 그렇게 강성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민주조선, '91. 12. 22)

○ 서울의 운아무개 노동자는

“나는 고향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북 민중 모두에게 밝은 웃음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은 다름아닌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민주조선, '91. 12. 29)

○ 부산의 한 교육자는

“민족의 넋을 살리고 민족해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대가이신 김정일 선생님의 저서를 깊이 연구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김정일 선생님이시야말로 민족주체이념의 투철하신 사상이론의 영재이시고 역사의 방향타를 잡고 그

진로를 밝혀주시는 시대의 향도성이다"라고 말하였다.

(중방, '92. 1. 13)

○ 강아무개 예술인은

“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 선생님께서 마련해 주신 왕재산 경음악단의 공연은 정말 세계 일류급이다. 보천보 경음악단이 이남에 와서 공연을 하면 이남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랄 것이다” “빨리 통일이 되어 이남 예술인들도 존경하는 김정일 선생님의 영도를 받으며 예술다운 예술을 해보면 원이 없겠다”라고 말하였다.

(중방, '92. 1. 22)

別 添

「南朝鮮人民 金正日 欽慕」 報道 內容

| 구 분 | 보 도 내 용 | 출 처 |
|----------------|--|---------------------|
| 전남대학교 교수 | <p>○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지위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부상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고 탁월한 영도력과 고매한 덕성, 끝없는 친화력을 지니신 김정일 선생님을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모심으로해서 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이 계승 완성되어 민족의 밝은 앞길의 대가 이어지고 융성 번영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p> <p>○ 우리 모두는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향도를 따라 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영원한 융성 번영과 행복한 미래가 기약되고 있는 것이다.</p> | 중방 '91. 12. 3 |
| 마산에 사는 한 주민 | <p>○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이 오늘은 또 인류가 우러르는 김정일 선생님을 영명한 지도자로 받들어 모시었으니 나라의 앞길은 얼마나 창창한가”라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를 안고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서 용맹 떨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p> | 로동신문 '91. 12. 16 |

| 구 분 | 보 도 내 용 | 출 처 |
|--------------|---|-----------------------------|
| 쉐라톤 호텔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의 손님이 오기 전날밤에 나는 참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우에 밝은 태양과 큰 별이 떠서 밝은 빛을 뿌리더니 금시에 이 넓은 서울 장안이 환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순간 나는 바로 저태양, 저별이 김일성장군님,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려니 어디 다리가 놀려져야지요. | <p>로동신문 '91. 12. 22</p> |
| 노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자들이 서울의 롯데월드민속관을 참관하러 갔을 때 있던 일이다. 진감이 지나보이는 한로인이 우리 기자들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우리들의 가슴위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 휘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었다. ○ 로인은 감격어린 눈매로 한참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휘장과 함께 김정일 선생님의 초상 휘장도 모시고 오지, 이 늙은이가 뵈게 말아요”라고 말하였다. ○ 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뵈게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영상을 함께 뵈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것이었다. | <p>로동신문 '91. 12. 22</p> |

| 구 분 | 보 도 내 용 | 출 처 |
|---------------------------------|---|-----------------------------|
| <p>서울 서대문 구 김아무개 주민</p> | <p>○ 지난 6월중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사진에 접하게 된 주민은 “이분이 바로 우리 민중이 오매불망 뵈고 싶어하는 민족의 향도성이신 김정일지도자 선생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p> <p>○ 김정일 선생님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발전 풍부화시키고 그것을 이북의 현실에 구현하여 민중의 락원을 세워주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고 경도예술의 천재이시다... 김정일 선생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받들어 모신것은 7천만 겨레의 자랑이고 대행운이다.</p> | <p>민조조선 '91. 12. 22</p> |
| <p>충남 청양군 주민</p> | <p>○ 동료들에게 “김정일선생님은 우리 민중이 높이 모시고 따라야 할 위대한 경도자이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p> <p>○ 우리나라 력사가 유구하여 반만년이라 하지만 김정일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처럼 그렇게 강성해 본 적은 없었다.</p> | <p>민주조선 '91. 12. 22</p> |
| <p>강아무개 학생</p> | <p>○ 위대한 태양, 찬란한 향도성을 우러러 따르는 민심동향은 막을 수 없다.</p> <p>○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께 충성을 다할 때 나라의 자주통일이 실현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p> | <p>민주조선 '91. 12. 22</p> |

| 구 분 | 보 도 내 용 | 출 처 |
|------------------|---|---------------------|
| | <p>○ 그러자 옆에 앉았던 박아무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우리는 해와 별이 함께 빛나는 영광된 나라의 청년들이다. 모두다 통일구국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을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를 옹위하는 위성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을 호소한다”라고 웨쳐 동료들을 한 없이 격동시켰다 한다.</p> | |
| 부산의 한 지식인 | <p>○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출판물을 읽고 나서 걱정을 억제할 수 없어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에게 “김정일 선생님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슬기,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령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라고 말하였다.</p> <p>○ 그는 “김정일 선생님의 품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 따사로운 품”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그이의 품에 안기기 위해 곳곳이 살아가자”고 힘주어 말하였다.</p> | 민주조선 '91. 12. 22 |
| 외국에 다녀온 부산의 한 교수 | <p>○ 해외에 나가 여러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니 여러가지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꼭 말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위대한 민족임을 더욱 새롭게 느꼈다는 것이다.</p> | 민주조선 '91. 12. 29 |

| 구 분 | 보 도 내 용 | 출 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이번에 가는 곳 마다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을 자주시대의 향도성으로 우러르며 그분 에 대한 흠모의 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 김정일 선생님을 령도자로 모신 우리 민족보다 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 는가 | |
| <p>고려대학교 최아무개 학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은 민족주체리념과 민중 봉사 신념이 투철하시고 정열과 투지, 신념이 뛰 어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 절세의 영걸이신 김정일지도자 선생님을 김일성 주석께서 개척하신 자주 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에 대가 이어 졌다. ○ 참으로 그분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대행운이며 무상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 <p>민주조선 '91. 12. 29</p> |
| <p>서울의 윤아무개 노동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고향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 야기를 통해 이북 민중 모두에게 밝은 웃음과 기쁨을 안겨 주시는 분은 다름아닌 친애하는 김 정일 선생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 이 땅에서 천대받고 가난에 우는 우리 백성들도 그분의 사랑의 넓은 품에 안겨야 자유롭고 행복 한 삶을 누릴 수 있다. | <p>민주조선 '91. 12. 29</p> |

| 구 분 | 보 도 내 용 | 출 처 |
|---------------------|--|------------------|
| 부산시 한 교육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넋을 살리고 민족해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대가이신 김정일 선생님의 저서를 깊이 연구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 ○ 김정일 선생님이시야말로 민족주체이념이 부철하신 사상이론의 영재이시고 역사의 방향타를 잡고 그 진로를 밝혀주시는 시대의 향도성이다. | 중방 '92. 1. 13 |
| 서울의 한 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은 주체사상의 보물고물 풍부히 하신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다. | 중방 '92. 1. 13 |
| 강아무개 예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 선생님께서 마련해 주신 왕재산경음악단의 공연은 정말 세계 일류급이다. 보천보경음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이 이남에 와서 공연을 하면 이남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랄 것이다. ○ 빨리 통일이 되어 이남 예술인들도 존경하는 김정일 선생님의 영도를 받으며 예술다운 예술을 해보면 원이 없겠다. | 중방 '92. 1. 22 |
| 광주의 박아무개 대학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선생님의 탄생은 주체위업의 확고한 계승과 그 종국적 승리를 알리는 역사적 경사이며 인류 이상사회의 새아침을 알리는 찬란한 해돋이이다. ○ 조국광복의 총성이 울리던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김정일 선생님께서는 일찍부터 부모님들의 교양을 받으시며 애국의 큰 뜻을 키우셨으며 준엄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비범한 예지와 슬기를 꽃피우시었다. ○ 이남 땅에도 향도의 별빛이 찬연히 비취질 그날은 멀지 않아 반드시 온다. | 중방 '92. 1. 25 |

「南北基本合意書」發效

1992. 2

1. 概要

- 南北 쌍방은 2. 18~21間 平壤에서 開催된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사이에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및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의 發效文件을 交換하고 「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署名·交換함으로써 同 3個 文件을 발효시켰음. (※ 發效文件 別첨)
- 한편 쌍방은 第2日會議에서 第7次 會談日字 및 各 分科委 運營問題 등에 合意하고 「共同發表文」을 採擇하였음.

〈「共同發表文」 要旨〉

- (1) 南北分科委員會(3個) 委員長 및 委員名單을 3. 6 相互 通報
- (2)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1次 會議을 3. 9 開催 (평화의 집)
- (3) 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1次 會議을 3. 13 開催 (통일각)
- (4)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1次 會議을 3. 18 開催 (평화의 집)
- (5) 南北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問題 協議는 2. 19 第1次 代表接觸에 이어 2. 27 第2次 代表接觸 (통일각)
- (6) 第7次 南北高位級會談은 5. 5.~5. 8間 서울에서 開催

2. 分析

- 南北韓은 이번에 「3個 合意書」를 發效시킴으로써
 - 47年間 持續되어온 反目과 不信을 解消하고 平和共存을 이룩할 수 있는 基本土臺를 마련하였으며
 - 統一로 향하는 「南北聯合」의 前段階인 「和解와 協力時代」에 進入하게 되었음.
- 쌍방은 「3個 合意書」의 發效에 따라 앞으로
 - 1個月 以內(3. 19 以前)에 政治, 軍事, 交流·協力 등 3個 分科 委員會를 開催하고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를 構成하며
 - 3個月 以內(5. 19 以前)에 南北連絡事務所(板門店), 南北軍事共同委,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 등 部門別 共同委를 構成·運轉하게 됨.
- 그러나 우리側이 第1日會議(2. 19)後 進行된 代表接觸과 第2日會議에서
 - 分科委 構成前이라도 70歲 以上 高齡者의 故鄉訪問을 우선 實施할 것 등과
 - 이번 會談에서 「南北核統制共同委」 構成에 관한 合意書 및 示範 査察問題 등에 合意할 것을 강력히 提議하였으나
- 北韓은 ‘一括合意, 同時實踐’ 論理로 우리側 提議를 대체로 拒否하면서

- 「南北核統制共同委」問題는 2. 27 第2次 板門店 代表接觸에서 계속 論議하자고 맞섰으며
- 離散家族問題등은 T/S 中止, 美軍 撤收, 訪北 拘束者 釋放, 國家 保安法 廢止 등과 連繫시키면서 誠意를 보이지 않았음.
- 특히 北韓은 이번 會談期間中 金日成 談話 및 延亨默의 基調發 言 등을 통해
 - 南北 쌍방이 '自主的 立場'을 가져야 한다는 點을 시종일관 強調 하고
 - 交流·協力問題보다는 政治·軍事問題 우선 解決을 力說하면서 '不可侵' 合意를 내세워 "外國軍隊·基地가 더 있을 필요가 없으며, 이제 이 問題에 대한 決斷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言及함으로써
 - 그들이 主張하고 있는 이른바 先決課題(駐韓美軍 撤收, 軍縮, 訪北拘束者 釋放, 國家保安法 廢止 등)를 향후 合意書 實踐問題와 連繫시키려는 底意를 드러냈음.
- 한편 北韓은 「南北基本合意書」 등 '3個 合意書'의 發效와 관련, 이를 대대적으로 報道하는 가운데
 - 同 「發效」가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의 앞길에 밝은 展望을 열어 놓은 劃期的 事變"이라고 強調하고
 - 우리側에 대해서는 '성실한 履行'을 促求하면서 國家保安法 撤廢, 訪北拘束者 釋放, 駐韓美軍 撤收 및 軍縮實現 등을 要求하였음.

- 그러나 우리 大統領과 當局에 대해서는 여전히 '盧○○ 逆徒', '盧○○파쇼徒黨', '傀儡徒黨' 등의 誹謗을 계속하면서 '反美鬭爭'을 煽動하였음.

關 聯 報 道

| 日字 및 形式 | 論 調 |
|---|--|
| 2. 19 中放 論評 平放 解說 | ○ 우리의 一貫하고도 積極的인 努力의 結實 ○ 南朝鮮의 實際 統治者는 美帝 ※ '盧○○逆徒' 表現, '反美鬭爭' 煽動 |
| 2. 20 中放 報道 로동신문 社說 中放 報道 | ○ 農產物 收奪 政策과 美帝의 壓力 ※ '傀儡徒黨' 表現 ○ 北南合意書와 共同宣言을 성실히 履行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決定的 局面을 열어 나아가자 ○ 南朝鮮은 어린이 수출의 王國 — "盧○○逆徒의 6共 時期에 들어와서도 어린이 輸出은 계속되고 있는데 ……" |
| 2. 21 中放 報道 平放 報道 中放 論評 | ○ 무참히 짓밟히는 女性들의 人權 — "盧○○逆徒의 6共下에서 女性들에 대한 拷問 蠻行은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음" ○ 우리 人民이 누리는 自主的인 政治生活 — "오늘 南朝鮮에서는 美帝와 盧○○ 傀儡 逆賊놈들의 극악한 植民地 파쇼統治 아래서 勤勞者들의 自主的 政治生活이 극도로 짓밟히고 ……" ○ 合意書 履行을 위한 實踐行動을 보여야 한다 — "南朝鮮 統治者들은 南北合意書를 履行할 意思가 있다면 國家安保法을 撤廢하는 決斷을 내려야 한다" |

| 日字 및 形式 | 論 調 |
|-------------|---|
| 平放 報道 | <p>○ 모든 朝鮮同胞들은 統一偉業에 寄與해야 한다.</p> <p>— “美帝와 南朝鮮 傀儡들은 말로는 朝鮮半島의 平和와 統一에 대해 떠들지만 실지로는 分裂을 永久化하며 勝共統一을 追求하고 있음”</p> |
| 2. 22 平放 報道 | <p>○ 和解와 團合의 障礙를 除去해야 統一을 앞당길 수 있다.</p> <p>— “南朝鮮 統治輩들은 聯共·聯北을 主張하고 우리의 對話와 接觸을 要求하는 統一愛國勢力에 대한 彈壓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임”</p> |

○ 요컨대 北韓側 論調의 核心은

- 이번 「發效」가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새로운 里程標이며
- 그들의 “하나의 朝鮮路線”, “反戰·反核 平和路線”, “反外勢 統一路線” 등에 南側이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 이는 金日成·金正日의 현명한 領導의 勝利라고 主張한 點등임.

○ 그런데 北韓이 合意書의 發效 以後에도 對南誹謗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南北關係의 새로운 狀況展開와 관련, 그들 內部를 단속하려는 目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끝으로 核問題와 관련

- 이번 會談에서 「南北核統制共同委」 合意書를 採擇하자는 우리側 提議를 拒否하고
- IAEA의 「核安全協定」 批准에 대해서도 主席에게 批准權이 있음

(헌법 96조)에도 불구하고 批准을 4月 開催豫定の 最高人民會議 審議 以後로 미룬 點 등은

- 막바지段階에 와 있는 核武器開發을 위해 좀더 時間的 餘裕를 確保하려는 底意이거나, 앞으로 對美·日 關係改善 및 對南關係에서 協商카드로 계속 利用하려는 意圖로 보임.

〈參 考〉

「南北基本合意書」의 發效文件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귀하

나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남북사이에 서명·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노태우 대통령께서 재가하여 이 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귀하

나는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의 심의를
거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 주석께서 비준
하시어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바
입니다.

1992년 2월 19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南北 經濟交流 · 協力에 대한 立場 闡明

1992. 3.

1. 概要

- 北韓은 「南北基本合意書」의 採擇으로 相互經濟交流 · 協력이 實現될 수 있게 된 것은 北韓의 始終一貫된 努力의 結果라고 強辯하면서 南北 經濟交流 · 協力에 대한 北韓의 立場을 闡明 하였음. (中放 3. 2)

〈 報道 要旨 〉

- 北과 南사이의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는 民族共同利益과 繁榮을 위한 合理的인 方途이며, 民族의 紐帶를 다시 잇고 祖國統一의 前提條件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意義를 가짐.
- 北南사이의 經濟協力を 實現할 수 있게 合意書가 採擇된 것은 전적으로 조선로동당과 共和國政府가 經濟協力問題를 祖國統一實現의 한 構成部門으로 規定하고 始終一貫 努力해온 結果임.
- 우리는 8.15直後 南朝鮮에 電氣와 灌溉用水를 提供했을뿐만아니라 '84. 9에 도 南朝鮮 水災民들에게 國際市場 價格으로 1,800萬달러에 해당되는 救護物資를 提供했으며 機會있을때마다 救護措置 및 經濟交流 · 協力を 提案하였음.
-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知識있는 사람은 知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祖國統一에 寄與할데 대한 方針에 따라 祖國統一을 目的으로 經濟交流를 하겠다는 사람과는 손을 잡고 經濟協力과 交流를 널리 해나갈 것임.

2. 分析

- 北韓은 이번 報道를 통해 「南北基本合意書」發效以後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대한 그들의 基本立場을 처음으로 밝혔음.
- 報道內容面에서의 特徵은
 - 첫째, 南北 經濟交流·協力を 統一問題와 連繫시키면서 民族共同利益과 繁榮을 위한 合理的인 方途임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
 - ※ '84. 9 南韓 水災時 北韓은 “1,800萬달러에 해당하는 救護物資를 提供했는데 비해 美·日은 5萬달러와 10萬달러 提供에 不過하였다”고 하면서 “한 祖上의 핏줄을 나눈 血緣이 第一”이라고 力說
 - 둘째, 「南北基本合意書」가 採擇된 것은 全적으로 北韓의 努力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歪曲·浮刻시키고 있는 點
 - 셋째, 祖國統一이라는 名分으로 經濟交流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받아들일겠다는 立場을 밝히고 있는 點 等임.
 - ※ 金宇中 대우그룹 會長도 “祖國統一을 위해서 자기가 汗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招請하였음을 指摘
- 이와 같은 北韓의 움직임은
 - 對內的으로는 「南北基本合意書」發效를 契機로 當面한 經濟難을 넘기기 위해 南北 經濟交流·協力の 不可避性을 我田引水格으로 合理化함으로써 北韓住民들이 겪게될 心理的 葛藤과 衝擊을

最少化하기 위한 事前準備로 보여지며,

※ 同 報道에서 8.15直後 北韓이 電氣, 灌溉用水를 南韓에 提供했던 事實과 '84年 水災物資 提供 등을 특히 強調함은 물론 '50年代에 北韓이 提議했던 南北 經濟交流 關聯 「內閣決定」들을 具體적으로 羅列

— 南北經濟協力에 있어서는 南北韓 當局次元의 經濟協力보다는 南韓의 個別 企業을 상대로하는 民間次元의 經濟交流·協力を 多角的으로 推進해나갈 意圖를 드러내고 있음.

<첨 부>

협력·교류는 우리의 일관한 입장

(중방 '92. 3. 2.)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열망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에 채택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얼마전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6차 북남고위급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선언」과 함께 그 발효를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채택·발효된 합의서에서 북과 남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평화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데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민족 공동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일뿐아니라 끊어졌던 민족의 유대를 다시 잇고, 조국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북남 사이의 경제협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전적으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경제협력문제를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한 구성부문으로 규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노력하여 온 결과로 이룩된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6월 23일에 발표하신 로작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국토가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조국은 하나이고 우리 겨레는 수천년동안 하나의 강토에서 상부상조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때문에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끊어졌던 민족의 유대를 다시 잇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민족의 복리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세에 의해 국토와 민족이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지만 언제나 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협력·교류를 주장하여 왔고 실천·행동으로 그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8.15 직후 우리가 남조선 전역에 전기를 보내 준 사실이라든가,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해서 38선 이남의 연백벌 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준 것은 해방 직후에 있었던 협력·교류의 한두가지 실례에 불과합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1984년 9월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고 20여만의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5만석의 흰쌀과 50만미터의 천, 10만톤의 세멘트와 막대한 량의 의약품을 보내 주었습니다. 북반부 인민들이 정성들여 마련해서 보내준 구호물자는 그때 국제시장가격으로 1,800만달러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조선 괴뢰들이 그무슨 우방국이라고 섬기는 미·일 상전은 이른바 구제금이라고 준 것이 5만달러와 10만달러였습니다. 5만달러 대 1,800만달러, 10만달러 대 1,800만달러, 이것은 도대체 대비도 되지 않는 방대한 액수인 것입니다.

이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은 뭐니뭐니해도 같은 민족, 한조상의 핏줄을 나눈 혈연이 제일이라는 것과 북과 남은 꿈올래야 꿈올 수 없이 굳게 결합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심장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8.15 직후의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기와 관개용수를 보내주었을 뿐아니라 1984년에 직접 구호물자를 보내준 외에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미제의 강점하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구호조치를 제의하였고 또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몇가지 사실만 더 들어본다면, 1955년 4월에 채택된 「내각 결정 제40호」, 1956년 1월에 채택된 「내각결정 제10호」에서는 배움의 길을 잃고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받아들여 공부시키고 일자리를 보장해 줄데 대한 문제라든가, 그해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의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 수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한 제의서」, 그 다음해인 1957년 5월 공화국정부가 남조선 전역 농민들에게 구호밀을 제공할 데 대한

「내각결정 제43호」를 비롯해서 우리 공화국정부가 남조선 인민들에게 수많은 동포애적 조치는 물론,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조치를 수없이 많이 취하였습니다.

그밖에 남조선의 실업자들과 유랑 고아들을 구제할 데 대한 1958년 8월 「내각결정 제96호」를 비롯해서 그러한 실례는 이루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호조치와 함께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60년 11월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8차 회의에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데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재의와 노력에 의해서 1984년 11월부터 1986년 1월까지 북과 남 사이의 경제회담이 6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동포애적인 협력교류를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그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남조선 당국이 지난해 말에 북남 합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재의한 대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나갔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 해외에 있는 각 계각층 동포들이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 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해 주신 결과, 남조선의 경제인들도 경제협력문제를 제기해 올 수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대우그룹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그 회장인 김우중이 조국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한몫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평양에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국통일을 목적으로 경제교류를 하겠다는 사람과는 다 손을 잡고, 경제협력과 교류를 널리 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북남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종일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의 장벽 때문에 재나라, 재 땅에 풍부한 자연부원과 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동으로 개발·이용하지 못하고 민족경제

의 통일적 발전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발맞추어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서」 이행에서 성실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온다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서는 물론, 북남 사이의 여러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 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해서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갈 것입니다.

第3次 汎民族大會 및 第2次 青年學生 統一祝典 結果分析

1992. 8.

1. 行事 概要

가. 汎民族大會

- 8. 9~15: 白頭-漢擊 大行進(백두산 → 판문점)
 - 行進隊 歡迎 平壤市 12萬 群衆大會
- 8. 12 : 「汎民聯」政治協商會議(인민대학습당)
 - 祖國統一方途 討議
 -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93. 8. 15) 제의
 - 9個地域 「汎民聯」代表團 참석
- 8. 15 : 本大會(판문점 통일각)
 - 報告會 및 文件採擇, 統一愛國烈士追慕모임,
 - 韓美當局 규탄대회 등 행사
 - 윤기복(「汎民聯」사무총장), 문경덕(조선학생위원장), 임민식(「汎民聯」사무총장), 여연구(「汎民聯」북측본부부의장) 등 580餘名 참석

나. 青年學生統一祝典

- 8. 9~15: 白頭-漢擊 大行進 참가
- 8. 12 : 青年學生 連席會議(인민문화궁전)
 - 「汎靑學聯」결성·운영문제 토의

- 7個地域 青年學生代表團 참석
- 8. 15 : 汎民族大會 本大會 참가 및 祖國統一汎民族青年學生聯合(汎靑學聯) 結成

2. 主要 決議事項

가. 汎民族大會

- 共同決議文
- 海內外 同胞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北·南 當局에 보내는 편지
- 日本政府에 보내는 편지 등 채택

〈採擇文件 要旨〉

- 全民族的 美軍撤收運動 전개('92. 9. 1~'95. 8. 15)
- 國家保安法 철폐, 訪北人上 釋放 투쟁
- 李仁模 送還 요구
- 南北間 自由來往 실현 투쟁
- '93. 8. 15에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소집 제의
- 從軍慰安婦問題 해결 투쟁
- 「汎民聯」 조직 확대 강화
- 「南北基本合意書」 誠實履行 촉구
- 日本의 과거행위에 대한 謝罪·補償 요구
- 日本의 海外派兵, 核能力 強化 반대

※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는 '91 金日成 新年辭에서도 提議한 바 있음.

나. 青年學生統一祝典

○ 「汎靑學聯」 結成

- 目的：南·北·海外 青年學生들간의 자율적 交流接觸 추구
(「汎民聯」의 先鋒隊 자처)
- 構成：全大協, 朝鮮學生委, 海外同胞青年學生組織으로 構成
- 組織：共同議長 3명, 副議長 15명, 共同事務局(베를린), 南·北
· 海外 3개 地域本部 등

※ 共同議長 3명：문경덕(조선학생위원장)

김창호(재일 한국청년동맹위원장)

태재준(전대협의장)

○ 採擇文件：綱領·規約, 結成宣言文, 特別聲明

〈宣言文 要旨〉

- 聯邦制 統一方案 지지 및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소집
- 美軍 및 核武器 철수, 國家保安法 철폐, 訪北人上釋放 투쟁
- 「汎靑學聯」을 중심으로 南·北·海外 青年學生 交流 적극 추진

3. 綜合 評價

○ 이번 第3次 汎民族大會와 第2次 青年學生統一祝典은 全體적으로

— 작년 大會에 비해 행사의 種類와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 지난해에 비해 林秀卿집 體育大會, 大會參加者 選拔大會, 音樂의 밤, 林秀卿·文益煥 慰問團 派遣試圖 등이 없었음.

- ※ 關聯行事 :
 - 세계기도주일예배(8. 9, 봉수교회)
 - 이인모가족과의 상봉(8. 11)
 - 통일체육대회 및 좌담회(8. 13)
 - 국가보안법철폐·방북인사석방 결의대회(8. 14)
 - 통일노래·춤무대(8. 14)
 - 종군위안부와의 상봉(8. 15)
 - “조국통일상” 수여(8. 15)
 - 통일문화의 밤(8. 16)

— 「南側代表」의 참석없이 北側, 海外側 兩者만의 행사로 치러졌으며

※ 南側代表로 1次大會에 황석영, 2차대회에 성용승·박성희 참석

— 北韓이 그간 집요하게 추진해오던 「汎靑學聯」 結成을 成事시켰고

— 大會 期間中 우리 當局에 대해 汎民族大會 不許 등을 이유로 “反民族的·反統一的”이라고 罵倒하는 등 對南誹謗에 주력하는 등의 양상을 보였음.

○ 이번 兩大會의 決議事項은

— 聯邦制통일방안 지지, 駐韓美軍철수, 國家保安法撤廢, 訪北人士 석방, 南北自由往來 등 기존 북한의 대남주장을 되풀이 하는 가운데

— 「南北基本合意書」·「非核化 共同宣言」의 意義를 높이 評價하고 남측에 대해 誠實한 履行을 促求한 점

- 李仁模 送還問題, 從軍慰安婦問題, 日本의 核武裝化·海外派兵問題 등을 새로이 宣傳素材로 추가한 점
- 내년 8.15에 統一方途 확정을 위한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를 召集하자고 제의한 점 등이 特徵임.

○ 요컨대 北韓은 이번 大會를 통해

- 統一熱氣의 再燃을 시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統一路線”, “統一意志”를 宣傳하는 한편, 南側 當局의 “不誠實性”을 왜곡·부각시키는데 주력함으로써
- 이를 우리사회내 一部勢力을 대상으로 한 宣傳煽動과 北韓의 對內體制安定에 活用하려는 意圖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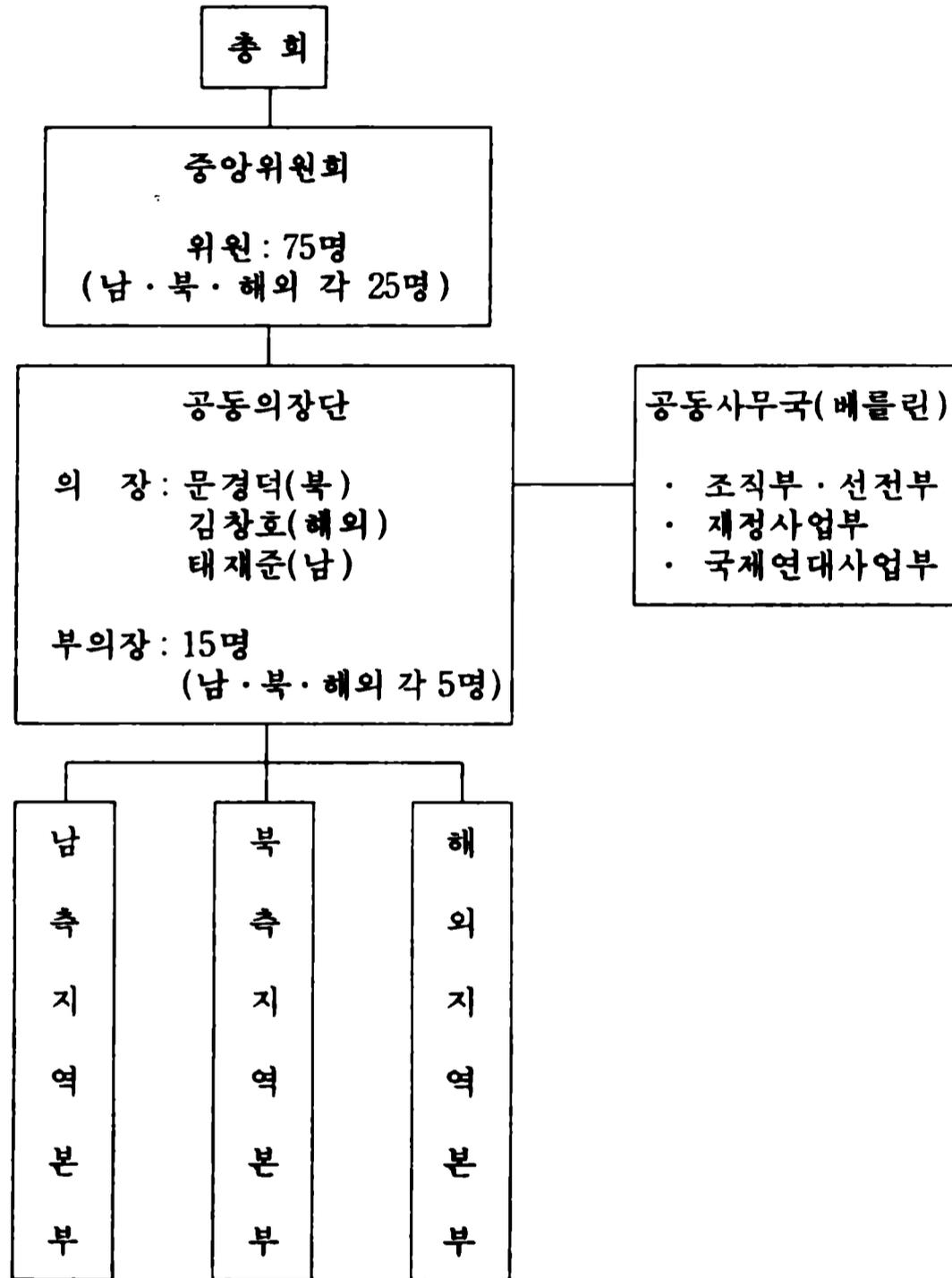
- 한편 期間中 서울에서도 일부 大學生 및 在野人士들이 서울大에 모여 同一 명칭의 大會를 개최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음.

〈서울汎民族大會〉

- 日時·場所 : 8.15, 서울大
- 主 催 : 범민족대회 남쪽추진본부(상임본부장 강희남 목사·문정현 신부), 2만여명 참석
- 行 事 : 汎民族大會 및 「汎靑學聯」 結成式
- 決議事項 : 美軍撤收, 國家保安法撤廢, 訪北拘束者釋放 등 판문점에서 결의한 내용과 同一 (7개항)

〈參考〉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기구표



자 료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2. 1. 1.

1991년 12월 31일 금수산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92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신년사는 다음과 같다.

.....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오늘 우리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새해 1992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뜻깊은 새해를 맞으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자주적인 새 세계를 지향해나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91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의 한해, 보람찬 투쟁의 한해,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재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

국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우리 인민은 당을 믿고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굳건히 수호되고 있으며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하는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유감없이 떨친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조국의 만년대계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영웅적 로동계급과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수도건설과 온나라의 건설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습니다. 인민경제 주요 부문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현대화를 다그칠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능력확장공사를 훌륭히 완공한데 이어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공사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산소분리기직장 1단계건설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제김으로써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킬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온 나라의 모든 논과 밭에 흙같이

를 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자연개조사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지난해 농사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인테리들도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사회주의문화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었습니다. 지도일군들과 대중이 한덩어리가 되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보람찬 투쟁과정에 당과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불패의것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그리고 적들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속에서 쟁취한것으로 하여 더없이 귀중하고 자랑스러운것이며 그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

나는 지난해에 우리 당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 역사적기여를 한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과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더욱 굳세어진 우리 인민은 오늘 신심에 넘쳐 충천한 기세로 새해 전투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의 총적방향은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때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는 오늘 그 정당성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있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긴절한 과업은 전력과 석탄 생산을 늘이고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며 지금 하고있는 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그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새로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탄광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더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이자 곧 생산이며 건설입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현대화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늘어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송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경제지도일군들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이 부문에 대한 보장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같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

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면하여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업과 경공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올해를 대농의 해로 정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실현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상점들에 가득채워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잘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중요과학기술부문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발표 15돐이 되는 올해에 교육부문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그 질적수준을 높여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적문학예술과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사회주의문화생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기본열쇠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 없이 높여나가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당과 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보람찬 창조와 위훈에 힘있게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 굳게 단결하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는것은 당과 함께 수많은 시련의 고비를 넘어온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혁명적기질입니다. 우리 당이 백전백승의 주체의 전략전술로 인민을 이끌어내며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를 따라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우리가 극복 못할 난관이 있을수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도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해에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즐기찬 투쟁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은 탄압과 박해가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주, 민주, 조국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였으며 해외동포들도 조선민족으로서의 영예와 책임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을 범민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7천만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숭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20돛이 되는 해입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있습니다. 지난해말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과정에 이룩된 커다란 승리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사변으로 됩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더불어 이번에 채택된 북남합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자주, 평화에로 나아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옮겨 반영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강령입니다. 북남합의서는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습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념원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에 맞게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자주적립장은 북남합의서를 리행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분렬자체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다름아닌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적립장은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에서 출발점으로 됩니다. 자주적립장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그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없습니다. 이번에 북남합의서가 민족적요구에 맞게 채택될수 있는것도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였기때문이며 그것이 앞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데서 얼마나 큰 생활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도 역시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어떻게 견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립장에 서야하며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외세에 의존하려 할것이 아니라 민족자주력량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고무하여야 하며 그들을 탄압하는것과 같은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과 남은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고 긴장상태을 완화하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력사적으로 국제관계와 련관되어있는것만큼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데서 유관국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관국들은 북과 남사이에 채택된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서간의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는 오늘에 와서 탕전시대의 낡은 관점을 가지고 힘의 립장에서서 조선문제를 대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더우기 핵사찰문제를 들고나와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핵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다면 하는것이고 안한다면 안하는것이지 결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은 인간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투쟁하여온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고 하여 우리가 해야 할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말아야 할것을 하는것과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평등하며 큰 나라일수록 국제적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할 더 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대국이라고 하여 자기의 부당한 요구를 함부로 남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에 대한 도전으로서 옹당한 반격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예측할수 없는 후과에 대해서는 그들자신이 력사앞에 책임지게 될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인것만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의 근본담보로 됩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
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당국자들이 지니고 있는 책임이 큼니
다. 당국자들은 마땅히 민족공동의 지향과 기대에 맞게 민족내부의
장벽을 허물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며 폭넓은 대화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국자들
은 이번에 채택된 북남합의서가 빈종이장으로 되지 않고 원만히 리
행되도록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민족앞에 지니고있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야 할것입니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앙양된 조국통일기운을 더
욱 고조시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
아야 하겠습니까.

복잡한 현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대외관계를 옹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력사의 전진운동을 역전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력사는 의연히 자주의 길을 따라 발전하고있습니
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사실을 놓고 그것이 마치도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이고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
하는것처럼 떠들어대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무지를 드
러내보이는것이며 낡은 질서를 비호하는 립장으로부터 나온 꾀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고있는것은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큰 손실로 되

지만 그것이 결코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제국주의의 반동성을 부정하는것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면 좌절을 면치못하게 되고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나아가면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뜨우게 된다는 것은 력사적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며 이자체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반증하여주는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다같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구현한 리념이며 따라서 력사가 전진하고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는데 따라 더욱 큰 전인력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비인간적인것으로 전환되어 마침내 자주적으로 각성된 인민들에 의하여 매장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정세의 변화과정을 비관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락관적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자주적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적목표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식민주의체계를 부활시켜 제국주의의 세계적지배를 실현하려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며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예측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타락시키고 분열와해시키는 수법에 매달리고있습니다. 이에 대처하여 세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화정책을 짓부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류공동위업에 적

극 이바지할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원칙과 동지적협조의 정신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형제적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어깨걸고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빨리불가담운동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운동으로서 의연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빨리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오늘의 변화되는 정세에 대처하여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빨리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가면을 쓰고 힘의 정책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평화옹호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교란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를 폐기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일심 단결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김정일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 2.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편집위원회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전문을 게재한다.

.....

.....

1.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

오늘 사회주의위업을 확고히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것은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었으며 얼마전에는 소련이 해체되어 자기 존재를 끝마쳤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마치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떠들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진상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있는 일부 사람들속에서 사상적혼란을 일으키고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습니다. 오늘 조성된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기초우에서 사회주의운동

을 재건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양양으로 이끌어어나가는것은 절박한 력사적과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사회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지만 력사발전의 방향이 달라질수는 없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사실을 가지고 마치도 력사의 흐름이 달라진것처럼 떠들면서 사회주의리념이 그릇된것이고 사회주의혁명을 한것부터가 잘못이라고 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동적kehr입니다.

인민대중은 장구한 기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자주적인 새 사회를 념원하여왔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학설인 맑스주의가 발생하였으며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투쟁한 결과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그후 사회주의는 세계적범위로 확대되었으며 사회주의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본주의하에서는 몇백년이 걸려도 달성할수 없는 커다란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력사발전 과정은 사회주의리념이 정당하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바없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던 일부 나라들에서 오늘에 와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에로의 길은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이며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 속에서 전진하여야 하는 준엄한 혁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전진도상에는 난관과 시련이 없을수 없으며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은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에서 볼 때에는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우연한 현상이라고 볼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단순히 외적요인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라고만 볼수도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가르치고계시는바와 같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결함의 원인은 객관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주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혁명가의 태도이며 결함을 고쳐나가는 옳은방도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과 립장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된 원인을 옳게 밝히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 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붙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능력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모든 착취사회와 구별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이 있으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조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됩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데서 이밖에 그 어떤 다른 묘술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건설을 어떤 원리에 의거하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당들앞에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선행한 공산주의리론의 력사적제한성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맑스주의는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나가던 시기에 나온 혁명학설로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되고 력사는 발전하는것만큼 맑스주의도 력사적제한성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맑스주의는 사회발전과정을 자연사적과정으로 보면서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생산관계가 발전하게 되고 생산관계의 총체인 경제제도가 해당 사회의 토대를 이루며 그 토대위에 상부구조가 서게 된다는 리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맑스주의는 물질적부의 생산방식이 사회의 성격과 사회발전수준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며 사회의 발전과정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해결되고 낡은 생산방식이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교체되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맑스주의는 이러한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생산방식이 확립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사회혁명은 끝나는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공산주의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의 차이는 생산력발전수준의 차이에 귀착되기때문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경제건설을 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던것입니다. 결국 맑스주의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하

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옳은 해답을 줄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맑스주의는 사회주의위업의 선행단계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리론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구체적방도를 밝히는것을 당면한 과제로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할수 있는 사회적 조건도 실천적경험도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당들이 마땅히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리론을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워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온 일부 나라 당들은 이 역사적과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맑스주의를 지도덕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선행리론의 역사적제한성을 보지 않고 그것을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맑스주의의 혁명적진수를 부정하고 수정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선행리론에 대한 교조주의적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과 우월성이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인민대중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정권과 사회주의적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았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추동력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적용이라는 경제적요인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정권이 서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관계가 확립되면 인민대중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여주고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과 경제적조건이 마련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커다란 우월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적조건자체가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서는 되

지 못합니다. 생산력발전문제를 놓고보아도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서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수립하여놓았다 하더라도 생산력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 수 없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과 사회주의정권, 사회주의경제제도는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는 력사적과정을 놓고보아도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먼저 사회주의사상이 나오고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적당을 조직하고 당이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며 그 다음 사회주의정권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사회주의정권을 떠나서는 유지될수도 없고 그 본성에 맞게 관리될수도 없으며 또한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을 떠나서는 유지될수도 그 본성에 맞게 자기 기능을 수행할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 그 운명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일부 나라들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붙어쥐고 경제건설만 내밀면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은 경제건설도 잘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인민적인 정치방

식을 확립하는데 옹당한 주목을 돌리지 못함으로써 인민들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고 대중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될수 없게 하였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정치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정권은 섰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낡은 사회의 정치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사업이 그 주인인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특정한 사람들의 사업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관료주의가 자라나 사람들의 창발성을 억제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멀어뜨리게 되었으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자기 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을 잃게 되었으며 공고한 사회정치적기초를 가질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뜬한 주체를 가지지 못한 사회주의는 우월성과 위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도전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없습니다. 역사적사실은 강한 군사력과 방대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진 큰나라라 하더라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지 못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것은 바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가지 못한데로부터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원인은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적차이를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다같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사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근본이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로동계급의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혁명적 원칙입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결함을 범할수 있으나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로동계급의 당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과정에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는것처럼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혁명적원칙, 로동계급적선에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어도 사회주의의 근본 리념과 요구는 달라질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

는 투쟁에서 혁명적원칙을 버리는것은 곧 투항과 변질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앞에서 중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점차 혁명적원칙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데로 나아갔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도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데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수정주의정책의 결과로 사회가 점차 변질되어갔으며 사회주의를 《개척》하고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므로써 사회주의의 변질과정은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수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량립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어 사회공동의 리익을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의 자유화와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허용하는것은 결국 사회주의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에 길을 열어주는것으로 됩니다. 사상분야의 투쟁은 정치투쟁의 서곡이며 그것은 정권투쟁으로 넘어가기마련입니다. 력사적경험은 사상을 자유화하여 반사회주의

적사상조류들이 류포되고 《다당제민주주의》를 허용하여 반사회주의 정당들의 활동이 보장되면 계급적원수들과 반동들이 머리를 쳐들고 반사회주의책동을 감행하며 로동계급의 당을 정권의 자리에서 내쫓는 데로 나아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사회주의원칙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자본주의적인 정치방식과 경제제도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데로 나아감으로써 결국 사회주의는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원칙으로부터의 한걸음의 양보와 후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와 후퇴를 가져왔으며 결국에는 로동계급의 당자체가 파멸되지 않으면 안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은 또한 사회주의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연관성을 강화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연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하게 되며 매개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관철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나라 당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다른 나라 당들과의 국제적연대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은 매개 나라 인민의 민족적위업인 동시에 국제적위업입니다. 매개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은 자기의 자주성을 지킬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나라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동지적

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도 지니고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는 큰 나라 당과 작은 나라 당도 있고 력사가 오랜 당과 그렇지 못한 당도 있습니다. 큰 나라 당은 작은 나라 당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공동의 위업 수행에 더 큰 기여를 할수 있다는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 당일수록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더 큰 책임을 자각하여야 하며 형제당들을 사심없이 도와주고 공동위업수행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것은 옳당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큰 나라 당들이 대국주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당들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를 받는 당이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이 있고 매개 나라 당들이 그 지부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지나간지 오래입니다. 사회주의나라 당들은 마땅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동지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으나 지난 기간 일부 사회주의나라 당들은 국제당이 있을 때의 낡은 관계의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습니다. 어떤 나라 당은 자기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앙》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 당들에 이래라저래라하고 지시하며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것과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 나라들의 사상적통일과 동지적협조관계가 심히 약화되었으며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와 맞설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나라 당들은 주체성이 없는 대국주의적압력에 극복하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큰 나라가 수정주의를 할 때 같이 수정주의를 하고 또 남이 《개혁》과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련과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쇄적으로 좌절되

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 사대주의를 하다가 사회주의를 망쳐먹은 일부 나라들의 현실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역사적경험은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올바른 지도사상을 가지고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동지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갈 때 사회주의위업은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여곡절과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에서 찾은 심각한 교훈입니다.

2.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의 정당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었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의 합법칙적로정을 독창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적원칙과 과학적인 방도를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공산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으며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현실로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습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기여하신 위대한 력사적공헌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총로선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을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은 사람중심의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사회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어 생활하는 집단이 바로 사회입니다. 사회의 주인은 다름아닌 사람이며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존재입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얼마나 높이 발전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의 발전수준이 구성되게 되며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적재부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맞게 사회관계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것만큼 사회를 물질적조건을 위주로 하여 불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보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정을 자연사적과정으로 불것이 아니라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공산주의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 사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전면적으로 갖춘 완성된 사회적인간으로 될것이며 생산력은 사회

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 사대주의를 하다가 사회주의를 망쳐먹은 일부 나라들의 현실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역사적경험은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올바른 지도사상을 가지고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동지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갈 때 사회주의위업은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여곡절과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에서 찾은 심각한 교훈입니다.

2.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의 정당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었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의 합법칙적로정을 독창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적원칙과 과학적인 방도를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공산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으며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현실로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습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기여하신 위대한 력사적공헌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총로선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을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은 사람중심의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사회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어 생활하는 집단이 바로 사회입니다. 사회의 주인은 다름아닌 사람이며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존재입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얼마나 높이 발전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의 발전수준이 구성되게 되며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적재부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맞게 사회관계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것만큼 사회를 물질적조건을 위주로 하여 볼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보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정을 자연사적과정으로 볼것이 아니라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공산주의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 사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전면적으로 갖춘 완성된 사회적인간으로 될것이며 생산력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물질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는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개인과 집단의 자주성이 다같이 실현되는 완전한 집단주의적사회관계로 될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사회의 낮은 단계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는것이 최종목표라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그 출발점으로 됩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할 때 그것은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됨으로써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 사회의 골격이 형성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류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거대한 력사적변혁으로 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로정에서 볼 때에는 첫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갓 태어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성격을 가진 새 사회인 동시에 낡은 사회의 유물을 많이 가지고있는 과도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발전시키며 그 과도적성격을 극복해나가는 원칙에서 사람과 자연과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사람들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공산주의적 인간

으로 만들어야 하며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생활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사회관계를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적인 국가사회제도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회주의적인 주체가 확고히 서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을 때 그리고 사회생활전반을 사회주의적방식으로 관리운영해나가게 되었을 때 사회주의는 비로소 자기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주인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한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민대중이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은 그 이전시기와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할 때에는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높은 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을 가지는것이 중요하였지만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집단주의사상을 가지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또한 낡은 착취제도를 파괴하는데서는 반동적지배계급의 반혁명적폭력을 격파하기 위한 투쟁력을 가지는것이 중요하였지만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관계와 인간자신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섭니다. 만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람들이 집단주

의사상을 가지지 못하여 개인소유를 집단적소유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서 공동로동에서 열성을 내어 일하지 않거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창조적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관리와 경제관리를 바로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주의사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사회로 될 것이며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을 발휘할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도록 하려면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통하여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적락후성에서 해방하고 공산주의사상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공산주의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이며 인간개조사업에서 기본으로 됩니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우리 당은 문화일반으로부터 사상을 분리해내고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내놓았습니다.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 사상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저절로 개조되지 않습니다. 사상의식을 단순히 현실세계의 반영으로 보면서 사회제도가 달라지고 물질적조건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사상의식도 그에 따라 변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 객관적조건이 변화가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에서 일정한 작용을 하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물질적부가 늘어난다고 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공산주의적사상을 가지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착취와 압박이 없어지고 물질생활이 풍족해질수록 그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러 사람들속에서 혁명성이 약해지고 편안히 지내려는 안일한 사상경향이 점차 자라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째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와 사회주의의 운명이 좌우되게 됩니다. 물질만능의 원리가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이라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상이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하나로 단결하면 사회주의는 승리하고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병들면 사회주의는 망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은 바로 사상의 우월성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다름아닌 사상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생명선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맞게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기본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입니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한 사상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계급적처지가 각이하고 리해관계가 대립되어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을 가질수 없으며 사회의 사상정치

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가계급은 근로자들이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통일단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잡다한 반동사상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고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때에만 혁명의 튼튼한 주체를 마련할수 있고 주체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다름아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사람들을 혁명적 수령관과 조직관, 군중관으로 무장시키고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워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만드는데 중심을 두고있습니다.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에 대한 사상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에 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뇌수입니다. 수령과 대중과의 관계는 혁명사상과 동지적사랑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의 혈연적관계입니다. 생명체와 뇌수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듯이 인민대중을 떠난 수령, 수령을 떠난 인민대중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는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인민대중이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해방투쟁에 일떠섰으나 처음에는 참다운 인민의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가장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오늘까지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인민의 참다운 넋을 심어주고 영생하는 사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으로 묶어세워 백전백승하는 영웅적인민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뿐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으로, 아버지로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며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충실성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과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더우기 우연분자, 혁명의 배신자가 당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였을 때에는 장구한 기간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조직입니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생명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련결되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되며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조직을 자기의 정치적생명의 모체로 보고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입니다. 수령은 다름아닌 인민

대중의 최고뇌수이며 당은 인민대중의 핵심부대입니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는 혁명적군중관으로 무장하여야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될수 있으며 어떤 어려운 문제도 대중에 의거하여 자체로 풀어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될수 있습니다. 혁명적군중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쳐다보는 외세의존사상과 난관앞에 굴복하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려면 올바른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에서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해놓으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

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누가 보건말건 오로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숨은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품모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어있고 온 사회가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가 긍지높이 자랑할수 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되어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하며 생활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문화혁명은 사람들을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문화적으로 빨리 발전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전반적문화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특권층이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예속시키며 퇴폐적인 향락을 누리는데 복무하는 부르주아반동문화는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매우 유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관습 속에 오랜 기간 깊이 침투되어 내려온 낡은 문화의 잔재를 없애고 사회주의적인 새 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칙적인 투쟁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

음 문화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인민대중을 문화적락후성과 비 인간적인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높은 창조적능력의 소유자로, 참다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의 향유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를 성과적으로 막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는데서 먼저 반동적부르조아문화를 침투시켜 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는 전략에 매달리고있습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 사회주의문화가 자본주의문화를 압도하여야 사람들이 썩어빠진 부르조아문화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않게 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가 통하지 않게됩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전략적목표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입니다. 인간개조의 전지에서 볼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인테리화하는 과정입니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사업이라면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지식수준과 문화적소양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 문화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어 계급적대립관계가 없어진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동시에 인테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인테리는 로동계급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며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로동계급과 동일한 사회계급적기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와 로동계급은 로동생활에서의 특성으로 하여 서로 구별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무산자로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발전하여온 로동계급은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을 가지고있으나 인테리에 비하여 문화기술수준이 낮으며 인테리는 로동계급보다 문화기술수준이 높은 반면에 혁명성과 조직성이 약합니다. 로동계급과 인테리의 이와 같은 차이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어 온 사회가 혁명화, 로동계급화되고 인테리화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은 결국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된 인테리로, 인테리화된 로동계급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화혁명에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교육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언제나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인민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주고 문맹을 퇴치하며 후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것으로부터 새 조국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도 교육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시키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새 세대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국가의 혜택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노력한 결과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등중학교 졸업정도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오늘은 온 사회를 인테리

화할데 대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에게 순수 지식과 기술만을 배워주는 실무적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주의교육의 사명과 임무는 사람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공산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교육교양과 혁명실천을 결부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왔습니다.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새 세대들이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되고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공부하며 교육을 통하여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겸비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되고있는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교육의 나라》라고 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려면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사상감정, 정서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새 문화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온갖 비문화적이고 뒤떨어진 생활관습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인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갈수 있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과 도덕을 가지고 신심과 량만에 넘쳐 투쟁하며 생활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사회주의문화건설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

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혁명적요구를 반영한 주체의 문화예술이 근로자들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문화적재부가 전적으로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과 예술,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문화사업이 대중화, 생활화되어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만드는 패륜패덕과 사회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고상한 사회주의도덕이 보편화되고있으며 건전한 사회주의생활양식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과 일터 그 어디에서나 혁명적량만이 차넘치고있으며 우리의 주체적문화예술은 인민들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상정신생활을 건전하게 하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

자연을 개조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간개조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면에서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건물처럼 자기의 존재를 오래 유지할수 없게 되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과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도 없습니다.

기술혁명은 자연을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됩니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의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기술혁명은 자연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의 물질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개조사업이 소수 자본가들의 끝없는 치부욕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노동생활과 물질생활 조건을 보장하여줌으로써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혁명은 기술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자기 인민의 자주적요구에 맞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과 물질생활을 확고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고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은 반드시 주체적립장에서 튼튼히 서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원만히 실현하는 원칙에서 수행하여야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기 인민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자본주의나라의 발전된 기술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는것은 매우 유해로운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마치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어느 사회에서

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담당자는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 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과학기술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기술발전사업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회주의사회가 더 우월하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기술혁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킨다면 경제와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경제적자립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도록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여야 합니다. 현대적인 중공업을 창설하고 그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개건을 실현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기술혁명을 다그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한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수행으로 근로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퇴치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다음 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

였습니다. 우리 당의 3대기술혁명로선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고 평등한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데 대한 사회주의적기술혁명의 원칙을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하여졌을뿐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에서도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없어지고 어렵고 힘든 로동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로동조건과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생활은 날로 더욱 흥겹고 보람찬것으로 되여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생활도 체계적으로 향상되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특별히 못사는 사람도 없으며 실업자와 거지란 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음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자체의 힘으로 할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인민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고 사람들이 래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속에서 살아가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고르롭게 근심걱정없이 사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우리 당이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수행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구

현하고있는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줍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관리운영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권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사회생활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지휘권입니다. 인민정권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창조적활동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전진하는데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발전완성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기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를 어떻게 관리운영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새롭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인것만큼 사회에 대한 관리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으로 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방식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국가정권과 생활수단의 주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주인이 되어 사회를 사회주의적본성에 맞게 관리하지 못하면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보장할수 없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없습니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적통치방법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주의적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것보다 못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국가정권을 계급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독재의 무기로 규정한 선행리론에서는 착취 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정권의 본질적차이를 주로 계급적성격에서의 차이로 보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어 계급적지배가 필요없게 되면 사회주의국가가 조락될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계급적지배수단으로서의 낡은 국가는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파괴되며 새로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사명을 지닌 새로운 국가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휘기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정권은 결코 조락될 수 없으며 정권문제는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력사적기간에 의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변천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것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회관리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의 유일적령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을 결합시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 사업체계로서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근본원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로서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사회전반을 관리운영해나가는 정치방식으로서 보편적의의를 가집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시하고 그것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 구현한것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관계를 확립한데 못지 않는 사회개조분야에서의 거대한 혁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관리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입니다. 당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정권의 활동방향을 밝혀주고 정권기관들이 인민대중이 리익과 요구에 맞게 활동하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인민의 정권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온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가장 포괄적정치조직인 국가정권을 통해서만 확고히 보장되고 실현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책적지도로 되여야 하며 인민정권의 활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과 행정과의 관계는 비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를 잡은 사람과 노를 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키를 바로잡고 노를 잘 저어야 배를 곧바로 빨리 물고 갈수 있는것처럼 당이 정책적지도를 옳게 하고 정권이 당의 령도밑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사회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편향없이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집권당이므로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잘못하면 행정을 대행하여 국가기관들의 창발성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권기관들의 사업을 지도하는데서 행정화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의 《행정화》를 반대하고 국가정권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높인다는 구실밑에 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경향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가 없으면 사회주의정권은 부르췌아정권으로 변질되게 되며 당의 정권에 대한 령도를 포기하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전위부대로서의 존재를 끝마치게 됩니다.

당의 령도밑에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기능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사회생활이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전체 인민이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투쟁해나가는 집단주의사회입니다.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가 없이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옳게 실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은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의 대표자인 국가가 마땅히 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서만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대치시키거나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부정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어떤 원칙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이 사회주의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데서 잘 못된것이 있었다면 경제발전의 객관적법칙과 구체적실정을 무시하고 행정명령식으로 관리하며 통일성만 강조하면서 개별적 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문제를 소홀히 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자체를 반대할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그 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개별적기업소들의 독자성과 당면한 경제적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거부하는데로 나아간다면 결국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되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계획지표가 방대하게 늘어나므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다고 하는것은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이 경제의 부속물로 된다고 하는 주장과 같이 허황한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는데 맞게 국가가 경제관리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과학화한다면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으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관리 체계와 방법을 옳게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당활동과 국가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권의 주인도 인민대중이고 정치의 담당자도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혁명적군중로선은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도 관료주의를 없애고 인민대중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문제도 혁명적군중로선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은 바로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인민정권의 사업 체계와 방법은 철저히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으로 되어야합니다. 인민정권 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업하여야 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당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정권의 활동에서 낡은 사회의 통치방식인 관료주의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어긋나는것을 망탕 내리먹이는 관료주의가 허용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억제하게 되고 당과 정권을 인민대중과 리탈시키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가 나타나게 되는것은 일군들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사회관리분야에서 낡은 통치 체계와 방법의 잔재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어있습니다.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상과 낡은 관리방식의 잔재를 뿌리내야 하며 군중로선을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반 사회주의적요소들에 대한 독재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적대분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침예한 투쟁을 동반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계속
되고 내부에 그와 연결된 불순분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혁명의 무기로서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요소가 자라
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내부의 반동들이 혁명과
건설을 방해하며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고 책동하는것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정권의 독재기
능을 약화시킨다면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줄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없고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위
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
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을 일관성있게 견
지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가장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이 땅우에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전체 인
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
고있고 사회주의가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주의생활이 전면적으로
꽃피어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커다란 우월성입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오직 사회주의만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

속,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등,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을 실현하는 길이라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여온 사회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전도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신심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혁명적각오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 그 어떤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든지, 우리앞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지 한걸음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개막

「로동신문」, 1992. 4. 9

은 나라 전체 인민이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뜻깊은 율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장식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가 8일 소집되었다.

회의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개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사회주의조국에 채류하고 있는 총련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국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부주석들인 리종옥동지, 박성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총리인 연형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전병호동지, 한성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겸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서운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겸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인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만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들인 홍성남동지, 홍시학동지, 김복신동지, 강희원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리계백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정신헌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자리잡았다.

양형섭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이 채택되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2.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심의결정한 법들을 승인함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 맺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을 비준할데 대한 제안심의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일부수정보충합에 대하여

재정부장 윤기정대위원이 첫째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

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남기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예산 심의위원회 보고를 하였다.

첫째의안에 대하여 홍성남대의원, 김원복대의원, 최병준대의원, 김동준대의원, 정춘실대의원, 문창수대의원, 김분옥대의원, 박창영대의원, 김유풍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1991년 국가 예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과 당의 재정정책에 기초하여 정확히 집행됨으로써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진시키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국가예산의 성과적집행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재정의 공고성을 확증하여준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1992년 국가예산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회의는 계속된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한 재정부장 윤기정 대의원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1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2. 4. 9

대의원동지들!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장식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에 대하여 토의하게 됩니다.

지금 온 나라는 우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앞두고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에 휩싸여있으며 전체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바쳐오시며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이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며 행복입니다.

우리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4월의 명절을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위훈을 떨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우리앞에 나선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재정토대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저는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199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991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에 대하여

대의원동지들!

1991년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주체의 혁명적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을 고수하고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친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 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1991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존엄한 시련의 한해, 보람찬 투쟁의 한해,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그리고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새로운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 막아보려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에 맞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혁명하는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을 과시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

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념원을 반영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함으로써 전체 인민에게 끝없는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억년드늘지 않는 기초를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발효를 선포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북남합의서와 공동선언의 발효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데서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획기적인 사변이며 공화국의 일관한 평화통일노선과 반전, 반핵 노선의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 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이룩됨으로써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총액은 371억 9,484만원으로서 계획을 100.2%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국가예산지출총액은 369억 924만원으로서 계획을 99.4%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1990년에 비하여 국가예산수입총액은 104.2%로, 국가예산지출총액은 103.9%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중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내부축적을 늘임으로써 국가예산수입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는 거래수입금수입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5.8%로, 국가기업리익금수입은 105.7%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고 2억8,560만원에 달하는 지출에 비한 수입초과를 가지고 성과적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도, 시, 군들에서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적극 벌려 지방예산수입을 늘임으로써 지방의 경제, 문화 발전과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국가에 들여놓았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의 성과적집행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본본한 토대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예산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재정정책에 따라 1991년 국가예산자금은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수행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있게 쓰이도록 정확히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국가에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을 1990년에 비하여 104.4%로 늘이고 그 가운데서도 기간공업부문들의 생산기술적토대와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들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건설투자를 훨씬 늘였습니다.

인민경제에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워나갈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국가예산은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그 전해의 105.2%로 늘이고 이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지난해에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화풍탄광 화풍갱, 서호탄광 원복갱, 칠리탄광 2사갱을 비롯하여 지금 있는 탄광들의 갱건설을 다그치고 탄광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는 한편 새 탄광 건설을 힘있게 벌려 석탄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였습니다.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광업부문에서는 무산 광산련합기업소가 현대적인 대형채굴 설비들도 튼튼히 장비되고 방대한 규모의 능력확장공사가 완공되어 더욱 위력한 철광석생산기지로 전변되었으며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심부개발을 다그치기 위한 12사갱건설이 추진되고 채광 및 선광 능력이 더욱 확장되어 연, 아연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 파쇄사별장과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건설이 끝나고 봉련광산, 장림광산, 대봉광산 등 여러 광산들이 새로 조업하여 광물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국가의 방대한 투자와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동평양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일부 조업하고 12월화력발전소, 남강발전소, 녕원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전국도처에 중소규모 수력발전소들이 새로 많이 건설되어 나라의 동력기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그 전해의 105.4%로 늘이고 철도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철도운수부문 근로자들과 청년건설자들은 북부철길건설에서 발휘

하였던 혁명적열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200여리의 도내-유곡 사이를 비롯한 여러 구간의 철도전기화공사와 동림-동천사이 새 철길 건설을 끝내고 새로운 구간의 철길로반공사들과 철길개선공사들을 힘있게 추진하였으며 철도의 중량화와 철도운영의 현대화를 다그쳐 철도의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대규모흑색금속공업기지인 10월9일강철종합공장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2호용광로를 비롯한 지금 있는 제철, 제강소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이 더 잘 정비보강되었으며 혜산강철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철강재생산능력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화학공업, 기계공업, 전자, 자동화공업, 전재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는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제끼는 자랑스런 위훈을 떨치었습니다.

용성과 대안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에 요구되는 4,000마력압축기들과 수많은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훌륭히 생산보장하였습니다.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공사의 빛나는 실현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어김

없이 실천하는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성,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과 재능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또한 28비날론연합기업소 산소분리기직장 1단계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비료공장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주체적인 화학공업발전의 더욱 큰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공업과 채취기계공업, 선박공업기지들의 능력확장공사와 현대화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전자, 자동화 공업부문에서는 집적회로공장을 비롯한 전자, 자동화 공업기지건설이 추진되고 여러가지의 새로운 전자재료들이 개발되어 전자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충정에 의하여 훌륭히 건설된 현대적인 애국천연색텔레비죤조립공장은 우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농촌정리를 발전시키고 경공업혁명을 수행하며 살림집을 건설하는데 방대한 자금을 돌려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국가에서는 농촌정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그 전해에 비하여 104%로 늘이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촌기술혁명을 다구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전국, 전민, 전군의 힘있는 지원밑에 지난해 봄씨뿌리기전으로 모든 강냉이밭 흙갈이를 와닥닥 해제끼고 가을부터 올해초까지는 모든 논흙갈이를 해제김으로써 짧은 기간에 전국의 부침땅을 개량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거창한 토지개량사업은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그것은 벌써 커다란 은을 내여 농사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해감문-은물, 과일물길 1단계공사를 비롯한 방판개공사가 추진되고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 목석혁명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어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구성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 신외주신발공장을 비롯한 방직공장과 신발공장들의 능력확장공사와 현대화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삭주식료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장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졌으며 지방공업 원료기지들이 새로 더 많이 조성되어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살림집건설투자를 그 전해에 비하여106%로 높이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하여 큰 힘을 넣었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서 통일거리 건설이 승리적으로 진행되고 신의주시, 안주시, 강계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들에서도 살림집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전투적호소를 높이 반들고 한결 같이 떨쳐나선 수도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날에 날마다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덩지큰 고층살림집들과 함께 조화롭게 배치된 봉사시설들과 교육, 문화, 보건 시설, 중심도로와 텃채다리, 공원과 유

원지들의 건설, 궤도전차화공사, 대규모수원지와 오수정화장건설, 열난방화공사 등 하나의 새도시건설에 맞먹는 전례없이 웅대한 통일거리 건설을 끝내고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자랑찬 위훈을 떨치었으며 당앞에 다진 충성의 결의를 빛나게 실천하였습니다.

통일거리를 건설하고 현대적인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운것, 이것은 오로지 인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 우리당의 웅대한 구상과 은혜로운 조치의 빛나는 구현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찬란한 력사에 특기할 일대사변이며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의 힘있는 시위로 됩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은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그 전해에 비하여 103.5%로 늘어난 많은 자금을 사회문화시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특히 기계공학, 전자공학, 생물학을 비롯한 중요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기계화와 자동화, 로봇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화국정부는 교육사업비 지출을 그 전해의 103.9%로 늘이고 사회주의교육체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후대교육을 위한 우리 당의 적극적인 조치와 국가의 방대한 투자에 의하여 지난해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웅장한 새 교사 건설이 성

과적으로 추진된것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교실과 실험실,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들이 새로 많이 건설되어 교육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해방후 불과 십여명의 기술자들밖에 없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160만의 인테리대군을 가지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학습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전변된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비길데 없는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국가에서는 문학예술과 보건사업,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사업비, 보건사업비, 체육사업비 지출도 더욱 늘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의 불멸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두루봉 혁명사적지가 새로 꾸러지고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여러곳의 문화유적들이 원상태로 개축되었으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태권도전당과 같은 현대적인 문화체육시설들의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나라 주체예술을 더욱 높은 경지에 올려세웠습니다.

지난해에 보건부문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시책에 의하여 모든 시, 군들에 구강분원이 새로 나오고 예방치료기관들이 더 잘 꾸러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위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2.1%를 국방비로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국가예산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예산자금을 지출하고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두가 다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향유하고있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온갖 물질문화적조건을 보장받고 누구나 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꽃피워가고있으며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재정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재정으로 되고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재정과 국가예산의 공고성과 참다운 우월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건설과 국가예산집행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당이 백전백승의 주체의 전략전술로 우리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투쟁한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입니다.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대의원동지들!

올해에 우리 인민앞에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총적방향과 투쟁과업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1992년 국가예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과 우리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1992년 국가예산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각각 395억 92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수입총액은 106.2%, 지출총액은 107%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힘차게 펼쳐나선 전체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력투쟁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생산을 확대하고 인민경제내부축적을 늘임으로써 확고히 보장되게 됩니다.

올해에 공화국정부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국가예산자금을 정확히 분배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의 과업을 성과

적으로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국가예산지출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을 선차적으로 보장하는것입니다.

올해에 국가에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에 비하여 106.5%로 늘이게되며 특히 주체공업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식의 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업건설과 살림집건설에 대한 국가기본건설투자를 많이 늘이게 됩니다.

전력과 석탄 생산을 늘이고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기 위하여 이 부문들에 지난해에 비하여 105%로 늘어난 방대한 기본건설 자금을 돌리게 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올해에 지금있는 발전소들에 만부하를 걸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한편 남강발전소, 녕원발전소, 12월화력발전소, 해주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지금 하고 있는 대규모 수력 및 화력 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량강도, 자강도, 함경남도과 같이 강하천이 많은 지방들에서 중소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널리 벌려 발전능력을 획기적으로 늘이게 됩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탄광들의 주변탐사와 심부탐사를 강화하고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워 더 많은 채탄장을 마련하며 탄광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새 갱, 새 탄광 건설을 다그쳐 석탄 생산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게 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중량레루를 놓고 8축전기기관차와 100톤화차 생산을 늘여 철도의 중량화를 다그치며 철도전기화구간을 확대하고 이미 로반공사를 끝낸 남동-온천사이 철길건설을 비롯한 새 철길

건설을 힘있게 벌려 철도수송능력을 훨씬 늘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고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늘리고 철도와 자동차, 배의 연대수송을 강화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관수송, 석도수송, 콘배아수송을 널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올해에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대진군의 앞장을 지켜선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을 이룩해나가도록 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많은 자금을 돌려 광업,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게 됩니다.

올해에 광업부문에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면서 3월5일 청년광산을 비롯한 지금 있는 광산들의 확장공사와 새 광산들의 개발공사를 다그쳐 철광석과 유색금속광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광물생산을 빨리 늘리게 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제철, 제강소들을 정비보강하고 금속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이는 한편 10월9일강철종합공장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기계공장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공작기계, 채취기계, 농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며 중요건설대상들의 설비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데 힘을 넣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념원을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당면하여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에 농촌경리와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현대적인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큰 힘을 넣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를 대농의 해로 정하여주시고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4.5%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발관개공사에 큰 힘을 넣어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게 되며 화학비료와 농약 공급량을 늘이고 시비방법을 개선하여 농촌경리의 화학화수준을 높이며 농촌에 더 많은 트랙토르와 농기계를 보내주어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논, 밭 흙갈이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부침땅을 늘이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을 적극 벌리게 됩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전국의 힘있는 지원밑에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농촌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알곡과 남새, 과수, 축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확고히 올려세울것입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경공업 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미 마련된 위력한 중앙경공업기지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능력

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필수품 생산직장과 작업반들을 더 많이 내오고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힘있게 벌려 천과 신발, 일용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게 됩니다.

공화국정부는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화학비료와 화학섬유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지금있는 화학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는 한편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기술개건과 현대화공사를 비롯하여 화학공업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현대화하는 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올해에도 평양시에 2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더 일떠세우기 위한 대건설전투를 벌리며 지방도시들과 농촌들에도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게 됩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는 올해에 농업과 경공업 부문 앞에 나선 전투적과업과 살림집건설의 높은 목표를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며 잘먹고 잘입고 좋은 집에서 잘살것을 바라던 우리 인민의 숙망을 가까운 앞날에 빛나는 현실로 되게 할것입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과업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적시책의 실시를 위하여 사회문화시책비와 추가적 시책

비지출을 지난해에 비하여 111.6%로 늘이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과학과 교육 사업비지출을 훨씬 늘이고 과학 및 교육 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시켜나가며 우리 당의 위대한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15돛이 되는 올해에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여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도록 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외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지난해말까지 공화국정부는 119차에 걸쳐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410억 9,000여만엔에 달하는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에 또다시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베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는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을 크게 고무하게 될것입니다.

올해에 국가에서는 문화사업비, 보건사업비, 체육사업비 지출도 다 같이 늘어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찬란히 꽃피우며 인민보건사업과 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입니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된 조건에서 올해에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대폭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더욱 늘이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국가적혜택을 주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베푸는 이 시책에 따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는 평균 43.4%, 사회보장자들의 사회보장년금은 평균 50.7%, 대학,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은 평균 33%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분배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국가수매가격을 버는 26.2%, 강냉이는 44.8% 높이고 그밖의 일부 농업생산물의 수매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그 폭과 규모에서 류례없는 이 자랑스러운 시책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은혜로운 시책이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자랑찬 성과에 기초하여 그 물질적, 재정적 토대가 담보되고있는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인민적시책입니다.

우리 당은 일찌기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들의 건설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이번 인민적 시책의 실시를 위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시켜왔습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서 거대한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기념비적창조물이 수많이 일떠서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화학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들이 확대강화되어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이번의 역사적인 인민적시책을 실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비와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높이는데 방대한 국가재정을 돌리면서도 올해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국가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 여러가지 추가적혜택이 계속 더 차례지게 할것입니다.

올해에 공화국정부는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1.6%를 국방비로 돌리게 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1992년 국가예산은 이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조력에 의거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재정예산이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수행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자주적이며 공고한 주체의 재정예산입니다.

1992년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대의원동지들!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

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을 튼튼히 붙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

림으로써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오늘의 정세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은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전투적구호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여기에 우리앞에 나선 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기본열쇠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시기마다 이 구호를 높이 드시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시여 부닥친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구호,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용감하게 뚫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며 절약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는 실지투쟁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증산하고 절약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며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재정원천을 늘여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본방도입니다.

현시기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원료, 연료, 동력과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숨어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생산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며 있는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꾼들은 온갖 낭비현상과 허례허식을 반대하고 엄격한 절약제도를 세워 한공수의 로력, 한와트의 전기, 한그램의 석탄과 연유, 한토막의 자재라도 극력 아껴쓰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물자 소비기준과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며 모든것을 절약하여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균중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경제관리형태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말로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입니다.

오늘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대진군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며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고 생산조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을 바로 조직하고 로력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질서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며 생산지휘를 잘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경제적효과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재정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사회주의재정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재정을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본성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사회주의재정관리의 중요한 원칙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재정이 인민이 재정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국가의 모든 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국가의 법과 규정, 유일한 국가 계획과 기준에 따라 자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재정관리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재정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와 통제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공장, 기업소들과 지방들에서 재정관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며 자기 단위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는 나라의 재정자원이 조성되고 리용되는 기본단위이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야 나라의 전반적재정사업이 잘되어나갈수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들어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하며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채산을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모든 지방정권기관과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내여 지방예산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지방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원천이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온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우리 당을 중심으로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며 당의 호소따라 전체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올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한번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밝혀주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기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제2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1992. 4.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제2일회의가 9일에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첫째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조철준대의원, 김만성대의원, 유귀진대의원, 우두태대의원, 김길연대의원, 권천숙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해에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1992년 국가예산이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수행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하고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의안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심의결정한 법들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승인함에 대하여》를 각각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사이에 맺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을 비준할데 대한 제안심의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원자력공업부장 최학근대위원이 보고를 하였다.

이어 현준극대위원, 김영호대위원, 한영수대위원, 원동구대위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반핵평화정책에 따라 공화국정부가 지난 기간 핵군비경쟁을 막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며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들에 의하여 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사이에 핵담보협정이 체결되고 핵사찰문제가 공정성의 원칙에서 해결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는데 대하여 환영하고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사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부당한 행위들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본회의심의에 제출된 핵담보협정이 나라의 안전을 담보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핵에너리기개발분야에서도 국

제적인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여나가려는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의
립장에 부합된다고 하면서 본 최고인민회의가 이를 승인하는데 전적
으로 찬동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해무기
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적용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협정〉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대의원전
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넷째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일
부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양형섭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때
로부터 20년이 된다고 하면서 헌법공포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와 우리 당이 새롭게 제시하신 사상과 이론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반영하여
헌법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장 제76조
에 따라 본회의심의에 제기하였다.

그는 수정보충된 헌법을 해설한 다음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을 낭독하였다.

회의에서는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계속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폐막

「로동신문」, 1992. 4.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고 10일 폐막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제2일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거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에 의하면 염기순, 김기선 대의원이 다른 직무에 조동됨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되고 리길송대의원이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순대의원이 선거되었으며 위원으로 장재철, 리성록 대의원이 선거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윤병권대의원이 선거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양형섭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1972.12.27),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1992. 4. 9)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자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

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채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영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영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영을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영에서 나

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붙여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

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
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중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
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
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
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
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
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

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

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

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4 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全民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제69조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

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이다.

제88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들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

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2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0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 3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1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5절 정 무 원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

지한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으로 구성한다.

제128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앞에 선서를 한다.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 6 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 기관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률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 7 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와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3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

회의앞에 책임진다.

제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률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6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뚫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비는 1대 2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체택
(「중앙방송」, 1992.10.20 발표)

제 1 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자란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 투자자는 공화국 영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기업보다 낮추어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 11 조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 12 조 외국 투자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다.

제14조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력은 해당 노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법에 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누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 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협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채택
(「중앙방송」, 1992.10.21 발표)

-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봉사부문에 도 조직할 수 있다.
- 제 4 조 국가는 외국 투자자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 제 5 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 제 6 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 투자자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때에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 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 8 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 창설일로 된다.

제9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 투자가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12조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 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 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 기타 수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 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류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 당사자들 가운데에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승인 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 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채택
(「중앙방송」, 1992.10.21 발표)

제 1 장 외국인 기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 조 외국인 기업은 외국 투자가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에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 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품 가공공업, 피복가공업, 일용품 공업과 운수·봉사를 비롯한 외국인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 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 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6 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인 기업의 창설

제 7 조 외국인 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 투자가는 외국인 기업 창설 신청서에 정무원 자금신용 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 기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 기업 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안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 투자가는 기업 창설이 승인되면 30일안에 기업 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 기업 창설일로 되며, 외국인 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 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에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의 회사들과 연합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외국 투자가는 외국인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 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 기업 창설 신청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 투자가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 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 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외국인 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 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 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 기업은 외화관리 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 소재지안에 부기장부를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 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노력을 기업 소재지의 노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노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다른나라 기술자·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 조직을 내을

수 있다. 직업동맹 조직은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 기업과 노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감독한다. 외국인 기업은 직업동맹 조직의 환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 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재투자할 수 있고, 또는 공화국의 외화교환 통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인 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 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 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외국인 기업은 등록자본을 늘릴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기업은 존속기간안에 등록자본을 줄일수 없다.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검열·감독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 기업의 해산과 분쟁 해결

제28조 외국인 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 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30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 경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산 또는 파산이 된 외국인 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31조 외국인 기업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조선로동당 창건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김정일 논문(1992.10.10)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2. 11. 2

오늘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지금 사회주의 위업이 시련을 겪고있지만 사회주의는 의연히 혁명적당들의 투쟁목표로, 진보적인류의 지향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올해 4월 평양에서 채택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킬데 대한 선언에 세계 수많은 혁명적당들이 서명한 사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을 어떻게 전진시켜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령도하는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를 위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피흘리며 투쟁하여온 전로정은 승리의 열쇠도 당건설과 활동에 있고 실패의 원인도 당 건설과 활동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혁명적당들이 평양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를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서고있는 이때 당건설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옳게 총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파괴하려는 온갖 계급적원수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위업을 계속 힘차게 추진시켜나가

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1.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역사적교훈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수십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사회주의위업을 향도하여온 당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당의 령도가 곧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한 선진적인 사회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가는것은 력사발전의 흐름이다.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인류력사의 흐름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향도되며 사회주의사회의 전진은 로동계급의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을 요구한다.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로 되돌아간것은 인류력사의 전반적흐름에 비추어볼 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당들이 붕괴된것은 당 건설과 활동의 환경과 조건으로 보아도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당 건설과 활동의 환경과 조건으로 보아도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당 건설과 활동의 환경과 조건을 놓고보면 사회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보다 비할바없이 유리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을 제약하는 사회 경제적 및 계급적 조건이 없어지고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이 더욱 넓어지며 당이 자기의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된것은 당 건설과 활동을 바로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히 다지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된 정치조직으로서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어떻게 쌓는가 하는것은 그 존망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창건을 준비하는 시기로부터 당건설의 전행정에서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는 문제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제기될 때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그것은 이 시기 내외의 계급적 원수들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음모가, 야심가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기때문이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하면 사회주의집권당을 파괴하려는 계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의 그 어떤 책동도 능히 파탄시킬수 있다. 당안에서 나타나는 배신행위는 밖으로부터의 파괴책동보다 당의 존망에 더 큰 위험을 조성하지만 배신행위를 막아내는가 막아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안에서 혁명적원칙이 철저히 고수되고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러지면 당지도부가 혁명의 배신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것이며 설사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반혁명적로선을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순순히 내리먹일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당들은 부르조아자유화바람의 침습으로 말미암아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약화되었으며 이 틈을 타서 혁명의 배신자들이 반혁명적로선을 공공연히 내리먹이게 되었다. 특히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에서 골간을 이루는 간부대렬이 잘 꾸러지지 못하고 그들속에서 사상적변질이 일어남으로써 적지 않은 간부들이 혁명과 반혁명을 옹계 가려볼수 없게 되었으며 배신자들의 반혁명적정체를 알게 된 때에도 사상적으로

공감하여 맹종맹동하거나 자기 보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부굴종하였다. 물론 건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적량심을 저버리지 않고 당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이 오랜 기간에 걸친 당의 변질로 말미암아 생겨난 반혁명적역류를 이겨낼수 없었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또한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로서 대중속에 뿌리박는것은 그 존재의 필수적조건이다. 대중의 지지를 떠나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다.

사회주의집권당이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자면 사회주의건설을 잘 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당이 대중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자신의 당인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이 로동계급의 당을 반대하는것은 결국 자기자신을 반대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집권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잘 조직령도하지 못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옹고 발양시키지 못하고 당안에서 관료주의와 같은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 퇴물행위를 비롯한 부정부패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이 대중으로부터 리탈될수 있다. 관료주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에도 나타났다.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사회주의사회를 관리해본 경험이 없는 조건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나타나는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자기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시켜준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정권에 대한 로동자, 농민들의 지지가 높았으므로 일군들의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품이 혁명의 전취물을 위태롭게 할 정도까지 후과를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속에서 계급적각성이 무디여지고 생활상 요구가 더 높아진 반면에 혁명적세력이 부족한 새 세대들이 간부대렬에 들어오면서 관료주의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에는 얼마 없었던 부정부패현상까지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라 낡은 사상 잔재와 부르쵸아사상에 기초하여 생기는 것이기때문에 당이 조직사상사업을 강화하고 투쟁을 벌리면 능히 극복할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당들이 당조직사상사업에 옹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결과 관료주의와 부정부패현상과 같은 불건전한 요소를 극복할수 없었다. 한편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않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문을 열어놓다보니 적지 않은 군중이 정치적각성이 무디여져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 사회주의배신자들과 반동들이 《민주주의》와 《공개성》의 간판밑에 사회주의집권당안에서 나타난 결함을 사회여론을 오도하는데 리용하였지만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었더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혁명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당과 정부를 반대해나서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것이다.

사회주의의 좌절을 가져오게 한 사회주의집권당의 변질과정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혁명적원칙을 꺾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혁명적원칙은 일찌기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자면 그 전위부대가 있어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로동계급의 정치조직으로서 공산주의자동맹을 조직하고 제1국제당을

창건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 맑스주의창시자들에 의하여 일련의 당건설원칙이 제시되었다. 레닌은 맑스주의 당건설원칙을 고수하면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로 이행하고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성숙된 새로운 력사적환경에 맞게 당건설리론을 발전시켰으며 로동계급과 함께 빈농민을 혁명의 동력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계급적토대우에서 혁명적당을 건설하였다. 레닌당의 령도밑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원칙은 공산당, 로동당들의 보편적인 당건설원칙으로 공인되게 되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주의 새 시대는 당건설리론도 새롭게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은 주로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투쟁을 벌리던 시기의 리론으로서 거기에는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당 건설과 활동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지 않았다. 당이 정권을 쥐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는 새롭게 풀어야 할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교조적으로 매달린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건설리론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당이 자기의 집권적지위에 맞게 당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새롭게 나서는 문제를 옳게 풀지 못하였다.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의 제한성이 나타나게 되자 그것을 기화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당을 변질의 길로 이끌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맑스-레닌주

의당건설리론을 발전시킨다는 구실밑에 그 혁명적진수를 거세하고 당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으며 당의 령도적기능을 마비시켰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의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는 당의 올바른 정치적향도가 없이는 유지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이 오래 계속됨에 따라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고생도 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점차 혁명성이 없어지고 안일해이한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당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회주의집권당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경제건설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집권당앞에 경제건설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지만 경제건설일면만 내세우면서 당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으면 경제건설자체도 잘할수 없고 사회주의전취물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사회주의집권당과 사회주의제도가 한두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련이어 무너지게 된것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혁명적당 건설과 활동의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인 정치조직이다. 그러므로 혁명적당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

하고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물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선행시기 공산주의핵심이 준비되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당건설위업을 수행하는데서 국제적중앙의 지도방조도 필요하였다.

력사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주의핵심과 혁명력량이 자라났으며 매개 나라 당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조건에서 하나의 국제적중앙이 세계 여러 나라당들과 혁명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국제당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었다.

국제당이 해산되었지만 그후에도 공산당, 로동당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전의 관습이 지속되어왔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길을 먼저 개척한 큰 나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서 나타났다. 남의 좋은 경험은 받아들일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나라마다 구체적 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사회주의를 옹기 건설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당들이 다른 나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습관된데로부터 남이 사회주의원칙을 버리고 수정주의의 길로 나갈 때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반혁명적로선을 내리먹이는것을 받아무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련과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 련이어 사회주의집권당들이 붕괴되고 거의 동시에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만일 사회주의 집권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갔더라면 여러 나라에서 사회

주의집권당과 사회주의제도가 련이어 붕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것이다.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정권을 잡고 수십년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당들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진 과정은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집권당과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된 역사적 교훈은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역사적경험은 사상이 변질될 때 로동계급의 당도 사회주의제도도 변질되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안에서 배신자들이 나오고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와해된것도, 민심이 변한것도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였다. 사상이 변질되면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고 수십년의 발전과정을 거처온 사회주의제도도 허물어지기마련이다.

사회주의를 좀먹는 가장 위험한 사상조류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사대주의이다.

사회주의사상과 직접 대립되는 사상은 부르조아사상이지만 부르조아사상은 사회주의사상의 견인력을 막아낼수 없다. 착취계급의 탐욕적인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부르조아사상은 아무리 위선적인 말로 분칠하여도 자기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착취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부르조아사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한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이는것은 옳당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은 사회주의사상을 저들의 비위에 맞게 뜯어고친 수정주의물 사상적도구로 리용하였다. 수정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주되는 위

험으로 된다. 수정주의는 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부르조아사상의 반영으로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이행의 길을 가로막았다면 사회주의나라에서는 자본주의복귀의 길을 열어주면서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의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어왔다. 우리는 현대수정주의가 아무리 교묘하게 자기를 위장한다 하더라도 그 반동적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가 또한 위험한 사상요소로 된다. 교조주의, 사대주의는 사회주의사상이 자기의 생활력을 옹기 발휘할수 없게 한다. 교조주의, 사대주의에 물젓게 되면 자기의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수정주의를 끌어들이고 나중에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자본주의적방법도 마구 끌어들이게 된다. 우리는 교조주의, 사대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고 언제나 주체의 신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집권당과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된 역사적 교훈은 또한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령도의 계승문제를 옹기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된 책임은 결코 일반당원대중에게 있다고 볼수는 없다. 일반당원대중은 어느 나라에서나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을 성실하게 받들어왔으며 당이 붕괴되는데 대하여 가슴아파하였다. 문제는 혁명적령도의 계승성을 옹기 보장하지 못한데 있다.

계급적원수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은 그에 대한 령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쳐 세계 많

은 나라들에서 발전되어왔지만 언제나 올바른 령도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령도는 그 중심에 탁월한 지도자를 내세울 때에만 훌륭히 보장될수 있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다. 이것은 물론 수령으로 칭송받는 위대한 령도자를 내세우지 못한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위업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품모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회주의위업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다. 지도자는 지혜도 령도력도 덕성도 인민대중속에서 체득하게 된다. 인민이 선생이며 인민을 떠난 탁월한 지도자란 있을수 없다.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를 듣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이 옳은 령도를 보장하는것이며 이런 인민적령도품모를 지닌 지도자가 인민의 참다운 지도자이다. 인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것은 배신자의 본색이다. 이런 배신자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로부터 인민들이 겪게 되는 불행은 헤아릴수 없이 크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당이 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운동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은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지만 사회주의사회의 새 세대 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은 주로 당생활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단련되고 세련된 우수한 지도자를 내세우자면 당이 강하여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당을 조

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적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령도의 계승 문제를 예견성있게 풀어나간다면 얼마든지 사회주의위업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능력있는 우수한 지도자를 내세우고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진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그러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당건설의 혁명적길을 개척해나간다면 더욱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을 건설할수 있을것이며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을것이다.

2.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진 쓰라린 교훈은 우리에게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풀어왔다. 우리 당도 지난날 당 건설과 활동을 남이 하는대로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당이 걸어온 로정에도 한때 남이 하는대로 따라갈것을 요구하는 외부의 압력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주체적인 로선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 건설과 활동을 우리 식으로 하여왔기때문에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당은 일심단결된 전투적부대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

적당을 창건하고 령도하여오시면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창시하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으며 당건설에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투쟁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는 당의 기본리념이다.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당의 성격이 규정되며 당 건설과 활동의 기본방향이 규제된다. 당은 사상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정치조직인것만큼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마련하는것은 당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당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가져야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줄수 있으며 당대렬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고 옳바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내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들의 지도사상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지만 나라마다 실정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특성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지난 시기에는 모든 나라 당들이 다같이 공인된 하나의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는것만 강조되고 매개 나라 당들이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며 지도사상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문제는 소홀히 되였다. 이것은 매개 나라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해나가는데서 장애로 되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옳바른 지도사상을 마련하고 발전시켜나가야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이 자주적으로 건설되고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이 발전하는 현실과 자기의 실정에 맞게 지도사상을 마련한다고 하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당의 활동조건과 임무가 변하는것만큼 그에 맞게 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리론 실천적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지만 당의 계급적성격과 력사적사명은 달라질수 없으므로 혁명적원칙은 변함없이 견지되어야 한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여 혁명적원칙을 저버리는것은 곧 혁명적당을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배반하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당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그 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은 자주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로동계급의 가장 완성된 혁명사상으로 된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 건설과 활동을 벌려나갈 때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은 이미 우리 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다.

당을 근로하는 인민들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방침이다.

지난 시기에는 당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계급적정치조직으로, 계급투쟁의 무기로 보아왔다. 당은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지만 당을 일정한 계급만을 위한 당으로 건설하여서는 혁명적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력사적 조건은 로동계급의 당을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근로하는 모든 계급, 계층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계각층 군중이 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환되고 사회계급적구성이 더욱더 단일화되어가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대중적당건설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중적당건설리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체의 혁명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인민대중 자신이 수행하는 위업이다. 사회주의가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향으로 되고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계급적지반이 비상이 확대된 오늘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은 마땅히 전체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인 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당의 혁명적, 로동계급적 성격을 약화시키거나 변화시켜서는 안된다. 당의 계급적성격은 그가 내세

우는 지도사상과 투쟁목적에 의하여 규정되며 당의 혁명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충실성에서 나타난다. 로동계급의 위업은 전체 인민의 리익과 일치하며 로동계급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워야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을 전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계급뿐 아니라 농민, 근로인테리도 자기의 구성성분으로 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적요구이다. 경험은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지 못할 때 혁명의 시련의 시기에 당이 공산주의자들의 소수 정치집단의 처지에 빠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여야 당과 대중의 혈연적인 련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으며 당의 두리에 단결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중적당건설로선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주체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심으로써 대중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대중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특성에 맞게 당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함께 근로인테리를 상징하는 붓을 그려넣도록 하시였으며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전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 당과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적당건설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혁명적당의 공고성과 생명력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가장 훌륭하게 실현된다.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닌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옳바로 조직령도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지 않고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지 않는 당은 혁명적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중앙집권적인 규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당원들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인 사업 체계와 질서가 설 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하는것은 민주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무원칙한 민주주의가 허용될 때에는 당적세력이 부족한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와 전횡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억제당할수 있으며 당안에 잠입한 불순분자들에 의하여 당의 통일단결이 파괴되고 분열이 조장될수 있다. 지난 시기 일부 당들에서 무규률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당안에 분

파가 생겨 당이 사분오열되고 나중에는 그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것은 민주주의만을 내세우면서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과 민주주의가 옹게 결합될 때 당원들사이의 진정한 동지적단합이 이루어지고 상하합심이 원만히 보장될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우리당은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우리 당을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필승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었다. 우리 당 건설의 경험은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하는데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보장하여야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중심과업이다.

당의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당의 통일단결이 파괴되면 당이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다. 당의 통일단결은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해나가는 데 사회주의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는 기본추동력이 있으며 그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당의 통일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당은 인민대중을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핵심력량이다.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자면 그 핵심력량인 당대렬부터 통일단결되어야 한다.

당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 및 도덕의리적 통일단결이다. 의무감에 의한 결합이나 실무적 단합은 오래 갈수 없으며 혁명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다. 오직 하나의 사상의지와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만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는 불패의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이 이룩되었다고 하여 자만하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리지 않는다면 통일단결이 점차 약화되고 나중에는 파괴될수 있다. 특히 혁명의 대가 바뀌고 내외정세가 복잡할 때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옹계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의 대가 바뀌고 내외정세가 복잡할 때 야심가, 변절자들이 나타나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책동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결국 당의 통일단결을 썩먹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의 투쟁이다. 당의 통일단결을 썩먹는 가장 위험한 사상조류는 종파주의를 비롯한 반혁명적사상조류이다. 당안에 반혁명적사상조류가 허용되면 그에 기초하여 반당집단이 형성되고 당을 파괴하게 된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도 경계하여야 한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의 온상이며 그것을 묵인해 두면 점차 자라나 종파가 되고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할수 있다.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썩먹는 이색적인 사상요소가 낡은 사상 잔재에 기초하여 생겨날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올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거기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의 통일단결이 더는 파괴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당안에 분파세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당밖의 반혁명세력과 결탁하여 당에 도전하여나서는 엄청난 사태까지 빚어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당건설의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 때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였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오늘과 같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을 꾸리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일관한 방침이다.

당은 사상의 공통성에 의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조직인것만큼 당대렬은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꾸려야 한다. 당대렬을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꾸린다는것은 당의 사상을 얼마나 신념화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보고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한 사람들로 당대렬을 꾸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의식수준이 높고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한 사람들로 당대렬을 꾸려야 당의 공고한 사상의지적통일과 높은 혁명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당대렬을 꾸리는데서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상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사회주의위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보고 사람들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토대는 참고로 보아야 한다. 적대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된 사회라고 하여 당대렬을 꾸리는데서 사상을 기본으로 보는 원칙을 어겨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속에서 사리와 공명을 바라고 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사리와 공명을 앞세우는 사람은 당원의 자격이 없으며 그런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면 당의 권위와 위신이 훼손되고 당이 약화될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을 꾸리는데서 간부대렬을 당과 수령,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꾸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부는 당의 골간력량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의 공고성은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에 많이 달려있다. 간부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상이 건실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이다. 간부대렬을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꾸리는것은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간부대렬을 꾸리는데서 기본장애물은 간부사업에서 정실, 안면 관계를 비롯하여 당적원칙을 어기는것이다. 간부사업에서 당적원칙을 어기면 간부대렬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올수 있으며 불순분자들까지 끼여들수 있다.

우리 당은 간부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부임면비준절차를 엄격하게 세우고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와 일치가결원칙에 기초하여 간부를 선발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혁명실천에서 검열된 충실하고 능력있는 사람만을 간부로 선발배치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경험은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대렬과 간부대렬을 꾸려야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기본임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왔다.

사상의 일색화에서 기본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고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개조하자면 사람의 사상부터 교양 개조하여야 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주체일뿐아니라 자기자신을 개조하는 주체이다. 사람의 사상개조에 사회의 객관적조건의 변화발전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제도의 변화발전은 사상의식의 변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객관적조건의 변화가 저절로 사람의 사상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며 상대적인 공고성을 가진다. 객관적 환경과 조건이 변하여도 사람이 자기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지 않는다면 사상의식이 개조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사람들이 저절로 사회주의사상을 가지게 될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상개조사업을 소홀히 하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다.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은 사회관계를 변혁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사업보다 더 어렵다. 낡은 사상 잔재는 매우 보수적이며 틈만 있으면 되살아난다. 특히 제국주의와 대치되어있는 조건에서 사상개조사업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사상개조사업에 더 큰 힘을 넣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자면 우월한 사상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다. 낡은 사

상을 밀어낼수 있는 우월한 사상을 가지지 못하면 사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근 70년간고한 혁명투쟁을 경도해오시면서 혁명가가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사상개조의 훌륭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투쟁력사는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교과서로, 거울로 되고있다. 항일의 혁명선렬들과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전사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영웅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의 모범도 사상개조사업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우월성 사상이 있다고 하여 낡은 사상이 저절로 자리를 내놓는것은 아니다. 물론 사상이 우월하면 그만큼 견인력이 크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사상을 헐뜯고 부르조아반동사상을 미화분식하기 위하여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선진사상을 받아들이는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반동적부르조아사상을 반대하고 선진적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이 혁명적으로 교양개조될수 있다. 반동적부르조아사상의 침습을 막아내고 사람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혁명적당은 온갖 반동적부르조아사상을 극복하고 인민들을 선진적인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잘해나가야 사회주의사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사상적으로 개조하자면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다시말하여 당원들을 먼저 교양하여 그들이 핵심군중을 교양하고 그 핵심군중이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핵심군중을 교양하고 핵심군중이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는 것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양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위력한 방법이다. 원래 당원은 정치활동가이며 군중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벌리는 것은 당원의 본분이다.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들이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을뿐아니라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다. 일부 사회주의집권당안에서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온것도 그들이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였다고 볼수는 없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사업을 잘하지 않은 결과 일부 사람들이 점차 변질되어 배신의 길에 들어서게 된것이다. 이러한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우리는 언제나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원들의 사상단련을 잘하자면 그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당원들이 당생활에서 리탈되고 당조직의 통제밖에서 생활하면 자유주의가 나오고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다. 당원들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원들이 당생활을 통하여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정연한 당생활체계를 세워놓았다.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로 하여금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규약상 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조직과 지도를 옹계 함으로써 당원들이 당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게 하였다.

사상개조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상교양은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이며 그것은 일정한 체계와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은 당안에 정연한 사상교양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사상투쟁은 비판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상개조사업의 중요한 형식이며 비판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는 보약이다. 우리 당은 당안에 건전한 비판의 분위기를 세워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도록 하였다.

은 사회를 사상적으로 개조하자면 당이 균중도 책임지고 교양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인민을 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며 인민에 대한 최대의 죄악은 인민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다. 당이 인민대중을 책임지고 교양하는것은 인민에 대한 당의 끝없는 사랑의 표시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균중속에서 정치사업을 널리 벌리도록 하는것과 함께 근로단체들을 발동하여 균중교양사업을 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을 발동하여 균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우리당의 대중지도원칙이다. 근로단체들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사회주의집권당이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근로단체들은 자립적으로 활동하여야 하지만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밖에서 활동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의 가장 철저한 대표자는 로동계급의 당인것만큼 근로단체들은 어디까지나 당의 로선과 방침에 기초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근로단체의 《독자성》을 내세우는것은 결국 근로단체가 사회주

의를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의 도구로 전락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된다. 사회주의집권당은 근로단체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능숙하게 하도록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여야 한다. 당안에서의 조직사상생활규범은 근로단체조직들에서의 조직사상생활의 본보기로 된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당과는 달리 근로단체는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단체이며 근로단체마다 특성이 있는것만큼 조직사상생활을 그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은 해설과 설복이다. 사람의 사상을 행정적 지시나 강압의 방법으로 개조할수는 없다. 사상은 어디까지나 해설과 설복을 통하여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을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해설하고 설복하여야 한다. 긍정에 의한 감화교양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힘있는 방법이다. 긍정은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맞는 진보적이고 아름다운것이므로 큰 감화력을 가진다. 긍정을 내세우는것은 그자체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의 경험은 해설과 설복, 긍정감화교양을 잘할 때 교양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중교양에서 특히 청소년교양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의 앞선 세대는 후대들에게 높은 혁명정신과 창조적능력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론 후대들에게 물질적재부도 넘겨주어야 하지만 아무리 풍부한 물질적재부를 넘겨주어도 그들에게 혁명정신이 없고 창조적능력이 약하면 그 재부를 다 말아먹게 된다.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을 보면 적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 앞장에 섰다. 청년들

이 사회주의를 반대하여나선것은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 당에 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견결히 지키고 대를 이어 혁명을 완성해나가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집권당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못할 때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력사적교훈이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를 더욱 꽃피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혁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이것은 후대교육교양에 큰 힘을 넣어온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후대교육교양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기본사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인민의 운명에 대한 당의 책임과 그 령도적지위는 결코 분리될수 없다. 혁명적당이 자기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포기하는것은 인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된다.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도록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기본방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사회의 정치적향도자로

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만을 자기의 정치적향도자로 인정하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혁명적당의 령도는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로 되어야 한다.

당은 무엇보다도 정책을 옳게 세워야 한다. 혁명적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옳게 반영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잘 들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선생으로 내세우면서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정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좌우경적편향을 피할 수 있었으며 우리 당 정책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당은 정책을 옳게 세울뿐아니라 당조직들이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의 중요한 임무는 당정책집행을 조직하고 장악지도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이 당정책을 옳게 집행하여야 그것이 실생활에 구현되어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당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동원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정치적방법에 의해서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배치되게 돈이나 강제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방법을 적용하면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발양시킬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결과를가져오게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

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 방법만이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는 혁명적인 방법이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었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활동원칙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당은 마땅히 혁명적군중로선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전행정에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당과 대중의 연계는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에 대한 군중의 지지와 신뢰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많이 달려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준비되지 못한 일군들속에서 세도를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원래 세도와 관료주의는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낡은 사회의 통치방법이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게 되며 나중에는 당을 파멸에로 몰아갈수 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집권당이 한시도 늦추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간부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일군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에 계속 큰 주의를 돌려왔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서게 되었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와 지지가 높은것은 우리 당이 자기 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도록 끊임없이 투쟁한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는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3.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련대성

혁명적당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자기앞에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주의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적당의 기본임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민족적위업인 동시에 인류공동의 위업이며 매개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이다. 세계가 자주화되어 나갈수록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게 된다. 다른 한편 개별적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승리는 세계의 자주력량을 강화함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칠수 있게 한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세력은 연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가로막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연합된 반동세력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도전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이 단결하여 그에 맞서는것은 필수적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 목적과 과업의 공통성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은 하나의 투쟁전선에 합류하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 이것이 우리 시대 모든 인민들이 공동으로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을 벌리자면 그 핵심부대인 혁명적당들부터 국제주의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는것은 그 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 오늘 시련을 겪고있지만 세계의 모든 혁명적당들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고 동지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해나가면 자주성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저지파탄시키고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을것이다.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연대성은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주의리념을 떠난 혁명적당은 생각할수 없으

며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지 않은 당들사이의 단결과 연대성은 참다운 혁명적 단결과 연대성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제주의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는 목적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사회주의공동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있다.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는것은 혁명적당들의 마땅한 의무이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켜나갈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평양선언이 나온것은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평양선언은 사회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주의사상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리념이지만 한 계급의 리익만을 대표하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본성을 반영한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이며 계급해방의 사상일뿐아니라 모든 민족과 전인류의 자주적지향을 반영한 민족해방, 인류해방의 사상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모든 인민들이 사람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있는 삶을 누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종국적승리의 필연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투지를 안겨주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반사회주의광증을 일으키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평양선언에 서명한 당들이 백수십개에 이르고 세계 혁명적인민들

이 선언에 열렬한 공감을 표시하고있는 사실은 평양선언에서 천명된 사회주의사상이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사상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평양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고 투쟁해 나갈 때 혁명적당들은 공통된 사상적리념에 기초한 국제주의적 단결과련대성을 더욱 굳게 하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을것이다.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련대성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마다 혁명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조건에서 국제적인 지도의 중심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 혁명적당들은 높은 당과 낮은 당, 지시하는 당과 지시받는 당의 관계가 아니라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하여 동지적관계를 맺을 때 참으로 공고한 국제주의적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혁명적당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국제주의에 어긋나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허용될수 없다.

현시기 혁명적당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절박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지만 그것은 파산을 면할수 없다. 세계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은 일시적인 혼란을 이겨내고 새로운 투쟁에 나서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탄압하는 세력이 있는 한 인민대중이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필연적이며 이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위업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허장성세하여 날뛰고있지만 제국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대독점이 강화되는데 따라 현대 제국주의의 반동성, 반인민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드러나고있으며

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불만은 날로 따라 높아가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자주화된 새 세계를 창조하려는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사회주의가 시련을 겪고있지만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에 혁명적공세로 맞서 투쟁을 벌이면 능히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는 사회주의나라들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이 단결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국제주의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나라들을 고립봉쇄하고 침략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범죄적책동을 분쇄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당들과 인민들 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절박한 과업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재생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이 나라 인민들에게 영영 지배와 예속의 울가미를 씌우기 위한 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는 파국적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 겪고있는 위기는 사회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복귀된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그것은 부르췌아복귀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정치, 경제, 사상도덕적 혼란과 위기로부터의 출로는 사회주의를 재생시키는 길밖에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민족적 억압과 착취를 받다가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길로 나가는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책동이다. 새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짓밟고 그들에 대한 신식민주주의적 착취와 억탈을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대독점의 강화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 분화와 대립이 심화되고 온갖 사회악이 우심해짐에 따라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이 각이한 환경과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을 벌리고있는 당들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성원할 때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적전진은 더욱 다그쳐질것이다.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혁명적당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적당들과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혁명적당들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면 사회주의위업은 힘있게 추동되게 될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주되는 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이다. 현대제국주의는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계기로 힘에 의한 세계의 지배를 실현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가 실현될수 없다.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본성적요구이며 제국주의의 지배주의적정책과 타협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배반하는것으로 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혁명적당들의 마땅한 의무이다. 모든 혁명적당들과 진보적력량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을 공동의 임무로 여기고 견결히 맞서 투쟁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능히 저지파탄시킬수 있을것이다.

은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을 끝장내고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며 침략과 전쟁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을 분렬리간시키기 위하여 갖은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반제자주력량이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 책동을 파탄시키고 승리하는 길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는데 있다. 모든 반제자주력량은 자주, 평화, 친선에 대한 공통한 념원으로 하여 사회제도와 정견, 사상과 신앙, 민족과 인종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 빨터불가담운동, 세계평화애호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할수 있을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인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혁명적당들이 력사와 인민앞에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임무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현 정세는 혁명적당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 모든 혁명적당들과 굳게 단결하고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다.